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Ⅱ 서 언

세계 주요국의 FTA 협상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미국과 EU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일·EU FTA와 같은 메가 FTA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GDP에서 메가 FTA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TPP 42.4%, RCEP 25.5%, TTIP 53.7%, 한·중·일 FTA 18.7%, 일·EU FTA 36.3%에 이르는 것을 통해 볼 때 메가 FTA가 글로벌 경제에 불려올 파장은 지대할 것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와의 FTA 13건을 체결·발효하였고, 호주와의 FTA는 2015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들어서부터는 한·중·일 FTA와 RCEP, 일·EU FTA, TPP 등 메가 FTA 협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한·EU FTA와 한·미 FTA를 발효시킨 것에 비하면 일본의 미국, EU와의 FTA 체결은 늦지만, TPP 협상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에 국한하여 분석할 경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TPP 협상

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EU FTA 협상에
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떠한 연결성·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는 일본의 기체결 FTA와 TPP 및 일·EU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일본팀 김규관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제2장과
제4장을 집필하였고, 제3장과 제5장은 각각 김은지 전문연구원과 이형근 전
문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데이터 및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이신애 연구원, 그리고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대구대학교 김
양희 교수, 본원의 정성춘 선임연구위원, 정 철 선임연구위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쯁도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FTA 추진전략이 향후 우리
정부의 TPP 참여전략과 제반 FTA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
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EU FTA와 EU·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Ⅰ 서언	3
Ⅱ 국문요약	5
Ⅲ 제1장 서론	21
1. 연구목적	22
2. 연구 범위 및 구성	2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29
Ⅳ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3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4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34
나. 데이터	36
다. 분석 틀	39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42
가. 부가가치 수출	42
나. 부가가치 수입	47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50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52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7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63
Ⅴ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69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70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70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76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79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79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82
다. 원산지 규정	87
라. 투자 및 서비스	91
마. 지식재산권	94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7
가. 선행연구	97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8
다. 일·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106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113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113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116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119

Ⅱ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23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124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126
가. 시장접근	126
나. 규범	132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일 협상을 중심으로	143
가. 농축산물분야	143
나. 자동차분야	152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156

Ⅰ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57
1. 일·EU 간 무역·투자 현황	158
2. 일·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162
가. 일·EU FTA의 경위	162
나. 일·EU FTA 협상의 특징	166
3. 일·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168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168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175
Ⅰ 제6장 결 론	191
1. 평가 및 전망	192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192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195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199
라. 일·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01
2. 정책적 시사점	204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204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207
다. 일·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211
Ⅰ 참고문헌	215
Ⅰ Executive Summary	229

표 차례

표 2-1. EU-WIOT의 지역·국가 구성: 2011년 기준	38
표 2-2. EU-WIOT의 산업분류	38
표 2-3. WIOT 예시: 2개국, 2개 산업 가정	39
표 2-4.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2011년)	45
표 2-5.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출(1995~2011년)	47
표 2-6. 한국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출(1995~2011년)	47
표 2-7. 일본의 부가가치 수입(2011년)	49
표 2-8.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입(1995~2011년)	49
표 2-9. 한국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입(1995~2011년)	50
표 2-10.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2011년)	51
표 2-11. 일본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의 분해(2011년)	54
표 2-12. 일본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부가가치(2011년)	55
표 2-13.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2011년)	59
표 2-14. 일본의 gsc/gvc 지표(2011년)	61
표 2-15. 일본의 gvc 지표의 지역·국가별 비중 추이(1995~2011년)	62
표 2-16. 일본의 제조업 부문별 중간재 수입 비중(2011년)	63
표 3-1. 일본의 기발효 FTA 포함 항목 비교	73
표 3-2. TPP 협상분과 및 일본의 기발효 FTA 포함 항목 비교	77
표 3-3. 상품관세 철폐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80
표 3-4.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산업별 세부 양허 현황	83
표 3-5. 일본 농수산업의 업종별 양허율	85
표 3-6. 일본 제조업의 업종별 양허율	86
표 3-7. 원산지 규정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88

표 3-8. 일본 FTA에서의 실질변경기준	90
표 3-9. 서비스·투자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94
표 3-10. 지식재산권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95
표 3-11. 주요국의 기체결 FTA 무역 비중 비교	99
표 3-12. 일본의 FTA 상대국 수출 현황	101
표 3-13. 일본의 FTA 상대국 수입 현황	103
표 3-14. 일·멕시코 FTA 발효 전후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율 변화	108
표 3-15. 일·멕시코 FTA 발효 전후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 증가율 변화	111
표 3-16.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부품조달대상	118
표 3-17. 주요국의 FTA 활용도 비교	120
표 3-18. 일본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FTA 이용률	121
표 4-1.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	126
표 4-2. 주요국 관세율 비교(2012년)	144
표 4-3. 일본과 한국의 관세율 비교	145
표 4-4. 일본의 주요 품목별 관세율(실행세율, 2012년)	146
표 4-5. 일본의 농축산물 수입 관련 국가무역제도	149
표 4-6. 일본의 고관세품목	151
표 5-1. 일·EU FTA 경과	166
표 5-2. 일본과 EU의 주요 관심분야	167
표 5-3. WTO I-TIP에서의 일본 비관세조치 현황	169
표 5-4.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170
표 5-5. EU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인 무역제한조치 현황	172
표 5-6. 일본 내 EU 기업에 의해 파악된 비관세장벽 현황	173
표 5-7. 의료·위생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176
표 5-8.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181
표 5-9. 자동차 관련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183

표 5-10. 자동차 관련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185
표 5-11. 철도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186
표 5-12. 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189
표 5-13. 식품 관련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190
표 6-1. TPP 주요 협상분야별 쟁점(2014년 9월 현재)	200
표 6-2. 한·일 간 관세율 비교(2012년)	208
표 6-3. 과거 한·일 FTA 협상에서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양측 입장	214

그림 차례

그림 2-1.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1995~2011년)	52
그림 2-2. 일본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 추이(1995~2011년) ...	54
그림 2-3.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의 지역·국가별 수출 부가가치 비중(2011년)	56
그림 2-4. 일본의 중간재 수출 비중(1995~2011년)	58
그림 2-5. 일본의 기존 RCA 지표 추이(1995~2011년)	66
그림 2-6.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 추이(1995~2011년)	67
그림 3-1.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 양허 현황	82
그림 3-2. 일본의 대세계 및 FTA 발효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105
그림 3-3.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수입 추이	106
그림 3-4. 일본의 대멕시코 자동차(버스, 트럭 완성차) 수출 추이	110
그림 3-5.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	114
그림 3-6. 원산지증명서 업종별 이용 비중	115
그림 3-7. 일본기업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	116
그림 3-8. 일본기업의 제3국 간 FTA 활용 현황	117
그림 5-1. 일본의 대EU 무역 현황	158
그림 5-2. 2013년 일본의 대EU 수출입 품목별 비중	159
그림 5-3.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 유입 현황	161
그림 5-4. 유럽기업의 일본 신규진출 및 철수 현황	162
그림 5-5. 일본 사업활동 시 외국기업의 애로요인	175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세계투입산출표(WIOT)	36
글상자 4-1. TPP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 ..	136
글상자 4-2. 일본의 수입자동차 특별 취급제도(PHP)	154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1. 연구목적

2000년대 들어 WTO 도하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큰 진전이 없자, 세계 각국은 양자간 FTA 체결에 매진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FTA 중 발효된 것만 해도 222건에 달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FTA를 활용하여 무역 자유화와 국내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2010년부터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2013년부터 ASEAN+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협상을 진행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미국과 EU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한·중·일 FTA, 일·EU FTA와 같은 메가 FTA 협상이다. 이 메가 FTA 협상들에는 세계경제의 4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TPP(12개국) 42.4%, RCEP(16개국) 25.5%, TTIP(미국, EU) 53.7%, 한·중·일 FTA 18.7%, 일·EU FTA 36.3%에 이른다.

TPP를 위시한 메가 FTA 협상은 양자간 FTA에 비해 자유화의 범위가 넓고 개방수준이 높으며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 중심의 통상규범이 새로운 세계 통상질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WTO의 공백을 이 메가 FTA들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세계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TPP는 협상의제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21세기형 FTA로 불리며, TTIP는 시장접근, 국내 규제 완화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심의 통상규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는 RCEP과 한·중·일 FTA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물론이다.

2014년 9월 현재, 일본의 FTA는 싱가포르(2002년 11월), 멕시코(2005년 4월), 말레이시아(2006년 7월), 칠레(2007년 9월), 태국(2007년 11월), 인도네시아(2008년 7월), 브루나이(2008년 7월), ASEAN(2008년 12월), 필리핀(2008년 12월), 스위스(2009년 9월), 베트남(2009년 10월), 인도(2011년 8월), 페루(2012년 3월) 등과 13건이 발효 중이고,¹⁾ 호주와의 FTA는 2014년 7월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2013년 들어서부터는 한·중·일 FTA(2013년 3월 협상 개시)와 RCEP(2013년 5월 협상 개시), 일·EU FTA(2013년 4월 협상 개시), TPP(2013년 7월 협상 참여) 등 메가 FTA 협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한·EU FTA(2011년 7월)와 한·미 FTA(2012년 3월)를 발효시킨 것에 비하면 미국, EU와의 FTA 체결은 늦지만 TPP 협상에는 한국보다 앞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 특징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메가 FTA 중 TPP와 일·EU FTA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메가 FTA 추진전략

1) 일·싱가포르 FTA는 2007년 9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일·ASEAN FTA는 2008년 12월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를 시작으로 2009년 1월 브루나이, 2009년 2월 말레이시아, 2009년 6월 태국과의 비준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기체결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는 일본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효과를 분석하고 일본기업의 FTA 활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그 다음 목적으로 설정했다.

일본의 TPP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12개 국가가 참여 중인 TPP 협상을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눈 다음 각 분야의 협상 쟁점을 분석하고, TPP 협상의 성격상 TPP 본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일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일본의 TPP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일·EU FTA 추진전략을 분석·평가하는 목적은 EU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와 이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 세계에 FTA가 확대되면서 최근 FTA 협상에서는 관세장벽 철폐 못지않게 비관세장벽 철폐가 핵심 목표로 부상하고 있는데,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EU FTA 협상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거 한·일 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본 연구는 향후 한·EU FTA 재협상의 시, 그리고 일본과의 관련 분야 협의 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일본의 기체결 FTA 13건과 일본이 추진 중인 메가 FTA 협상 중 TPP와 일·EU FTA 협상만을 연구범위로 설정했다. RCEP과 한·중·일 FTA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과 한국의 FTA 정책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에서는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무역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EU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 역시 기존의 무역통계 대신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구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작성·공개하고 있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사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한국기업과 비교했다.

제1절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의의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데이터와 분석 틀을 설명했다. 제2절부터 제4절까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일본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OECD 등이 개발한 지표들을 측정했다.

먼저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이라는 지표 측정부분에서는 메가 FTA 대상지역인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RCEP-6(한·중·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EU-27 중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관점에서 일본이 중시한 권역이 어디인가를 식별하고자 했다. 중간재 교역과 관련한 글로벌 가치사슬 지표 측정부분에서는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국내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가를 gvc(global value chain)와 한 국가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EXGR_DVA: Total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부가가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 기준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based on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 값을 측정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먼저 일본이 체결한 FTA를 세 가지 유형, 즉 ASEAN(국가 포함)과의 FTA, NAFTA 국가(멕시코, 칠레, 페루)와의 FTA, 선진국(스위스)과의 FTA로 구분한 다음, 기발효 FTA 13건의 협정문 원문에 기초하여 유형별 특징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가 기체결 FTA에서 추구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현재 TPP 협상에서 일본의 쟁점분야로 지목되는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추구한 정책목표를 해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의 양허율을 매우 낮게 설정하였다는 점,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

여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그리고 일본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3절에서는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농수산업 4개 업종, 제조업 9개 업종으로 각각 대분류하여 상품양허안을 분석했다. 이로써 일본정부가 기체결 FTA에서 제조업에서는 시장개방, 농수산업에서는 시장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철저히 유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일본과 FTA가 발효된 13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FTA 발효 후 수출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수출입 변화에 기초한 분석에서 일본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FTA의 무역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일·멕시코 FTA는 2005년 협정 발효 이후 일본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4절은 일본 상공회의소가 발급·집계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적에 관한 통계와 JETRO가 매년 실시하는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대체적으로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가 낮다는 점,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일본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해명하고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2절에서는 총 21개의 TPP 협상분야(chapter)를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현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어젠다를 파악했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농축산물의 관세협상과 서비스 무역을 다루고, 규범분야에서는 위생 및 검역 조치(SPS), 원산지 규정(RoO, 섬유), 지식재산권(IPR), 외국인투자, 경쟁정책, 기타(TBT, 노동,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3절은 미·일 TPP 협상의 주요 쟁점

을 다루었다. 우선 농축산물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관세·비관세 장벽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다음, 일본 측의 ‘5대 품목 성역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를 파악했다. 자동차분야에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와 미국의 일본 자동차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경쟁 정책분야에서는 미국이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관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일본우정(Japan Post Holdings Co., Ltd, 日本郵政株式会社)’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일본과 EU의 경제협력 현황, 일·EU FTA의 특징, 협상 쟁점,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일본과 EU 간 무역·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 업종에서 수출입과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일·EU FTA 협상은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논의에 집중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일·EU FTA 협상의 경과와 특징을 파악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EU FTA가 추진된 경위와 제6차 협상까지 진행되는 동안 논의된 이슈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일·EU FTA 협정문의 대략적인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EU FTA에서 양측의 주된 관심분야와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관심분야의 비대칭성이라는 첫 번째 특징을 도출하고, 이어 일본이 3대 메가 FTA, 즉 TPP, 일·EU FTA, 한·중·일 FTA를 동시 병행한다는 두 번째 특징을 도출했다.

제3절에서는 우선 WTO, 한국정부, EU 집행위원회 및 재일 EU 상공

회의소 등의 발표자료를 분석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발표기관별로 기준이 달라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부문별로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이 주요한 비관세장벽 철폐대상 영역이 될 것임을 추론한다. 이어서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가운데 EU의 개선요구분야와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분석했다. 이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은 규제의 국제 정합성과 수출입 원활화 · 통관절차 합리화 두 가지에 있음을 파악하고자 했다.

제4절에서는 일 · EU FTA의 협정문 구성, 협상 타결 시점,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주제별로 평가 ·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는 특정 제품, 예를 들어 Linden *et al.* (2009)과 Xing and Detert(2010)처럼 iPhone이나 iPod을 구성하는 부품의 원산지를 추정하여 최종 제품의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각 부품의 생산국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분해하는 연구에서 출발했다. 물론 이 제품들의 부품과 소재의 원산지를 마지막 단계까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무역통계 관점에서 무역수지를 논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를 경제학의 국제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 분석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Timmer(ed)(2012)와 Stehrer(2012)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후자는 부가가치 교역(TiVA: Trade in Value-Added)이라는 개념과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다.

국내에서도 정철 외(2013)는 아·태지역의 생산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을 실증분석하였고, 최낙균, 김영귀(2013)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주요국별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역내 부가가치 관점에서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공목 외(2013)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일 간 산업협력 패턴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분석은 선행연구 중에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원용하되,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중에서도 부가가치 무역수지, 중간재 교역,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경쟁력에 한정하여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의 몇 가지 지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무역구조 변화를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外務省(2007), 김양희 외(2008)가 대표적이다. 外務省(2007)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체결한 4건의 FTA를 대상으로 협상 경위와 협정문을 분석하고 분야별 핵심적인 특징을 조명했다. 김양희 외(2008)는 싱가포르

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와 발효된 6건의 FTA를 대상으로 한 · 일 FTA 협상에서 중요 이슈인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상품무역, 서비스 · 투자 무역규범,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효된 일본의 FTA 13건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협정문 구성 및 원안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상품관세, 원산지 규정, 서비스 · 투자, 지식재산권 등 우리가 관심 있는 주요 분야를 선별하여 일본의 FTA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TPP 협상에서의 일본 측 쟁점과 대응방향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

FTA 발효 이후의 사후적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LIBERTAS(2013), Ando and Urata(2011), 浦田, 安藤(2010) 등이며, 주로 관세 철폐효과에 따른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하거나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FTA 무역효과를 추정했다. 한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기업의 FTA의 활용 실태 및 FTA가 일본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13건의 FTA를 대상으로 발효 전후의 수출입 증가율 변화를 통해 무역효과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일 · 멕시코 FTA를 대상으로 FTA의 무역효과가 큰 관세 철폐품목을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후적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FTA 활용률(즉 특혜관세 품목의 교역 비중)을 산출하는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에 관한 통계와 JETRO가 매년 실시하는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를 분석했다.

일본의 TPP 추진전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연구로는 지식

재산권 분야의 협상 쟁점을 연구한 윤선희(2014),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한국의 협상참여전략을 연구한 한민정(2013)을 참고할 수 있고, 권순국(2014)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측면에서 TPP의 필요성과 한국의 활용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김용복(2013)은 일본의 TPP 참여를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로 표현되는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관계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단 김양희(2013)는 일본이 메가 FTA의 ‘세력 전이’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해명하고, TPP 협상과 관련해서는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데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EU FTA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실적이 많지 않다. European Commission(2012b)은 EU·일본 간 FTA와 관련해 시나리오별(FTA 체결 및 미체결) 및 부문별(금융서비스, 자동차 등)로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EU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유럽이사회에 제출되었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는 업종별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제언을 망라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가장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단 WTO의 비관세조치별 구분이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EU 기업이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을 업종별로 나열하고 있다. 田中(2014a, 2014b)는 일·EU FTA 협상이 5차까지 진행된 경과를 지켜보고 일·EU FTA의 특징과 주요 협상분야를 정리했다. 강유덕(2013a)과 명진호(2013)는 일·EU FTA의 전개과정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특히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EU의 주된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정부의 대응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
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21세기 들어 보편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달리 재화의 교역이 아니라 ‘업무의 교역(trade in tasks)’을 분석단위로 한다. Baldwin(2006)²⁾이 밝히고 있듯이, 기업의 생산활동은 세계 각국의 입지경쟁력을 고려하여 세계 각지에 분절화(fragmentation)되기 마련이다. IT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FTA로 상징되는 세계 각국의 무역자유화와 이와 같은 생산네트워크의 분절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6)³⁾는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는 교역형태 역시 ‘업무의 교역’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최종 완성재의 특정 생산공정단계에 특화한다고 지적했다.

Sturgeon(2001)⁴⁾은 제품 고안에서부터 디자인,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종재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생산공정단계를 연속적인 부가가치활동, 즉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는 개념으로 연결 짓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다국적기업의 부가가치 활동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글로벌 가치사슬은 산

2) Baldwin(2006), 재인용: WTO-IDE/JETRO(2011), p. 10.

3)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6), 재인용: WTO-IDE/JETRO(2011), p. 10.

4) Sturgeon(2001), 재인용: WTO-IDE/JETRO(2011), p. 10.

5)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는 글로벌 생산공유(global production sharing), 국제분절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다단계 생산(multistage production),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등이 있다. 특히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 간의 관계에 주목한 개

업이나 기업, 제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데, Baldwin and Venables(2010)⁶⁾는 연속적인 중간재 투입을 거쳐 완성되는 고전적인 뱀 형태의 가치사슬과 동시다발적인 다수의 중간재 투입을 거쳐 완성되는 거미 형태의 가치사슬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중에서 기업단위의 정보에 근거하여 iPod이나 iPhone과 같은 특정 최종재를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해당 제품의 가치사슬을 국적 단위로 분해하는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크다.⁷⁾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기존 무역 통계처럼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며 시계열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추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사례연구보다는 국가단위의 무역통계와 투입산출표(I-O Table)를 결합하여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특정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⁸⁾ 본 연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일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의가 있다.

넘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OECD(2013, pp. 17-18)와 WTO-IDE/JETRO (2011, pp. 12-13)를 참고하라.

6) Baldwin and Venables(2010), 재인용: OECD(2013), p. 14.

7) 이와 같은 사례연구로는 Linden *et al.*(2009), Dedrick *et al.*(2009), Xing and Detert(2010)를 들 수 있다.

8)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GVC participation Index)를 제안, 측정한 OECD(2012, pp. 11-16)와 이를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최낙균, 김영귀(2013, pp. 68~91)를 참고하라. Koopman *et al.*(2011)은 부가가치 무역 관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있는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하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관한 분석은 WIOD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했다.⁹⁾ WIOT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글상자 2-1]을 참고할 수 있다.

글상자 2-1. 세계투입산출표(WIOT)

- 한 국가의 공급사용표(SUTs)를 무역통계와 결합하여 국제공급사용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세계투입산출표(Global Input-Output Tables)로 변환하여 작성
 - SUTs는 특정 국내 재화·서비스가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가를 국내 각 산업과 수입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이 재화·서비스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중간재, 최종재, 수출 등으로 나누어 표시한 행렬
 - SUTs와 무역통계의 연계: 무역통계상 HS 6단위 기준의 각 재화·서비스 품목을 중간재, 최종소비, 투자 3개의 사용범주로 분류. 이때 HS-6 코드와 BEC(Broad Economic Category) 간 대응관계를 이용
 - 국제공급사용표: 수입을 사용범주와 수입국에 따라 구분할 목적으로 작성. 사용범주에 따라 재분류된 양국간 무역 비중을 이용하여 작성
 - 국제공급사용표의 WIOT로의 변환: 상품코드를 산업코드로 변환

자료: Timmer(ed)(2012), pp. 5-12.

EU-WIOT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총 40개국인데, 39개 국가와 기타(Rest of World)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9개 대상국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 자체는 포괄적인 편이다. EU 집행위원회

9) EU-WIOT는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WIOD 웹사이트,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에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WTO나 일본 IDE의 W IOT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EU-WIOT로 표기하기로 한다. 단 WIOD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WIOT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의미한다.

외에도 OECD-WTO와 일본 IDE가 WIOT를 작성하고 있는데, OECD-WTO는 세계투입산출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GVC와 관련된 지표만을 공개하고,¹⁰⁾ 일본 IDE의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¹¹⁾는 미국과 아시아 9개국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최신판이 2005년이라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는 EU-WIOT를 사용했다.

EU-WIOT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메가 FTA 권역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먼저 TPP의 경우 2014년 9월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TPP-12) 중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5개국(TPP-5)이 포함되고,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7개국은 제외되어 있다. EU의 경우는 EU-28 중 크로아티아만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¹²⁾ 마지막으로 RCEP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6개국이 분석대상국가이다. 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 중

10) OECD의 WIOD는 EU-27개국, 호주, 스위스, 터키, 아이슬란드,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베트남 등 57개국을 포괄하고, 국제투입산출표(Global Input-Output Tables)의 산업분류는 ISIC(Revision 3)에 의거한 37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GVC와 관련된 지표분석 결과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5개년에 한정되어 있다. OECD, StatExtracts, *OECD-WTO Trade in Value Added(TiVA)- May 2013*,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7807>(검색일: 2014. 5. 29).

11) 대상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미국 10개국이고, 1985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투입산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최신의 것은 2005년판이다. ID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5-Technical Notes*,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Project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Organization, <http://www.ide.go.jp/Japanese/Publish/Books/Tokei/pdf/2005ASIA%20TechnicalNotes.pdf>(검색일: 2014. 5. 31).

12) 즉 EU의 WIOT에 포함되어 있는 EU-27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표 2-1. EU-WIOT의 지역·국가 구성: 2011년 기준

(단위: 비중, %)

지역·국가	인구	GDP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국가	인구	GDP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TPP-12	10,7	42,4	26,4	24,1	TPP-5	8,3	40,7	21,5	19,7
(미국)	4,2	26,1	10,7	12,0	(미국)	4,2	26,1	10,7	12,0
EU-28	6,8	27,6	34,4	35,7	EU-27	6,8	27,6	34,4	35,7
RCEP-16	45,6	25,5	28,9	16,4	RCEP-6	40,7	23,7	23,0	11,9
(중국)	18,4	8,0	10,4	5,9	(중국)	18,4	8,0	10,4	5,9
(일본)	1,7	8,7	4,8	1,1	(일본)	1,7	8,7	4,8	1,1
(한국)	0,7	2,0	3,1	0,6	(한국)	0,7	2,0	3,1	0,6

자료: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검색일: 2014. 6. 30);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6. 29); UNCTAD, Bilateral FDI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Bilateral.aspx>/(검색일: 2014. 6. 30)를 기초로 작성.

표 2-2. EU-WIOT의 산업분류

농림어업	1. 농림어업
광업	2. 광업
제조업	3. 음·식료품, 담배, 4. 섬유 및 섬유제품, 5. 가죽 및 가죽제품, 6. 목재 및 목재제품, 코르크, 7. 펄프, 종이, 인쇄 및 출판, 8. 코크스, 정유 및 핵연료, 9. 화학 및 화학제품, 10. 고무 및 플라스틱, 11. 기타 비금속 광물, 12. 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13. 기타 기계, 14. 전기 및 광학기기, 15. 운송기기, 16. 기타 제조업 및 리사이클링
서비스업	17. 전기, 가스 및 수도, 18. 건설업, 19. 자동차 및 전동차의 판매·유지·수리, 20. 도매 및 중개무역(자동차 및 전동차 제외), 21. 소매(자동차 및 전동차 제외) 및 가정용품 수리, 22. 호텔 및 식당, 23. 내륙운송, 24. 수상운송, 25. 항공운수, 26. 기타 운수업 보조 및 여행사 업무, 27. 우편 및 통신, 28. 금융중개업, 29. 부동산중개업, 30. 기계·장비 임대 및 기타 영업활동, 31. 공공행정 및 방위·사회보장, 32. 교육, 33. 보건 및 사회복지, 34.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35. 개인주택

자료: Timmer(ed)(2012), p. 7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9개 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EU-WIOT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산업은 35개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분류코드는 OECD-WIOT와 마찬가지로 ISIC Revision 3이다. 즉 OECD-

WIOT가 57개국, 37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EU-WIOT는 40개국, 35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분석 틀

[표 2-3]은 2개국, 2개 산업을 가정한 WIOT의 예시이다.¹³⁾ X_j^c 는 국가 c 산업 j 의 총산출을 나타내고, X_{ij}^{sc} 는 국가 s 산업 i 의 산출물이 국가 c 산업 j 에 중간투입재로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는 $A_{ij}^{sc} = \frac{X_{ij}^{sc}}{X_j^c}$ 와 같이 계산한다. 국가 c 산업 j 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V_j^c 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 c 의 부가가

표 2-3. WIOT 예시: 2개국, 2개 산업 가정								
		중간재 수요(A)			최종수요(F)			총산출
		국가 1		국가2	국가1		국가2	
		산업1	산업2	산업1	산업2	최종수요	최종수요	
국가1	산업1	X^{11}_{11}	X^{11}_{12}	X^{12}_{11}	X^{12}_{12}	F^{11}_1	F^{12}_1	X^1_1
	산업2	X^{11}_{21}	X^{11}_{22}	X^{12}_{21}	X^{12}_{22}	F^{11}_2	F^{12}_2	X^1_2
국가2	산업1	X^{21}_{11}	X^{21}_{12}	X^{22}_{11}	X^{22}_{12}	F^{21}_1	F^{22}_1	X^2_1
	산업2	X^{21}_{21}	X^{21}_{22}	X^{22}_{21}	X^{22}_{22}	F^{21}_2	F^{22}_2	X^2_2
세금(보조금 차감 후)		T^1_1	T^1_2	T^2_1	T^2_2	DT^1	DT^2	
부가가치		V^1_1	V^1_2	V^2_1	V^2_2			
총산출		X^1_1	X^1_2	X^2_1	X^2_2			

주: 1. X_{ij}^{sc} 에서 위첨자 ij 는 중간재가 국가 i 에서 국가 j 로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첨자 ij 는 중간재가 산업 i 에서 산업 j 로 투입되는 것을 의미. 산출 X_j^c 에서 위첨자 i 는 국가, 아래첨자 i 는 산업을 의미. 부가가치 V_i^c , 세금(보조금 차감 후) T_i^c 도 마찬가지이다.

2. 최종수요 F_{ij}^{sc} 에서 위첨자 ij 는 국가를 의미하고, 아래첨자 i 는 산업을 의미.
자료: OECD(2013), p. 64.

13) WIOT 모형은 극히 일반화된 양식이나, 본문에서는 OECD(2013, pp. 62-64)를 인용하고 있다.

치 계수는 $v_j^c = \frac{V_j^c}{X_j^c}$ 와 같이 계산한다. 최종수요 F_i^{ij} 는 산업 i 에서 위첨자로 표시되는 국가 i 의 산출물이 국가 j 의 최종수요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국가 i 내에서의 최종수요, 즉 국내최종수요(domestic final demand)는 가계부문의 최종소비(H), 비영리조직의 지출(NPISH: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정부소비(G), 투자(I)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 기초하여 [표 2-3]에 제시된 WIOT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2-1]과 같다.¹⁴⁾ 단 국가는 3개국($c = 1, 2, 3$)으로 확장하고 산업 역시 3개($g = 1, 2, 3$)로 가정한다.

$$x = Ax + f \quad [\text{식 2-1}]$$

x : 총산출 벡터(9×1). $x = [X_1^1, X_2^1, X_3^1, X_1^2, X_2^2, X_3^2, X_1^3, X_2^3, X_3^3]' \equiv [x^1, x^2, x^3]'$
 $x^1 = (X_1^1, X_2^1, X_3^1)'$ 의 벡터(3×1)

A : 글로벌 투입계수 행렬

$$A = \begin{pmatrix} A^{11} & A^{12} & A^{13} \\ A^{21} & A^{22} & A^{23} \\ A^{31} & A^{32} & A^{33} \end{pmatrix}, \text{ 단 } A^{cg} \text{는 } 3 \times 3 \text{의 소행렬. 예: } A^{12} = \begin{pmatrix} A_{11}^{12} & A_{12}^{12} & A_{13}^{12} \\ A_{21}^{12} & A_{22}^{12} & A_{23}^{12} \\ A_{31}^{12} & A_{32}^{12} & A_{33}^{12} \end{pmatrix}.$$

$c = g$ 인 경우 소행렬 A^{cg} 는 국내 투입계수 행렬(3×3)

f : 최종수요 벡터(9×1)

$$f = [F_1^{11} + F_1^{12} + F_1^{13}, F_2^{11} + F_2^{12} + F_2^{13}, F_3^{11} + F_3^{12} + F_3^{13}, F_1^{21} + F_1^{22} + F_1^{23}, \dots, F_2^{31} + F_2^{32} + F_2^{33}, F_3^{31} + F_3^{32} + F_3^{33}]' \equiv [f^1, f^2, f^3]'$$

14) 기본모형에 관해서는 Stehrer(2012, p. 3);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2013, p. 12)을 참고하였다.

$f^1 = (F_1^1, F_2^1, F_3^1)'$ 의 벡터(3×1). 단 $F_1^1 = F_1^{11} + F_1^{12} + F_1^{13}$ 과 같이 국가1에서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는 국내 최종수요(F_1^{11}), 국가2의 최종수요(F_1^{12}), 국가3의 최종수요(F_1^{13})의 합. 즉 $f^1 = [F_1^{11} + F_1^{12} + F_1^{13}, F_2^{11} + F_2^{12} + F_2^{13}, F_3^{11} + F_3^{12} + F_3^{13}]'$

v : 부가가치계수(각 산업의 부가치를 해당 국가의 총산출로 나눈 값) 벡터(1×9)

$$v = [V_1^1, V_2^1, V_3^1, V_1^2, V_2^2, V_3^2, V_1^3, V_2^3, V_3^3] = [v^1, v^2, v^3]. \quad v^1 = (V_1^1, V_2^1, V_3^1)$$

[식 2-1]을 x 에 대해 정리하면, [식 2-2]와 같이 총산출 벡터(x)는 Leontief 역행렬(L)과 최종수요 열벡터(f)의 함수형태가 된다.

$$x = Ax + f = Lf \quad \text{[식 2-2]}$$

단 $L = (I - A)^{-1}$: Leontief 역행렬(9×9).

[식 2-2]의 행렬과 벡터를 국가 단위의 소행렬과 벡터로 표기하면, [식 2-3]과 같다.

$$\begin{aligned} \begin{pmatrix} x^1 \\ x^2 \\ x^3 \end{pmatrix} &= \begin{pmatrix} A^{11} & A^{12} & A^{13} \\ A^{21} & A^{22} & A^{23} \\ A^{31} & A^{32} & A^{33} \end{pmatrix} \begin{pmatrix} x^1 \\ x^2 \\ x^3 \end{pmatrix} + \begin{pmatrix} f^1 \\ f^2 \\ f^3 \end{pmatrix} = \begin{p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pmatrix} \begin{pmatrix} f^1 \\ f^2 \\ f^3 \end{pmatrix} \\ &= \begin{p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pmatrix} \begin{pmatrix} f^{11} + f^{12} + f^{13} \\ f^{21} + f^{22} + f^{23} \\ f^{31} + f^{32} + f^{33} \end{pmatrix}. \end{aligned} \quad \text{[식 2-3]}$$

단 Leontief 역행렬 L^{11} 은 $(I - A^{11})^{-1}$ 이 아니라 행렬 $(I - A)^{-1}$ 의 첫 번째 3×3 소행렬.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일반적으로 국가간 부가가치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Stehrer 2012). 첫째는 한 국가의 부가가치가 다른 국가의 최종수요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이다. 이 개념은 국가1이 국가2와 국가3에 수출한 부가가치 금액(부가가치 수출: value added exports)과 국가2와 국가3에서 수입한 부가가치 금액(부가가치 수입: value added imports), 그리고 그 차액으로 정의되는 부가가치 무역수지(Net Trade in Value-Added)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 무역통계에서 인용하는 무역수지(Trade Balance) 개념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한 국가의 무역(수출 · 수입)에 자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무역 부가가치(Value Added in Trade)이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액 중 자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TiVA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특징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¹⁵⁾

가. 부가가치 수출

편의상 3개국, 3개 산업으로 구성된 WIOT를 상정하면, 국가1의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s)은 국가2와 국가3의 최종수요에 국가1의 부가

15) 무역 부가가치(Value-Added in Trade) 개념은 OECD-WTO가 작성 · 공개하고 있는 부가가치 무역(TiVA) 관련 지표 중에서, 한 국가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라는 지표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제3절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로 측정한다.¹⁶⁾ 다시 말해 국가2와 국가3의 최종수요로 국가1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2013, p. 4)은 이것을 ‘GDP의 해외의존도’로 해석한다. [식 2-3]을 이용하여 국가1의 부가가치 수출을 계산하면 [식 2-4]와 같다.

$$\begin{aligned}
 t_{TiVA, X}^1 &= [v^1 \ 0 \ 0]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pmatrix} 0 + f^{12} + f^{13} \\ 0 + f^{22} + f^{23} \\ 0 + f^{32} + f^{33} \end{pmatrix} \\
 &= v^1 L^{11}(f^{12} + f^{13}) + v^1 L^{12}(f^{22} + f^{23}) + v^1 L^{13}(f^{32} + f^{33})
 \end{aligned}$$

[식 2-4]

단 $t_{TiVA, X}^1$ 에서 위첨자 1은 국가1을 의미하고, 아래첨자 TiVA는 Trade in Value Added, X는 수출(export)을 의미한다.

- 국가1이 국가2와 국가3에 얼마만큼을 수출하였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식 2-3]의 $\begin{pmatrix} f^{11} + f^{12} + f^{13} \\ f^{21} + f^{22} + f^{23} \\ f^{31} + f^{32} + f^{33} \end{pmatrix}$ 에서 국가1의 국내 최종수요(f^{11})와 국가2와 국가3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입(f^{21}, f^{31})은 0벡터로 놓고, 부가가치 계수 벡터(1×9) $v = [v^1, v^2, v^3]$ 에서도, 국가2와 국가3의 부가가치 계수 벡터, v^2 와 v^3 은 0벡터로 놓은 다음, [식 2-2]에 $[v^1, 0, 0]$ 를 pre-multiply 하면 [식 2-4]가 도출된다.
- [식 2-4]를 국가 c 로 일반화하면, $t_{TiVA, X}^c = v^c L f^c$ 로 표시할 수 있다. 단 v^c 는 국가 c 이외의 국가의 부가가치 계수 벡터는 모두 0으로 놓은 부가가치 계수 벡터이고, f^c 는 국가 c 의 최종수요 벡터만을 0으로 놓은 최종수요 벡터이다.

16) Johnson and Noguera(2012), 재인용: Stehrer(2012), p. 3. 이하, 부가가치 수출과 수입에 관한 수식전개는 Stehrer(2012), pp. 3~4.를 참고하였다.

- 국가의 산출물($g = 1, 2, 3$)에 대한 최종수요, 즉 국내 최종수요와 수출의 합계는 $f^{11} + f^{12} + f^{13} = [F_1^{11} + F_1^{12} + F_1^{13}, F_2^{11} + F_2^{12} + F_2^{13}, F_3^{11} + F_3^{12} + F_3^{13}]'$ 의 3×1 열벡터로 표시.
- 한편 국가의 최종수요, 즉 국내 최종수요와 수입은 $f^{*1} = f^{11} + f^{21} + f^{31}$
 $= [F_1^{11} + F_1^{21} + F_1^{31}, F_2^{11} + F_2^{21} + F_2^{31}, F_3^{11} + F_3^{21} + F_3^{31}]'$
- [표 2-3]에서 보면 국가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는 국가(행)를 기준으로 최종수요 항목을 더하면 되고, 국가의 최종수요는 국가(열)의 최종수요 항목을 더하면 된다.

[식 2-4]의 두 번째 식은 국가2와 국가3의 최종재 수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1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첫째 항)와 국가2의 국내 최종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1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그리고 국가3의 국가2로부터의 최종재 수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1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둘째 항), 국가2의 국가3으로부터의 최종재 수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1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국가3의 국내 최종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1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셋째 항)의 합계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표 2-4]는 2011년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s)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일본은 세계 전체의 최종수요로 총 약 7,220억 달러, 즉 GDP 대비 15.6%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데, 한국의 GDP 대비 3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¹⁷⁾ 그만큼 일본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기존 무역통계상 수출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

17) 2011년 일본의 GDP는 4조 6,213억 달러이고, 한국의 경우는 1조 566억 달러이다. UN Database, <http://www.un.org/en/databases/>(검색일: 2014. 5. 6).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표 2-4]는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RCEP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33.3%, 일본은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단 일본은 한국에 비해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EU-27과 RCEP-5에 대해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다. 한·일 관계에서는 상대

표 2-4.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2011년)								
(단위: 백만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부가가치 수출				수출(무역통계)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PP-4	156,584	21.7	61,227	18.8	164,626	20.0	118,921	21.4
(미국)	115,554	16.0	43,474	13.4	127,675	15.5	56,421	10.2
EU-27	94,732	13.1	56,717	17.4	95,904	11.7	54,460	9.8
RCEP-5	199,715	27.7	108,346	33.3	274,837	33.4	208,247	37.5
(중국)	131,092	18.2	65,778	20.2	162,035	19.7	134,185	24.2
(일본)	-	-	24,661	7.6	-	-	39,679	7.1
(한국)	28,682	4.0	-	-	66,174	8.0	-	-
세계 전체	721,963	100.0	325,586	100.0	823,184	100.0	555,209	100.0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6. 29)를 기초로 작성.

18)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중간재(서비스 포함) 수출이 활성화되면 국경을 넘는 횡수 역시 증가하는데, 기존 무역통계는 그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출 혹은 수입 실적에 계상함으로써 중복계상이라는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표 2-4]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무역통계에서 일본의 2011년 수출액은 8,232억 달러이나 부가가치 수출액은 7,220억 달러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Koopman et al.(2012)과 OECD(2013, p. 55 이하)를 참고할 것.

적으로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데 반해 일본의 경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표 2-4]를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서 해외 어느 지역·국가와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통상적인 무역통계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을 포함하는 RCEP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부가가치 수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을 포함하는 TPP와 EU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부상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CEP-5의 경우 통상적인 무역통계로 보았을 때 일본과 한국의 수출에서 RCEP-5의 비중이 각각 33.4%, 37.5%였으나 부가가치 수출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27.7%, 33.3%로 크게 줄어든다.

[표 2-5]와 [표 2-6]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추이를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보았을 때 일본과 한국 모두 RCEP-5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는데, 시계열로 보면 이러한 추세가 2000년 들어 급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과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을 포함하는 TPP-4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8.9%, 2005년 22.9%, 2011년 16.0%로 낮아지고 있다.

표 2-5. 일본의 주요 지역 · 국가별 부가가치 수출(1995~2011년)

(단위: 비중(%),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PP-4	29,5	34,6	29,2	29,0	26,2	23,3	21,7	22,6	21,7
(미국)	24,9	28,9	22,9	23,0	20,2	17,7	16,4	17,0	16,0
EU-27	17,2	17,9	17,0	16,7	17,2	16,5	15,4	13,0	13,1
RCEP-5	15,9	15,8	21,4	21,4	21,8	22,6	26,1	26,8	27,7
(중국)	5,7	7,3	12,1	12,5	12,9	13,7	17,1	17,3	18,2
(한국)	5,2	4,4	4,5	4,4	4,3	4,3	4,1	4,2	4,0
총액	442,587	456,314	559,326	585,848	633,291	682,238	539,638	690,182	721,963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6. 한국의 주요 지역 · 국가별 부가가치 수출(1995~2011년)

(단위: 비중(%),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PP-4	26,2	30,0	25,4	24,1	21,9	19,1	18,3	18,8	18,8
(미국)	22,0	24,7	20,0	18,2	16,5	14,2	13,5	13,5	13,4
EU-27	17,8	17,8	20,4	20,4	19,2	20,1	18,9	18,7	17,4
RCEP-5	28,3	25,6	28,3	28,2	26,6	25,4	29,0	31,6	33,3
(중국)	7,1	9,8	14,9	15,2	14,7	15,4	18,9	19,9	20,2
(일본)	15,9	12,0	8,7	8,2	7,2	5,7	5,6	6,8	7,6
총액	101,770	123,628	197,238	220,606	253,552	253,561	226,050	287,267	325,586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나. 부가가치 수입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국, 3개 산업으로 구성된 WIOT를 상정하면, 국가1의 부가가치 수입(value added imports)은 국가1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2와 국가3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의미한다. 국제투입산출모형을 나타내는 [식 2-2]를 이용하면, 부가가치 수입은 [식 2-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국가1의 부가가치 수입은

국가1의 국내수요에 해당하는 부분과 국가2로부터의 최종재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3으로부터의 최종재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 2-5]의 두 번째 식은 이를 의미한다.

$$t_{TVA, M}^1 = [0 \ v^2 \ v^3]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pmatrix} f^{11} + 0 + 0 \\ f^{21} + 0 + 0 \\ f^{31} + 0 + 0 \end{pmatrix}$$

$$= (v^2 L^{21} + v^3 L^{31})f^{11} + (v^2 L^{22} + v^3 L^{32})f^{21} + (v^2 L^{23} + v^3 L^{33})f^{31}$$

[식 2-5]

[표 2-7]은 [식 2-5]를 일본과 한국에 대해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일본은 약 6,854억 달러, 즉 GDP 대비 14.8%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데, 한국의 2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부가가치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수입 역시 일본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2011년 부가가치 수입원을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을 포함하는 RCEP-5에 대한 부가가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측면에서도 중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수입 중에서 RCEP-5가 차지하는 비중은 34.2%에 달하고, TPP-4는 19.2%, EU-27은 11.4%에 불과하다. 둘째, 이와 같은 중국을 포함하는 RCEP-5의 위상 강화는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같이 2000년대 들어 급진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수입에서 TPP-4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0.3%에서

표 2-7. 일본의 부가가치 수입(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부가가치 수입				수입(무역통계)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PP-4	131,611	19.2	59,058	20.0	149,890	17.5	148,377	28.3
(미국)	73,490	10.7	38,636	13.1	76,267	8.9	44,815	8.5
EU-27	78,216	11.4	42,632	14.5	80,517	9.4	46,272	8.8
RCEP-5	234,509	34.2	110,722	37.5	306,673	35.9	206,177	39.3
(중국)	133,708	19.5	55,515	18.8	183,882	21.5	86,431	16.5
(일본)			28,682	9.7	-	-	68,320	13.0
(한국)	24,661	3.6			39,811	4.7	-	-
세계 전체	685,450	100.0	294,947	100.0	855,380	100.0	524,405	100.0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6. 29)를 기초로 작성.

표 2-8.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입(1995~2011년)

(단위: 비중(%),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PP-4	30.3	29.2	21.9	20.9	21.0	20.5	20.8	20.7	19.2
(미국)	21.6	20.2	14.2	13.7	13.4	12.5	13.3	12.2	10.7
EU-27	20.6	17.4	17.1	16.1	16.1	14.1	14.3	12.1	11.4
RCEP-5	22.9	23.6	27.7	28.0	28.7	26.7	31.7	33.6	34.2
(중국)	8.3	9.9	15.2	15.7	16.2	15.2	19.9	19.3	19.5
(한국)	5.2	4.5	4.0	3.9	3.7	2.4	2.7	3.5	3.6
총액	311,548	329,092	426,621	464,680	491,329	595,492	460,649	551,452	685,450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2005년 21.9%, 그리고 2011년에는 19.2%로 하락했고, EU-27 역시 2005년 20.6%, 2005년 17.1%, 2011년 11.4%로 하락했다(표 2-8 참고). 셋째,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수입에서 TPP-4와 EU-27이 차지

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표 2-9]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9. 한국의 주요 지역·국가별 부가가치 수입(1995~2011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PP-4	28.0	25.1	21.0	20.3	20.6	18.5	19.1	21.0	20.0
(미국)	21.2	19.0	14.4	14.5	14.6	12.6	13.2	14.5	13.1
EU-27	21.0	17.9	17.6	17.6	18.7	18.9	17.8	14.5	14.5
RCEP-5	33.8	34.6	36.4	34.2	34.6	33.3	36.3	37.8	37.5
(중국)	4.7	8.9	13.9	14.4	15.7	15.1	17.5	18.0	18.8
(일본)	22.6	18.2	14.9	13.1	12.0	11.3	11.5	11.3	9.7
총액	101,705	110,066	168,793	197,672	225,743	256,699	193,347	255,714	294,947

(단위: 비중(%), 백만 달러)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표 2-10]은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식 2-4]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식 2-5]의 부가가치 수입을 뺀 부가가치 무역수지(Value-added Trade Balance)에 관한 추정값이다. 먼저 2011년 기준 일본의 무역통계상 무역수지는 동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약 322억 달러의 적자를 계상하였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약 3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은 무역통계상의 무역수지와 부가가치 무역수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일본은 부가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강고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2-10.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2011년)

(단위: 백만 달러)

	부가가치 무역수지		무역수지(무역통계)	
	일본	한국	일본	한국
TPP-4	24,974	2,168	14,736	-29,456
(미국)	42,064	4,839	51,408	11,607
EU-27	16,516	14,084	15,388	8,188
RCEP-5	-34,794	-2,376	81,532	2,070
(중국)	-2,616	10,262	-21,847	47,754
(일본)	-	-4,020	-	-28,640
(한국)	4,020	-	28,640	-
해외전체	36,513	30,640	-32,197	30,804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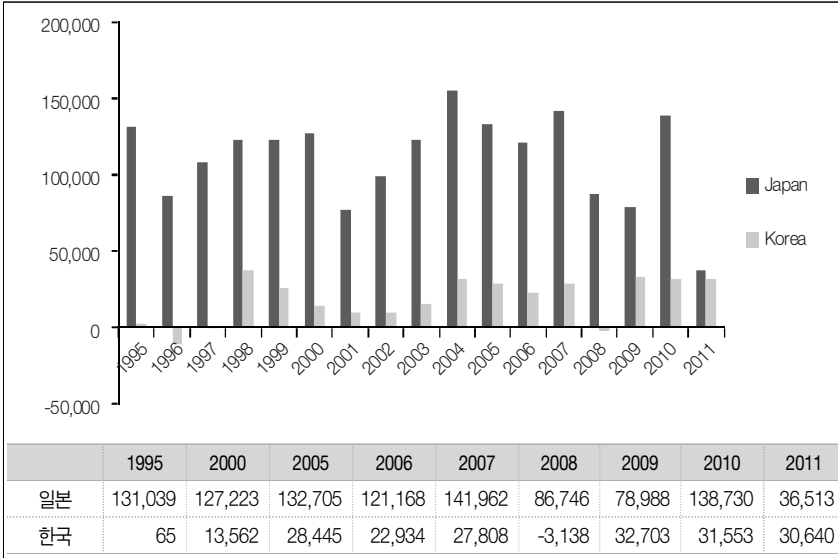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6. 29)를 기초로 작성.

[그림 2-1]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 추이를 도표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2011년을 제외하곤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 흑자가 한국에 비해 엄청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단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에 구조적 전환을 초래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19) 사공목 외(2013, pp. 132~136)는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8년 239억 달러, 2009년 139억 달러인 데 반해 부가가치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117억 달러, 2009년 95억 달러로 추정한다. 다음, 이와 같이 부가가치 무역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인 점을 들어 2010년 이후에는 한·일 간 부가가치 무역경쟁력에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2-1.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수지(1995~201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OECD(2013, p. 74)는 한 국가(*c*)의 특정 산업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 부가가치(Total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 EXGR_DVA)를 [식 2-6]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산업의 수출이 얼마만큼의 국내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수출액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를 국내 해당 산업에서 직접 산출한 부분(EXGR_DDC)과 국내 조달을 통해 다른 산업(supplier industry)에서 간접적으로 산출한 부분(EXGR_IDC), 그리고 해당 산업이 수출한 중간재

가 다시 수입·투입되어 산출한 부분(EXGR_RIM)으로 분해했다. [식 2-6-1]부터 [식 2-6-3]까지는 이 세 가지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3, pp. 77-79).

$$EXGR_DVA = V_c B_{c,c} EXGR_c \quad [\text{식 2-6}]$$

$$EXGR_DDC_c = V_c EXGR_c \quad [\text{식 2-6-1}]$$

$$EXGR_IDC_c = V_c (I - A_c)^{-1} EXGR_c - EXGR_DDC_c \quad [\text{식 2-6-2}]$$

$$EXGR_RIM_c = V_c B_{c,c} EXGR_c - EXGR_DDC_c - EXGR_IDC_c \quad [\text{식 2-6-3}]$$

단 V_c 는 국가 c 의 부가가치계수 행렬, $B_{c,c}$ 는 WIOT에서 글로벌 Leontief 역행렬 (B) 중 국가 c 에 해당하는 대각블록 행렬, $EXGR_c$ 는 국가 c 의 산업별 총수출액, $(I - A_c)^{-1} = B_c$ 는 국가 c 의 Leontief 역행렬, A_c 는 국가 c 의 투입산출계수 행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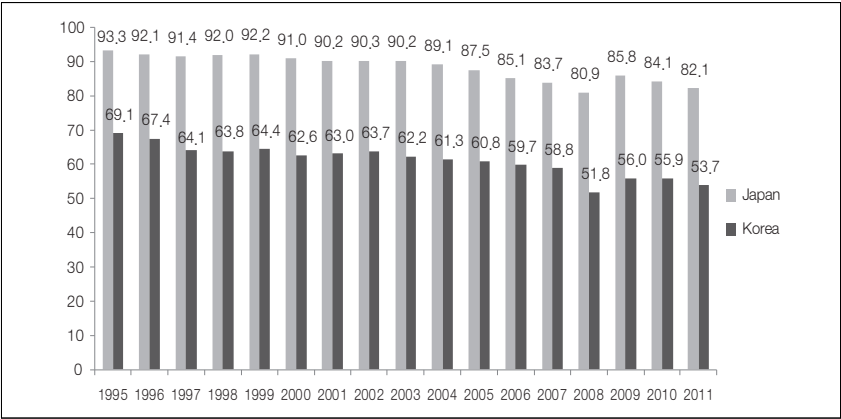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2000년대 중반부터 90% 아래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2011년의 경우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일본 82.1%, 한국 53.7%로 추정되었다. 일본처럼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로 산출되는 국내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일본의 수출에는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처럼 그 비율이 낮으면 외국 중간재가 갖는 의미가 크고, 그만큼

수출에 중간재의 수입이 중요함을 의미한다(OECD 2013, p. 74).

[표 2-11]은 EU-WIOT 2011 데이터에 기초하여, 35개 산업별로 일본의 산업별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를 상기 세 부분으로 분해한 다음, 이 4개 변수값을 산업별로 각각 단순평균한 값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해당 산업이 수출한 중간재가 다시 수입·투입되어 산출한 부가가치는 매우 미미한 대신, 국내 동일 산업 내지는 연관 산업에서 산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일본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 추이(1995~2011년)

(단위: %)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11. 일본의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의 분해(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EXGR_DVA	EXGR_DDC	EXGR_IDC	EXGR_RIM
일본	금액	727,587	306,137	419,012	2,438
	비중	100,0	42,1	57,6	0,3
한국	금액	326,507	147,830	177,138	1,539
	비중	100,0	45,3	54,3	0,5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12. 일본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부가가치(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코드 ¹⁾ (산업)	일본		한국	
	수출 부가가치 ²⁾	비중	수출 부가가치 ²⁾	비중
3(음·식료품, 담배)	5,743	1.5	2,225	1.1
4(섬유 및 섬유제품)	5,055	1.4	5,495	2.7
5(가죽 및 가죽제품)	205	0.1	454	0.2
6(목재 및 목재제품, 코르크)	1,637	0.4	390	0.2
7(펄프, 종이, 인쇄 및 출판)	11,672	3.1	4,025	2.0
8(코크스, 정유 및 핵연료)	16,285	4.4	5,034	2.5
9(화학 및 화학제품)	36,221	9.7	19,057	9.4
10(고무 및 플라스틱)	19,005	5.1	9,093	4.5
11(기타 비금속 광물)	7,725	2.1	3,512	1.7
12(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77,736	20.8	34,614	17.0
13(기타 기계)	39,892	10.7	16,872	8.3
14(전기 및 광학기기)	78,819	21.1	62,199	30.6
15(운송기기)	71,515	19.1	38,449	18.9
16(기타 제조업 및 리사이클링)	2,423	0.6	1,603	0.8
제조업 전체	373,933	100.0	203,0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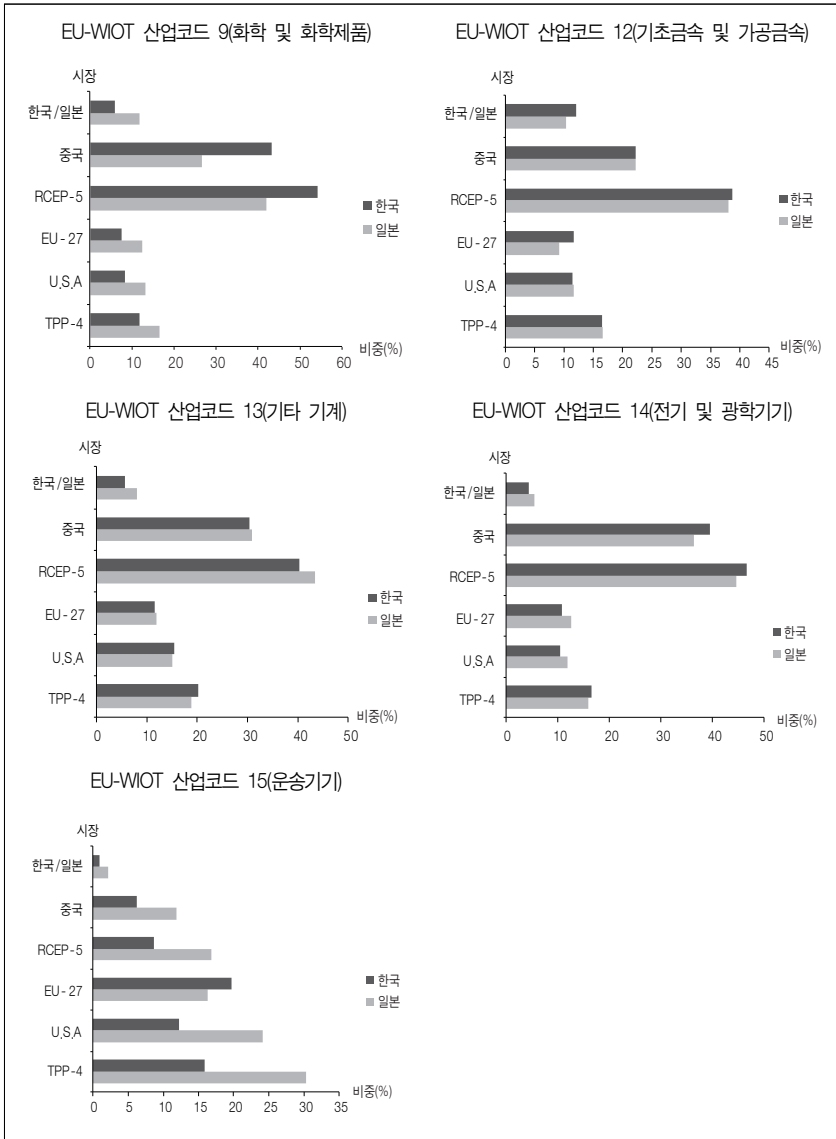
주: 1) 산업코드는 EU-WIOT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이다.

2) 수출 부가가치는 본문 [식 2-6]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EXGR_DVA: Total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를 의미한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12]는 제조업 부문별 수출 부가가치를 한·일 간 비교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동일하게 전기 및 광학기기(산업코드 14),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산업코드 12), 화학 및 화학제품(산업코드 9), 운송기기(산업코드 15), 기타 기계(산업코드 13) 5개 산업이 주력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이 5개 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 자동차 산업으로서 일본의 경우 이 주력산업들의 수출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80%, 한국의 경우는 무려 84%를 차지했다.

그림 2-3.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의 지역·국가별 수출 부가가치 비중(2011년)



주: 1. 세로축의 '시장'에서 '한국/일본'은 각각 일본의 수출상대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의 수출상대국으로서의 일본을 의미.
 2. 가로축의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해당 산업의 수출을 통해 창출한 총국내부가가치 중 해당 지역·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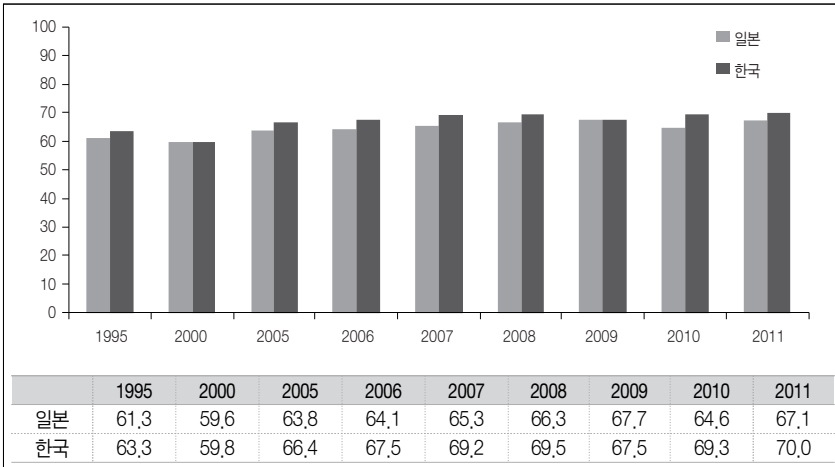
[그림 2-3]은 앞에서 한·일 양국의 주력산업인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 기타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운송기기 5개 산업에 초점을 맞춘 다음, TPP-4, EU-27, RCEP-5 시장을 대상으로 한·일 양국의 해당 산업이 수출을 통해 창출한 총국내부가가치 중 해당 지역·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2-3]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화학 및 화학제품에서는 한국의 경우 중국을 위시한 RCEP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일본은 미국을 위시한 TPP와 EU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단 기타금속 및 가공금속 산업이나 기타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산업에서는 한·일 간 편차가 거의 없는 반면, 자동차산업이 속하는 운송기기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우 TPP는 물론이고 RCEP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유일하게 EU 시장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그림 2-4]와 [표 2-13]은 일본과 한국의 해외 지역·국가별 중간재 수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EU-WIOT에서 중간재 수출부분만을 취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2011년 기준 일본의 전체 수출액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1%이고 한국의 경우는 70.0%이다(그림 2-4 참고). 1995년 이후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일본에 비해 높고, 한·일 양국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최종수요가 아닌 산업의 중간투입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4. 일본의 중간재 수출 비중(1995~2011년)

(단위: %)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중간재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을 포함하는 RCEP 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전체 중간재 수출 중 34.7%가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에 집중되었고, 미국을 포함하는 TPP-4의 비중은 13.4%, EU-27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역별 중간재 수출구조는 일본의 메가 FTA 협상에서의 관심의제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일본이 TPP나 일·EU FTA 협상보다는 RCEP 협상에서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을 바탕으로 RCEP 지역에 대한 자국산 중간재 수출, 나아가 역내 원산지 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임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2-13.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일본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PP-4	79,666	13.4	49,520	11.6
(미국)	56,260	9.5	31,769	7.5
EU-27	54,405	9.2	58,907	13.8
RCEP-5	206,335	34.7	154,906	36.4
(중국)	135,814	22.9	131,802	31.0
(일본)	-	-	41,526	9.8
(한국)	44,766	7.5	-	-
해외전체	594,168	100.0	425,569	100.0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그렇다면 관점을 약간 바꾸어서,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해당 지역·국가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측정해보자.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2013)은 3개국, 3개 산업을 상정한 WIOT에서 국가1의 최종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국가1, 국가2, 국가3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를 제시했다. gvc 지표는 국가1의 최종재 수출이 유발하는 각국의 직간접적 중간재 산출액인 gsc를 부가가치로 환산하였다고 보면 된다.

국가1의 gsc_1 과 gvc_1 를 [식 2-2]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각각 [식 2-7], [식 2-8]과 같다.²⁰⁾

20)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2013), pp. 13~14.

$$\begin{aligned}
gsc_1 &= \sum_{k=1}^{\infty} A^k \begin{bmatrix} f^{12} + f^{13} \\ 0 \\ 0 \end{bmatrix} \\
&= (L - I) \begin{bmatrix} f^{12} + f^{13} \\ 0 \\ 0 \end{bmatrix} = \left(\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 \begin{bmatrix} I & 0 & 0 \\ 0 & I & 0 \\ 0 & 0 & I \end{bmatrix} \right) \begin{bmatrix} f^{12} + f^{13} \\ 0 \\ 0 \end{bmatrix} \\
&= \begin{pmatrix} gsc_1^1 \\ gsc_1^2 \\ gsc_1^3 \end{pmatrix} \quad [\text{식 2-7}]
\end{aligned}$$

- 국가1이 국가2와 국가3에 각각 $f^{12}(3 \times 1)$, $f^{13}(3 \times 1)$ 만큼 최종재를 수출하였다면, 1차적으로 국가1의 중간재 생산을 $A^{11}(f^{12} + f^{13})$ 만큼 유발할 것이며, 국가2와 국가3의 중간재 생산도 각각 $A^{21}(f^{12} + f^{13})$, $A^{31}(f^{12} + f^{13})$ 씩 유발
- 이러한 중간재 생산 유발효과는 1차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대까지 지속될 것이므로, gsc는 [식 2-7]의 첫 번째 수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식 2-7]의 두 번째 수식은 Leontief 역행렬(L)과 투입계수 행렬(A)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 수식에서 벡터(9×1)는 국가 1의 최종재 수출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국가1(gsc_1^1), 국가2(gsc_1^2), 국가3(gsc_1^3)의 중간재를 나타낸다.

$$gvc_1 = \hat{V}L \begin{bmatrix} f^{12} + f^{13} \\ 0 \\ 0 \end{bmatrix} = \begin{bmatrix} \hat{V}^1 & 0 & 0 \\ 0 & \hat{V}^2 & 0 \\ 0 & 0 & \hat{V}^3 \end{bmatrix} \begin{bmatrix} L^{11} & L^{12} & L^{13} \\ L^{21} & L^{22} & L^{23} \\ L^{31} & L^{32} & L^{33} \end{bmatrix} \begin{bmatrix} f^{12} + f^{13} \\ 0 \\ 0 \end{bmatrix} \quad [\text{식 2-8}]$$

단 v 는 부가가치계수(각 국가, 산업의 부가가치를 해당 국가의 총산출로 나눈 값) 행 벡터(1×9)이다.

$$v = [V_1^1, V_2^1, V_3^1, V_1^2, V_2^2, V_3^2, V_1^3, V_2^3, V_3^3] \equiv [v^1, v^2, v^3],$$

$$v^1 = (V_1^1, V_2^1, V_3^1) \text{의 행 벡터}(1 \times 3),$$

$\hat{V}^c$: 국가 $c(c = 1, 2, 3)$ 의 부가가치계수 벡터(v^c) 원소(V_1^c, V_2^c, V_3^c)를 대각 원소로 하는 행렬(3×3),

$\hat{V}$: 부가가치계수 벡터(v)의 원소를 대각원소로 하는 행렬(9×9).

표 2-14. 일본의 gsc/gvc 지표(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일본				한국			
	gsc		gvc		gsc		gv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PP-4	16,573	3.4	8,202	2.8	23,313	6.0	11,877	6.8
(미국)	8,889	1.8	4,338	1.5	13,292	3.4	6,766	3.9
EU-27	11,547	2.4	4,300	1.4	19,482	5.0	7,483	4.3
RCEP-6	417,132	85.8	268,236	90.1	302,176	77.5	134,093	77.0
(중국)	28,952	6.0	8,012	2.7	44,007	11.3	12,426	7.1
(일본)	378,647	77.9	255,150	85.7	21,001	5.4	7,336	4.2
(한국)	9,161	1.9	2,421	0.8	225,022	57.7	107,774	61.9
전체	485,906	100.0	297,566	100.0	389,758	100.0	174,075	100.0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14]와 [표 2-15]는 일본과 한국의 최종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자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국가의 중간재 생산(gsc)과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창출액(gvc)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최종재 해외 수출은 대부분 자국의 중간재 생산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액은 총 2,918억 달러였는데, 이와 같은 최종재 수출은 일본 자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했고, 이 중 77.9%인 3,786억 달러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을 유발했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최종재 수출에 따른 한국 자국의 중간재 생산 유발 비중은

57.7%, 중간재 유발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귀속률은 61.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최종재 수출의 국내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국내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강함을 시사한다.

[표 2-15]를 보면, 이와 같은 일본의 최종재 수출에 따른 자국 중간재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9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2-16]은 제조업에 국한하여 2011년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총투입 중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총중간재 투입 중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8%로 한국의 23.9%에 비해 훨씬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국내 중간재 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생산과정에서도 외국보다는 국내 중간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표 2-15. 일본의 gvc 지표의 지역·국가별 비중 추이(1995~2011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PP-4	1.9	2.6	2.2	2.3	2.5	2.9	3.0	3.4	2.6	2.8	2.8
(미국)	1.4	1.9	1.6	1.6	1.7	1.9	1.9	2.1	1.7	1.6	1.5
EU-27	1.1	1.3	1.5	1.7	1.7	2.0	2.2	2.4	1.6	1.4	1.4
RCEP	94.9	93.1	92.9	92.3	91.4	89.9	89.1	87.3	91.1	90.8	90.1
(중국)	0.3	0.6	1.0	1.2	1.4	1.7	2.0	2.3	2.4	2.4	2.7
(일본)	94.1	91.8	91.1	90.3	89.1	87.0	85.9	83.4	87.6	86.9	85.7
(한국)	0.5	0.5	0.6	0.7	0.7	0.8	0.8	0.6	0.5	0.7	0.8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표 2-16. 일본의 제조업 부문별 중간재 수입 비중(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EU-WIOT 산업코드	일본		한국	
	중간재 수입 총액	중간재 수입 비중	중간재 수입 총액	중간재 수입 비중
3(음·식료품, 담배)	23,129	7.4	10,454	16.1
4(섬유 및 섬유제품)	2,501	8.2	6,004	18.7
5(가죽 및 가죽제품)	164	4.7	583	12.8
6(목재 및 목재제품, 코르크)	3,881	11.1	1,095	24.1
7(펄프, 종이, 인쇄 및 출판)	5,686	6.5	3,925	15.0
8(코르크스, 정유 및 핵연료)	106,718	76.5	107,284	86.8
9(화학 및 화학제품)	28,153	11.0	30,210	25.9
10(고무 및 플라스틱)	10,972	8.2	8,748	22.1
11(기타 비금속 광물)	10,593	19.3	4,112	19.5
12(기초금속 및 가공금속)	85,272	17.9	59,163	24.0
13(기타 기계)	19,906	11.6	15,124	17.8
14(전기 및 광학기기)	33,947	10.8	58,116	24.6
15(운송기기)	25,499	6.2	24,130	13.4
16(기타 제조업 및 리사이클링)	2,582	7.4	1,769	13.4
제조업 평균	-	14.8	-	23.9

주: 각 산업에 투입된 중간재 총액 중 수입 중간재의 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EU-WIOT(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조업 부문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수출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 기존 RCA(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표는 [식 2-9]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상응하게끔 각국의 특정 제조업 부문이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특정 제조업 부문이 아무리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국가의 국내부가가치나 고용 등 GDP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한다면 기존 RCA 지표의 의의는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OECD(2013)가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based on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는 각 국가의 제조업 부문이 수출로 창출한 국내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경쟁력을 측정하며, 그 측정방법은 [식 2-10]과 같다. 단 수출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 기존 RCA 지표는 RCA_EXGR(export gross)로 표기하고, 부가가치 기준 RCA는 RCA_EXGRDVA(export gross domestic value added)로 표기한다. RCA 지표나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 모두 제조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WIOD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표 2-16]과 마찬가지로 코드 3부터 16까지 14개 산업에 해당한다.²¹⁾

$$RCA_EXGR_{c,i} = \frac{\sum_p EXGR_{c,p,i} / \sum_{p,i} EXGR_{c,p,i}}{\sum_{c,p} EXGR_{c,p,i} / \sum_{c,p,i} EXGR_{c,p,i}} \quad [\text{식 2-9}]$$

$$RCA_EXGRDVA_{c,i} = \frac{\sum_p EXGRDVA_{c,p,i} / \sum_{p,i} EXGRDVA_{c,p,i}}{\sum_{c,p} EXGRDVA_{c,p,i} / \sum_{c,p,i} EXGRDVA_{c,p,i}} \quad [\text{식 2-10}]$$

21) 기존 RCA 지표와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의 측정방식을 나타내는 [식 2-9]와 [식 2-10]은 OECD(2013), p. 82에서 인용.

$EXGR_{c,p,i}$: 국가 c 의 제조업 i 부문이 국가 p 에 수출한 금액. 단 $c \neq p$.

[식 2-9]의 분자는 국가 c 의 제조업 수출총액 중 제조업 i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고, 분모는 세계 전체의 제조업 수출총액 중 제조업 i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 RCA 지표는 국가 c 의 제조업 i 부문이 다른 국가의 제조업 i 부문에 비해 얼마나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EXGRDVA_{c,p,i}$: 국가 c 의 제조업 i 부문이 국가 p 에 수출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단 $c \neq p$.

[식 2-10]의 분자는 국가 c 의 제조업 총수출이 창출한 국내부가가치 중 제조업 i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고, 분모는 세계 전체의 제조업 총수출이 창출한 국내부가가치 합계액 중 제조업 i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는 국가 c 의 제조업 i 부문이 다른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 비해 수출 한 단위로 얼마나 많은 국내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그림 2-5]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제조업 경쟁력 실태를 기존 RCA 지표를 통해 보고 있다.²²⁾ 2000년대 들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제조업의 위상이 다소 하락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일본 제조업보다는 한국 제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더욱 눈에 띄고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 제조업의 RCA 지수가 1995년 1.257, 2000년 1.229, 2005년 1.183, 2011년 1.174로 측정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1995년 0.853, 2000년 0.821, 2005년 0.684, 2011년 0.666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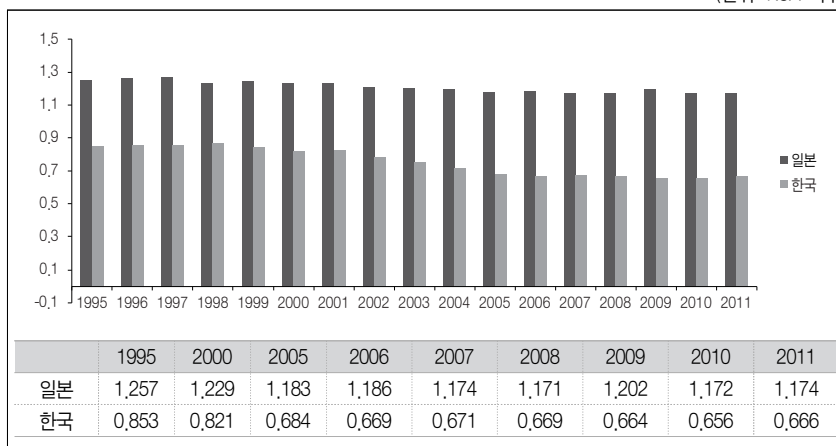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부가가치 기준 RCA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그림 2-6]에 제시한 것처럼,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1995년 0.9에서 2000년 0.842, 그리고 2005년 0.745, 2011년 0.734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까지 0.76에서 0.77 사이를

22) 기존 RCA 지표를 측정하는 데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지 않고, EU-WIOT,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에서 각국의 수출입통계를 별도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0.78에서 0.79 정도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²³⁾ 특히 2011년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10년의 0.786과 거의 차이가 없는 0.785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5. 일본의 기존 RCA 지표 추이(1995~2011년)

(단위: RCA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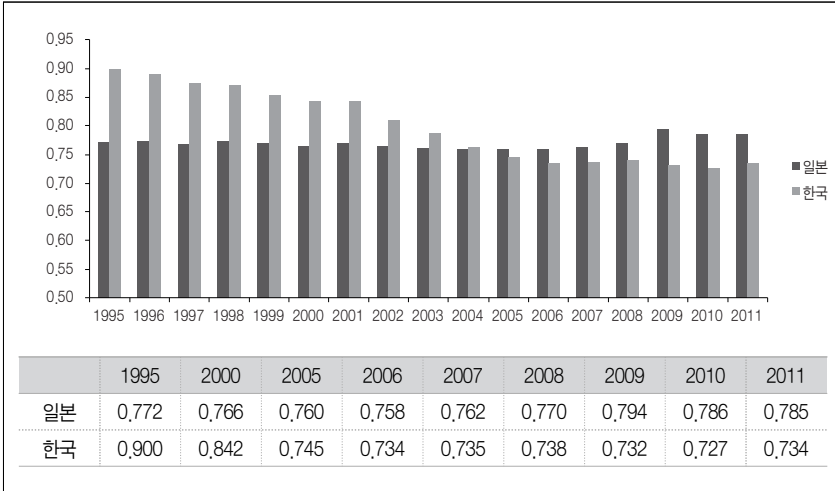
주: 기존 RCA 지수의 측정방법은 [식 2-9] 참고.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 23) 2011년 한·일 간 부가가치 기준 RCA 지수를 제조업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섬유 및 섬유제품(0.508 대 0.254), 가죽 및 가죽제품(0.242 대 0.059), 전기 및 광학기기(1.734 대 1.193), 기타 제조업 및 리사이클링(0.239 대 0.196) 분야에서만 일본보다 높게 나오고, 음·식료품 및 담배(0.176 대 0.247), 목재 및 목재제품, 코르크(0.142 대 0.323), 펄프, 종이, 인쇄 및 출판(0.444 대 0.699), 코크스, 정유 및 핵연료(0.578 대 1.014), 화학 및 화학제품(0.742 대 0.766), 고무 및 플라스틱(1.023 대 1.161), 기타 비금속 광물(0.826 대 0.986),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1.068 대 1.302), 기타 기계(0.780 대 1.001), 운송기기(1.770 대 1.788)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낮게 나오고 있다.

그림 2-6.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 추이(1995~2011년)

(단위: 부가가치 기준 RCA 지수)



주: 부가가치 기준 RCA 지수의 측정방법은 [식 2-10] 참고.

자료: EU-WIOT(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을 기초로 작성.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일본의 기발효 FTA 협정문을 ASEAN 국가와의 FTA, 역외국인 중남미 국가와의 FTA, 선진국인 스위스와의 FTA로 구분하여, FTA별로 체결 목적과 협상결과인 협정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⁴⁾

첫째, 일본은 FTA 대상 가운데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ASEAN을 최우선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국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간 협상을 선호한 점이 특징적이다. ASEAN 국가들이 일본의 FTA 최우선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는 2002년 일본의 FTA 전략에 비추어볼 때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아시아 역내 관계 강화,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외교전략적 활용가치,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일본의 ASEAN에 대한 협상 우위 등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²⁵⁾ 일본은 이러한 FTA 전략에 입각하여 총 13건의 기발효 FTA 중 9건을 ASEAN 역내 국가 및 ASEAN 전체와 체결했다. 일본의 ASEAN 역내국과의 FTA 체결과정을 보면, ASEAN 주요국과 우선적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한 이후, ASEAN 전체와의 다

24) 일본이 체결한 FTA 협정문과 관련해서는 일본 税関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htm#india>(검색일: 2014. 8. 3)에 협정별 협정문, 실행관세율 양허표, 원산지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25) 外務省(2002)은 FTA 대상 중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① 경제적 기준(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 ② 지리적 기준(아시아 역내 관계 강화, 다른 지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③ 정치외교적 기준(우호관계 강화, 외교전략적 활용), ④ 현실가능성 기준(민감품목, 상대국의 열의 및 요청 등), ⑤ 시간적 기준(일본의 협상능력, WTO 협상관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일본 정부는 ASEAN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을 FTA 우선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外務省(2002), 「日本のFTA戦略」, [http:// www.mofa.go.jp/mofaj/gaiko/fta/senryaku.html](http://www.mofa.go.jp/mofaj/gaiko/fta/senryaku.html)(검색일: 2014. 7. 3).

자간 FTA는 나중에 추진한 점이 특징적이다.²⁶⁾

일본정부가 ASEAN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협정문 구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SEAN 역내국과의 FTA 협정문 각 장(章, chapter)의 조항 수를 비교하면, 상품 관련 내용(9건의 대ASEAN FTA 평균 기준으로 상품관세 철폐 11.0, 원산지 규정 20.0, 통관 6.7)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투자(15.5), 서비스(14.6), 협력(9.3)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긴급수입제한과 정부조달은 독립적인 장(章)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일본은 ASEAN과의 FTA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 원활화를 도모하여 일본기업의 ASEAN 내 경영환경 개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인 의미의 FTA보다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의미에서 EPA를 사용하며,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정책, 교육·인재양성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실제 협력분야의 협상과정에서 수세적인 방어자세를 견지하며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협력분야는 상대국별로 신축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대상으로 기술협력이나 전문가 파견 등 ODA를 활용한 기술협력을 시행한 반면,²⁷⁾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간호사 및 간병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²⁸⁾

26) 한국과 중국이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한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개별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우선 체결한 점이 특징이다.

27) 일본정부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베트남 일본인재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2010년 9월부터 4년 동안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28)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EPA 협정을 토대로 2008~14년 동안(누적

둘째, 일본은 2005년 4월 ASEAN 이외의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이후 칠레, 페루와도 FTA를 체결했다. EPA 우선체결대상국으로 멕시코가 선택된 것은 멕시코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과 EU 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도록 일본정부에 멕시코와의 EPA 체결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상대국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멕시코와 FTA 협상을 시작했다(김양희 외 2008, p. 69).

[표 3-1]을 통해 중남미 국가와의 FTA 협정문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품양허와 투자 분야를 중시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 관련 조항(중남미 3개국 평균 기준으로 상품관세 철폐 18.7, 원산지 규정 29.3)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관세 철폐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도 6~8개(ASEAN 국가, 스위스, 인도 등은 2~3개)로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멕시코, 칠레에 대해서는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조항(멕시코 40, 칠레 34)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페루의 경우 일·페루 투자협정이 먼저 발효(2009년 11월 10일)되어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보호를 보장받게 됨에 따라, FTA 협정문에는 별도의 투자에 관한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페루 투자협정 내용은 일본이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FTA의 투자에 관한 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기준) 간호사 후보자 839명, 간병인 후보자 1,50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다. 이 연수 대상자 중 일본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한 간호사와 간병인은 2008~13년 동안 각각 128명, 242명으로 집계되었다(厚生労働省 2014, pp. 3~4).

표 3-1. 일본의 기발효 FTA 포함 항목 비교

	싱가포르 '02.11	멕시코 '05.4	말레이시아 '06.7	칠레 '07.9	필리핀 '08.12	태국 '07.11	ASEAN '08.12	브루나이 '08.7	인도네시아 '08.7	스위스 '09.9	베트남 '08.10	인도 '11.8	페루 '12.3
상품관세 철폐	11	19	11	17	13	12	10	10	11	15	10	10	20
긴급수입제한	(T3)	6	(T2)	(T7)	(T3)	(T2)	(T2)	(T2)	(T2)	(T2)	(T2)	(T3)	(T8)
원산지 규정	13	28	24	25	22	23	15	25	23	(T1)	15	16	35
통관	5	(T1)	8	7	7	7	(T1)	7	6	7	7	8	13
위생·식물검역		(T4)	5	5			5			4	5		4
투자	19	40	21	34	21	25	1	18	19	19		19	
서비스	13	10	18	11	17	19	1	16	16	19	17	16	15
금융서비스	(A6)	6	(A6)	12				(A4)		(A9)	(A4)	(A7)	(A12)
TBT, 상호 인증	13				10	9	7	(S1)	(S1)	6	7	7	11
정부조달	2	12		22	4	2		(B1)	2	3	(B1)	6	24
지식재산권	(A5)		19	8	14	23		(B1)	18	23	19	8	22
경쟁	3	5	3	6	3	5			5	4	6	7	6
인적이동	6	6		7	9	7			5	8	5	10	10
분쟁해결	10	10	9	14	11	9		10	11	11	9	10	16
전기통신	(A8)									(A10)		(A15)	17
전자상거래										14			
투자환경 개선		3	5	3	6			5	3	6	6	5	5
협력	34	11	6		5	7	7	6	4	4	5	5	4

주: 1. 각 칸의 수치는 협정문에 해당 장이 있는 경우 조(article)의 개수를 의미.

2. () 안에 수치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장이 없이 여타 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과 조의 수치를 의미
(‘T’는 관세 철폐, ‘C’는 통관, ‘S’는 서비스, ‘I’는 투자, ‘B’는 투자환경 개선, ‘A’는 부속서).

자료: 김양희외(2008), p. 79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있다. 구체적으로 ① 투자재산의 보호, ② 투자허가단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 부여, ③ 특정 조치 이행요구(현지 조달, 기술이전 등)의 원칙적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정부조달 관련 조항 수를 보면, ASEAN 국가와의 FTA 협정문 조항 수가 2~4개인 데 반해 중남미 국가와의 FTA 협정문에는 많은 조항(멕시코 12개, 칠레 22개, 페루 24개)이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

이 일본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 중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멕시코, 칠레, 페루와의 FTA를 대상으로 정부조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ASEAN과의 FTA가 완료된 이후, 일본은 선진국 간 최초의 FTA인 일·스위스 FTA(2009년), 거대경제권인 일·인도 FTA(2011년)를 발효시켰다. 이러한 FTA 상대국의 다변화는 일본의 FTA 정책기조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FTA 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역내국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FTA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2006년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글로벌 전략’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원수출국, 인구대국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이자 거대경제권과는 FTA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ASEAN 역내국 중 싱가포르와 먼저 FTA를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협상을 체결하기 이전에 FTA 시범모델로서 스위스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스위스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상품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인증수출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자율증명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조치는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의 기업행동에 조건을 덧붙이는 특정 조치 이행요구(현지 조달, 자국민 고용, 기술이전 요구 등)에 대한 금지원칙을 WTO TRIMs 협정(무역관련 투자조치,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과 동

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 투자 활동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포괄주의 양허방식을 채용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성과를 도출했다. 넷째, 일본이 FTA에서 처음 도입한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공평성을 약속했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는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내용(국경조치 강화, 민·형사상 구제조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와인·치즈·초콜릿 등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 Indication) 및 식물 신품종 보호를 포함했다(經濟産業省 2009, pp. 7~10.)

지금까지 발효된 FTA의 상대국별 협상목표를 협정문 구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일본의 FTA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일본정부의 상대국 선정기준은 동아시아와의 연대를 중시하면서도 자국의 선정기준과 협상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중남미, 선진국 등)되는 변화를 추구해왔다. 둘째, 일본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투자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중점분야(ASEAN 국가 대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는 정부조달시장 개방)를 신축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협상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금까지 일본의 FTA 대상국은 농업에 대한 상대국의 양보가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큰 반대 없이 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서 선정된 국가들이다. 그 결과 일본은 FTA 체결을 통해 국내 구조개혁을 실행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일본정부가 새로운 FTA 전략으로 메가 FTA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정부는 스위스와의 FTA를 발효한 이후, 2010년 11월 9일 「포괄적 경제 연계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FTA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농업, 자연인 이동 등의 국내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발표했다.²⁹⁾ 이 방침에서 구체적인 FTA 상대국(페루, 호주, 한국, 한·중·일, RCEP, 몽골, EU, GCC 등)으로 언급된 국가 중 페루와의 FTA만 2012년 3월에 발효되었고, 호주와의 FTA는 2015년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2013년 ‘일본부흥(再興)전략’을 통해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RCEP, 한·중·일 FTA 등 광역 FTA와 병행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지향한다는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했다.³⁰⁾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FTA 정책기조는 메가 FTA 추진이라는 대전환을 통해 과거와 전혀 다르게 변화되었다. 여기서는 일본의 FTA 정책순위가 가장 높은 TPP 협상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TPP 협상에서의 쟁점을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29) 首相官邸. 2010. 「包括的經濟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平成22年11月9日閣議決定). <http://www.kantei.go.jp/kakugikettei/2010/1109kihonhousin.html>(검색일: 2014. 3. 3).

30) 首相官邸. 2013a. 「日本再興戦略」(平成25年6月14日).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ai/pdf/saikou-ipn.pdf>(검색일: 2014. 8. 3).

표 3-2. TPP 협상분과 및 일본의 기발효 FTA 포함 항목 비교

TPP 협상분과	P4	한·미 FTA	일본의 중점분야
상품무역(농업)	상품무역	상품무역(농업)	◎
상품무역(섬유·의류)		상품무역(섬유·의류)	
상품무역(공업품)		상품무역(의약품·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	●
무역 원활화	통관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	○
위생·식물검역	위생·식물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무역 기술장벽	무역 기술장벽	무역 기술장벽	○
경쟁(국유기업)	경쟁	경쟁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정부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
투자		투자	●
국경 간 서비스	서비스무역	국경간 서비스	◎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
전기통신서비스		통신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
일시입국(상용관계자 이동)	일시입국		○
제도적 조항	투명성	제도규정	○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
협력(기술, 인재)	전략적 연계협력		○
환경		환경	X
노동		노동	X
분야횡단적 사항			X

주: 1) TPP는 협상분과 구성에 기초하였고, P4와 한·미 FTA는 협정문 구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 일본 중점분야는 13개의 기발효 FTA 협정문 조의 개수 평균 기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조항 수가 20개 이상이면 ●, 10~19개이면 ◎, 10개 미만이면 ○, 독립된 규정의 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였다. 단 전기통신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문은 각각 페루, 스위스와 FTA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자료: 山澤・馬田・国際貿易投資研究会(2012), p. 228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는 TPP 협상분과를 중심으로 P4, 한·미 FTA, 일본의 기발효 FTA 포함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TPP 템플릿은 24개 TPP 협상분과를 기본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TPP의 협상분과 구성은 TPP 전신인 P4보다는 한·미 FTA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PP 협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WTO plus’를 목표

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TPP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결과 관세철폐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절차 간소화 등의 요소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石川 2012, pp. 8~9).

상품무역에서는 별도의 분과로 구성된 농업, 섬유·의류의 중요성이 높고, 서비스무역도 국경 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4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PP에서는 노동과 환경 분야가 본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다. 분야횡단적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적 내용을 논의하며, 합의사항이 TPP의 독립장으로 확보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馬田, 浦田, 木村編 2012, p. 39).

24개의 TPP 협상분과 중 지금까지 일본의 기발효 FTA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는 노동, 환경, 분야횡단적 사항이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협상분야를 중심으로 TPP의 협상이슈를 살펴보고, 일본의 체결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TPP 협상에서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전제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기발효 FTA에서는 필리핀과 스위스를 대상으로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일·칠레 양국은 FTA 서명 시 P4의 노동 양해각서 내용(ILO 가맹국의 의무 및 약속 재확인, 국내법과 국제협정의 조화,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법 기준 완화 금지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³¹⁾

31)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발효 FTA 협정문에서 독립적인 장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FTA에서 투자 협력조항의 일부(일례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칠레 FTA에서 양국은 FTA 서명 시 환경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³²⁾

분야횡단적 사항(Cross-cutting Issue)은 미국의 요구로 TPP 협상분과에 포함되었다. 해당 분야는 미국의 기체결 FTA에도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규제 제도 간 조화, 서플라이 체인 효율화, 중소기업의 FTA 이용 촉진·개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³³⁾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이하에서는 TPP 협상의 핵심 쟁점이자 일본 FTA에서 중요도가 높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분야를 대상으로 기발효 FTA 협정문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시장접근 관련 규범에는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SG),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70.

32)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p. 66~67.

33)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9.

통관, 무역구제 등에 대한 규범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상품양허조치를 다루는 상품무역은 일본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이다. 상품무역 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내국민대우, 관세 철폐, 수출세, 소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별도로 구체적인 관세 철폐방식, 품목별 상품양허수준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있다.

상품무역 장의 구조와 대상범위는 상대국별로 관심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ASEAN 회원국과의 FTA는 협정문 구성 측면에서 장(chapter)과 조항(article)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상품무역 장에서 하나의 조항으로만 다루고 있다. 멕시코 및 칠레와의 FTA에서는 장과 조 사이에 절(section)을 두고 있다. 특히 일·칠레 FTA의 경우 양자간 SG를 상품무역 장 내 별도의 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만큼 이 상대들과의 FTA에서 어느 일방이든 FTA 이후의 수입급증을 우려했

표 3-3. 상품관세 철폐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상품관세 철폐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협정문 구성	- 협정문 내용은 공통적으로 내국민대우, 관세 철폐, 수출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소위원회 등의 규정 마련 - 구체적인 관세 철폐방식, 품목별 철폐기간 및 철폐기준 세율 등은 양허표로 불리는 부속서에서 규정
양허 수준	- 양허수준(품목 수 기준) ○ 즉시 철폐 비율: 75.3~80.0% ○ 10년 이내 관세 철폐 비율: 84.4~88.4% 전후 ○ 관세 철폐 예외 비율: 10.9~15.6%(예외 품목 수는 약 940개이며, 이 중 농림수산물 850개, 광공업품 90개로 집계)
기타	-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기에 대한 제한 없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 모든 기발효 FTA - 반덤핑제도에 대한 WTO 플러스 규정: 일·인도 FTA - 수출세 폐지 규정: 일·싱가포르 FTA, 일·스위스 FTA, 일·페루 FTA - 통관규정: 무역규정의 투명성 향상, 무역절차 간소화, 세관 당국 간 협력 촉진 등을 규정

자료: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a/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5, p. 13, p. 23.

음을 보여준다(김양희 외 2008, p. 101). 스위스와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상품관세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인도 FTA의 상품무역 장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근무일수 기준) 이전까지 그 신청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TPP 협상에서 최대 현안은 일본의 농림수산물 양허수준이다. TPP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외 없는 100% 자유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³⁴⁾ 지금까지 일본의 기발효 FTA의 양허수준(품목 수 기준)은 10년 이내 관세 철폐 비중이 84.4~88.4% 전후이며, 관세 철폐 예외 비중이 10.9~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허수준을 낮추게 하는 요인은 관세 철폐 예외품목이 농림수산물 기준으로 850개 품목(반면 광공업품은 90개 품목)에 달하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양허결과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농림수산물을 양허 예외로 하는 대신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TPP 협상 참여를 위해서는 10년 이내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TPP 대원칙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물의 관세 철폐를 더 이상 견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 제외품목을 축소하여 양허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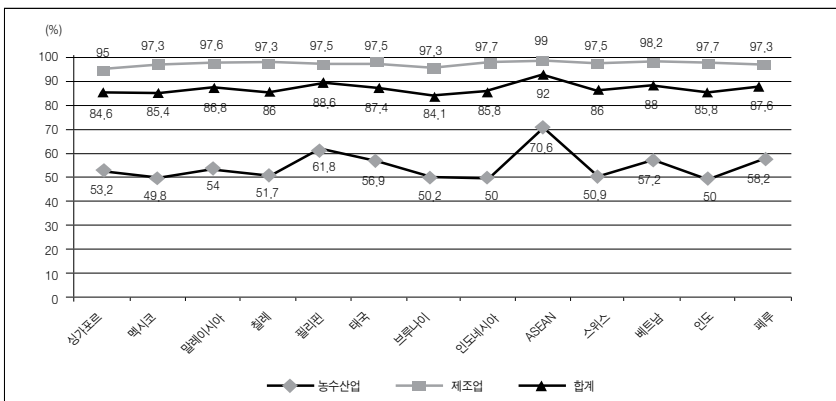
34) P4 협정에서는 관세 철폐 제외품목으로 칠레의 설탕 및 제품, 브루나이의 술, 담배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제외품목의 비중(품목 수 기준으로)은 각각 0.1%, 0.8% 수준에 불과하다.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4.

35)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5.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일본 기발효 FTA의 상품양허를 품목 수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양희 외(2008), 김양희(2009), 久野, 木村(2007)가 대표적이다.³⁶⁾ 김양희 외(2008)는 6건(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의 FTA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 김양희(2009)는 새로이 발효된 2건(브루나이, 필리핀)의 FTA를 추가하여 8개국의 상품양허 실태를 분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종래 파악이 어려웠던 품목 수 기준의 상품양허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양희(2009)의 분석방법을 토대로 하되, FTA 대상을 13개국으로 확대하여 2012년 4월 기준 세부 품목별 품목 수 기준의 양허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³⁷⁾

그림 3-1.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 양허 현황



자료: 김양희(2012), 「일본의 기발효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6) 양허율 산출방법은 일반적으로 품목 수 기준과 무역액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FTA 상대로부터의 총수입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양허품목 수의 비중이며, 후자는 FTA 상대로부터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양허품목금액 비중으로 산출된다.
- 37) 본 연구에서는 김양희(2012)가 구축한 「일본의 기발효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품목 수 기준의 양허율을 분석했다.

표 3-4.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산업별 세부 양허 현황

(단위: %)

		관세 철폐 (A)	단계적 철폐 (C)	관세 인하 (P)	관세 할당 (Q)	재협의 (R)	제외 (X)	합계	양허율
싱가포르	농수산업	35.6	17.6	0.0	-	-	46.8	100.0	53.2
	제조업	94.4	0.6	0.0	-	-	5.0	100.0	95.0
	합계	79.8	4.8	0.0	-	-	15.4	100.0	84.6
멕시코	농수산업	42.3	1.9	0.4	3.4	1.8	50.2	100.0	49.8
	제조업	93.1	3.4	0.0	0.9	0.0	2.7	100.0	97.3
	합계	80.4	3.0	0.1	1.5	0.4	14.6	100.0	85.4
말레이시아	농수산업	36.1	17.7	0.0	0.2	0.0	46.0	100.0	54.0
	제조업	94.8	2.8	0.0	0.0	0.0	2.4	100.0	97.6
	합계	80.2	6.5	0.0	0.0	0.0	13.2	100.0	86.8
칠레	농수산업	32.7	17.3	0.2	1.4	0.0	48.3	100.0	51.7
	제조업	93.8	3.5	0.0	0.0	0.0	2.7	100.0	97.3
	합계	78.6	7.0	0.1	0.4	0.0	14.0	100.0	86.0
필리핀	농수산업	32.1	27.6	1.5	0.6	0.0	38.2	100.0	61.8
	제조업	93.5	4.0	0.0	0.0	0.0	2.5	100.0	97.5
	합계	78.2	9.9	0.4	0.1	0.0	11.4	100.0	88.6
태국	농수산업	35.3	20.6	0.6	0.3	0.0	43.1	100.0	56.9
	제조업	94.7	2.8	0.0	0.0	0.0	2.5	100.0	97.5
	합계	79.9	7.2	0.2	0.1	0.0	12.6	100.0	87.4
브루나이	농수산업	28.9	21.3	0.0	0.0	0.0	49.8	100.0	50.2
	제조업	93.9	1.4	0.0	0.0	0.0	4.7	100.0	95.3
	합계	77.8	6.3	0.0	0.0	0.0	15.9	100.0	84.1
인도네시아	농수산업	28.3	22.6	0.0	0.0	0.0	50.0	100.0	50.0
	제조업	93.1	4.2	0.0	0.0	0.0	2.7	100.0	97.3
	합계	77.0	8.7	0.0	0.0	0.0	14.2	100.0	85.8
ASEAN	농수산업	29.3	18.1	14.3	0.0	8.9	29.4	100.0	70.6
	제조업	93.7	4.5	0.0	0.0	0.9	1.0	100.0	99.0
	합계	77.7	6.9	4.4	0.0	2.9	8.0	100.0	92.0
스위스	농수산업	28.5	21.1	0.9	0.4	0.0	49.1	100.0	50.9
	제조업	94.0	3.2	0.3	0.0	0.0	2.5	100.0	97.5
	합계	77.7	7.7	0.5	0.1	0.0	14.0	100.0	86.0
베트남	농수산업	32.1	24.1	1.0	0.0	0.0	42.8	100.0	57.2
	제조업	93.7	4.0	0.5	0.0	0.0	1.8	100.0	98.2
	합계	78.4	8.9	0.6	0.0	0.0	12.0	100.0	88.0
인도	농수산업	29.6	20.2	0.0	0.2	0.0	50.0	100.0	50.0
	제조업	94.3	3.3	0.0	0.0	0.0	2.3	100.0	97.7
	합계	78.3	7.5	0.0	0.1	0.0	14.2	100.0	85.8
페루	농수산업	30.8	25.7	0.9	0.8	0.0	41.8	100.0	58.2
	제조업	93.8	3.5	0.0	0.0	0.0	2.7	100.0	97.3
	합계	78.1	9.0	0.2	0.2	0.0	12.4	100.0	87.6
평균	농수산업	32.5	19.5	1.5	0.6	0.8	45.0	100.0	55.0
	제조업	94.0	3.1	0.1	0.1	0.1	2.7	100.0	97.3
	합계	78.6	7.3	0.5	0.1	0.3	13.2	100.0	86.8

자료: 김양희(2012), 「일본의 기발효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선 양허유형을 정리하면, 관세 철폐항목에는 협정 체결 당시의 즉시 철폐(A)품목은 물론 2012년 4월 시점에서의 단계적 철폐(C), 관세인하(P) 대상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³⁸⁾ 단계적 철폐(C) 항목은 관세 인하(P), 관세 할당(Q), 재협약(R), 제외(X)를 제외한 기타 유형을 합산했고, 양허율은 전체 상품양허유형 중 제외(X)를 뺀 모든 유형을 합산하여 계산했다.

일본의 13개 FTA의 국별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산업이 55%, 제조업이 97.3%로 양자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그림 3-1 참고). 13개 FTA 평균 기준의 ‘관세 철폐’ 비중은 농수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32.5%, 94%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3.3배나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외’ 비중은 전자가 45%이고 후자는 2.7%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극명하다. 이와 같이 농수산업과 제조업 간 양허수준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 전 품목 대상의 13개 FTA 평균 양허율은 86.8%에 머물고 있다(표 3-4 참고).

FTA별 농수산업의 양허율을 보면, FTA 상대국별로 ASEAN(70.6%), 필리핀(61.8%)이 높은 반면 멕시코(49.8%)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농수산업의 업종별 양허율을 보면, 13개 FTA 평균 기준으로 곡물·과채가 77.5%로 가장 높은 반면, 육류·낙농은 37.1%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농수산품의 양허수준이 55.0%에 불과한 것은 850개의 농림수산품을 양허 예외품목으로 일관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표 3-5 참고).

FTA별 제조업의 양허율을 보면, 일본은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가공광물, 가죽제품, 고무/화학, 의류직물, 종이·목재 등 노동집

38) 일·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2년 발효 당시의 C1~C3(8회 균등 단계 철폐), D(6회 균등 단계 철폐), E(2008년 1월 철폐), F5(2008년 1월 철폐) 항목들은 2012년 기준으로는 즉시 철폐(A)로 편입되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분이 어렵게 된다.

표 3-5. 일본 농수산업의 업종별 양허율

	곡물·과채	수산물	식품	육류·낙농	합계
싱가포르	79.0	40.7	54.4	34.5	53.2
멕시코	56.6	67.2	43.3	43.0	49.8
말레이시아	79.6	42.3	55.2	34.5	54.0
칠레	77.4	39.7	50.4	41.1	51.7
필리핀	80.7	63.4	62.1	36.0	61.8
태국	79.9	48.8	58.1	35.4	56.9
브루나이	79.0	39.8	48.7	34.5	50.2
인도네시아	77.9	42.1	50.1	33.3	50.0
ASEAN	81.5	76.5	71.7	46.8	70.6
스위스	77.1	29.3	54.5	35.0	50.9
베트남	80.1	48.7	59.0	34.8	57.2
인도	79.9	37.5	48.8	34.5	50.0
페루	79.4	62.1	55.4	37.8	58.2
13개 평균	77.5	49.1	54.7	37.1	55.0

자료: 김양희(2012), 「일본의 기발효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약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에 가까운 양허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축제품의 경우 13개 FTA 평균 기준으로 ‘제외’가 32.4%로 나타나, 전체 양허율이 67.6%에 그치며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업종들이 전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에서의 제외 비중은 2.7%에 머물러 있다(표 3-6 참고).

13건의 기발효 FTA를 대상으로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양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일관되게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에서는 100%에 달하는 시장개방을, 농수산업에서는 철저한 시장보호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가 농수산업의 시장보호라는 FTA 협상의 대전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FTA 추진전략상 자국의 농수산업 시장보호가 가능했던 FTA 상대국 위주로 소극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표 3-6. 일본 제조업의 업종별 양허율

	가공 광물	가죽 제품	고무/ 화학	기계/ 기기 등	기타 제조품	비금속 광물	의류 직물	정밀 기계	종이 목재	합계
싱가포르	97.8	29.3	98.6	100.0	98.4	99.6	94.7	98.8	89.3	95.0
멕시코	99.4	74.7	97.6	100.0	100.0	100.0	97.5	100.0	89.0	97.3
말레이시아	99.8	73.8	99.3	100.0	100.0	100.0	97.0	100.0	92.1	97.6
칠레	99.8	73.8	99.3	100.0	100.0	100.0	97.0	100.0	87.0	97.3
필리핀	99.8	73.8	99.5	100.0	100.0	100.0	97.0	100.0	89.3	97.5
태국	99.8	73.8	99.4	100.0	100.0	100.0	97.0	100.0	89.3	97.5
브루나이	99.8	30.2	99.3	100.0	98.8	99.2	94.7	98.8	89.3	95.3
인도네시아	99.8	73.8	99.2	100.0	100.0	100.0	96.0	100.0	90.7	97.3
ASEAN	99.8	85.8	99.7	100.0	100.0	100.0	98.4	100.0	100.0	99.0
스위스	99.8	73.9	98.9	100.0	100.0	100.0	97.0	100.0	91.1	97.5
베트남	99.8	73.9	99.5	100.0	100.0	100.0	97.0	100.0	100.0	98.2
인도	99.8	73.8	99.4	100.0	100.0	100.0	97.0	100.0	92.1	97.7
페루	99.8	68.0	99.3	100.0	100.0	100.0	97.0	100.0	90.0	97.3
13개 평균	99.6	67.6	99.1	100.0	99.8	99.9	96.7	99.8	91.5	97.3

주: 기계/기기 등은 금속제품,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 일반기계, 전기기계를 포함.

자료: 김양희(2012), 「일본의 기발효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하지만 TPP 협상에서는 일본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여부(특히 5대 핵심 품목인 쌀, 보리, 설탕, 낙농제품, 쇠고기·돼지고기)가 최대 쟁점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농수산업에 대한 보호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발효 FTA의 농수산업 양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농수산업 중에서도 쌀이 포함된 곡물·과채보다는 양허율이 가장 낮은 쇠고기·돼지고기, 낙농제품이 포함된 육류·낙농업(37.1%)이 최대 민감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월 개최된 일·미 각료회담에서 양국이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 철폐 대신에 관세 인하와 세이프가드 도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이후의 협상결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³⁹⁾

다. 원산지 규정

FTA를 통한 상품무역시장 개방은 체약국에 대해 상호 특혜를 부여하면서 역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원산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FTA 양허안에서 합의된 특혜 세율은 체결국 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 생산된 ‘원산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FTA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⁴⁰⁾

원산지 규정 협정문은 통상 ‘일반적 원산지 규정(general rules)’, ‘품목별 원산지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절차 규정(rules)’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원산지 규정은 전 품목 또는 특정 품목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 품목별 규정이다. 그리고 절차 규정은 원산지 증명을 비롯하여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한 제반절차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⁴¹⁾

일본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부속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없이 일반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 품목의 원산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발효 FTA 중 최근에 발효된 4건의 FTA(베트남, ASEAN, 스위스,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FTA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4건의 FTA에서는 일반적 원산지 규

39) 쇠고기 관세는 현행 38.5%에서 9% 이상 낮추고, 돼지고기 관세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관세(4.3%)를 일정 부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日米、妥協の解探る』. 2014a. 『日本経済新聞』. (5월 3일)

40) 鷺尾(2008), p. 94, http://wwwlib.cgu.ac.jp/cguwww/02/22_02/022-02-04.pdf(검색일: 2014. 6. 9).

41) 김양희 외(2008), p. 108.

정만 포함하고 별도의 품목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⁴²⁾

일본의 원산품 판단기준을 보면, 농림수산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료가 모두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을 자국산으로 규정하는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은 세 가지 실질적 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은 HS 코드상의 품목번호인 세번의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세번이 해당

표 3-7. 원산지 규정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원산지 규정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원산지 규정 및 규정방식	- 원산품에 대한 인정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한 유형,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는 자국산만을 인정 - 원산지 규정 방식 ○ 전체 품목별 규칙을 규정: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 일반 규칙을 규정한 경우: 베트남, ASEAN, 스위스, 인도
원산품 판단 기준	- 완전원산품: 체결국의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상품 ○ 농산물, 동식물, 광물자원 등의 천연상품 등에 적용 - 부가가치기준: 가공결과, 상품에 부가된 가치가 특정 비율(예: 40%)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세번변경기준: 원성품의 HS 번호와 수입원료·부품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 ○ 광공업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일반적이다. - 특정공정기준: 제품마다 중요한 제조작업 및 기술적 가공작업을 지정하여, 해당 작업이 시행된 것을 원산품으로 지정 ○ 화학품(화학반응공정), 반도체(화산공정)
원산지 증명제도	- 원산지 증명제도 ○ 제3자 증명제도를 공통적으로 채용.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한 확인 요청, 원산품 확인을 위한 방문, 관세상의 특혜대우에 관한 결정,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 및 조치 등을 포함 ○ 자율증명제도를 일부 FTA(스위스, 페루, 개정 멕시코)에서 도입

자료: 經濟部(2012a), p. 11; 內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10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추가·보완 정리.

42) 內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10.

국가에서 발생한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세번 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HS 4단위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HS 6단위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으로 구분된다(西 2013, p. 8).

둘째, 부가가치기준(VA: Value-Added Method)은 제조·가공에 의해 부가된 가치가 특정 비율 이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규정이다. 이때 부가가치 비율은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출방식 및 품목별 기준이 FTA마다 다르다. 즉 원산자격 비율(QVC: Qualifying Value Content)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그 가치가 더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인데, 동일한 부가가치 기준 내에서도 QVC의 산정기준이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西 2013, pp. 15~17).

셋째, 특정공정기준(SP: Specific Process Rule)은 FTA 체결국 내에서 특정생산·가공 공정이 실시된 경우에만 해당 생산품에 대해 원산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사용하는 재료·부품이나 공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공정기준은 부속서에서 어떠한 재료가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원산자격이 부여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과 같이 사용재료별로 분류변경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품별로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사용하기에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⁴³⁾ 일·태국 FTA과 일·스위스

43) 鷲尾(2008), p. 100, http://wwwlib.cgu.ac.jp/cguwww/02/22_02/022-02-04.pdf(검색일: 2014. 6. 9).

FTA의 경우에는 화학반응 및 확산공정을 기준으로 원산지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표 3-8]에서 일본 FTA에서의 실질적 변경기준을 종합적으로 보면, ASEAN, 스위스,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40%의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도와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CTSH) 및 35%의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각각의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김양희 외(2008, p. 166)는 원산지 규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세 가지 실질적 변경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거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CC+RVC+ SP)해야 하거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CH or RVC)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72개의 복잡한 유형이 존재함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 방식하에서는 기업이 특정 품목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완성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품, 생산공정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FTA별로 규정내용이 조금만 달라져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일본의 FTA 정책이 메가 FTA 추진으로 전환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자국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첩경으로 메가 FTA를 활

표 3-8. 일본 FTA에서의 실질변경기준				
구분	일반 특혜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기타 협정
일반 규정	4단위(項) 변경(CTH)	4단위 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6단위 변경(CTSH) 및 부가가치 35% 이상	품목별 규칙을 별도로 규정

자료: 東京税関(2012), 「特惠税率一般特惠・EPA特惠を活用刷るための原産地基規則」,
http://www.customs.go.jp/tokyo/content/240927_gensanchi_1.pdf(검색일: 2014. 6. 15), p. 18.

용하여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⁴⁴⁾

일본의 기발호 FTA에서 원산지 증명방식은 제3자 증명제도를 공통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한 확인요청, 원산품 확인을 위한 방문, 관세상의 특혜대우에 관한 결정,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 및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일·스위스 FTA 협정에서는 제3자 증명제도에 추가하여 새롭게 인증수출자가 직접 시행하는 자율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⁵⁾ 일·페루 FTA와 일·멕시코 FTA의 추가 협상에서 도입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는 원산지 증명절차상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⁴⁶⁾

라. 투자 및 서비스

일본의 FTA 투자분야는 일본기업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최적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 중요성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발호 FTA 협정문에서 투자 관련 조항 수가 여타 항목의 조항 수보다 많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⁴⁷⁾ 투자분야에서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방식은 통상적으로 태국과의 FTA에서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나머지 모든 FTA에서는 포괄

44) 이 내용은 石川와의 일본 출장 면담(2014. 7. 16)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45) 자율증명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첨부서류 제출에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6) 経済産業省(2012a), pp. 31~32.

47) 일본의 기발호 협정문에서 투자조항 수는 평균 23.6(ASEAN, 베트남, 페루를 제외한 10건의 FTA를 기준으로 계산)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원산지 규정(22), 서비스(14.5)순으로 나타난다.

주의 방식을 채택했다. 투자분야 협정문은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의무로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투자자에게 각종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간 FTA인 일·스위스 FTA에서는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규정이 마련되었다.⁴⁸⁾ 양자 간 투자협정이 체결된 베트남(2004년 12월 발효), 라오스(2008년 8월 발효), 페루(2009년 12월 발효)의 경우에는 FTA 투자 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도 현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무역 협정문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시장접근 제한 완화·철폐 및 내국민대우 부여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허방식을 보면 멕시코, 칠레, 스위스, 페루를 대상으로만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ASEAN 국가 등을 대상으로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⁴⁹⁾ 일본 정부는 선진국 간 FTA인 일·스위스 FTA의 경우 시장접근 규정을 마련하였고, 일부 분야(기간산업과 사회정책 관련 분야)만을 유보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⁰⁾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포괄주의 방식을 채용한 FTA에서도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

48)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p. 61~63.

49) 서비스무역에 관한 양허방식은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서 도입된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과 NAFTA에서 도입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국이 약속하는 자유화 대상 분야와 조건을 나열하는 방식이며,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국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등)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후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시장접근자유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예외분야와 제한조치를 기술하는 방식이다(김양희 외 2008, p. 187).

50) 経済産業省(2014a), p. 625.

스 등 적지 않은 분야를 유보해왔다(馬田, 浦田, 木村編 2012, p. 143). 따라서 일본 측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TPP 협상에서 해당 유보분야에 대한 변경 여부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 멕시코, 칠레와의 FTA에서 독립 장을 마련한 반면, 다른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와의 FTA에서는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다.⁵¹⁾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장접근에 관한 요구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것이다. ASEAN 각국은 시장접근자유화 협상에서 국내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전기통신산업을 개방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일본은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에 대해 외자규제 완화 약속을 이끌어냈고, 필리핀에 대해 서비스의 양허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김양희 외 2008, p. 201).

전자상거래분야는 상업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무역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은 스위스와의 FTA 협정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양국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물품서비스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기반을 구축했다(經濟産業省 2009, p. 7).

51)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51.

표 3-9. 서비스·투자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투자	-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대국의 투자자유화를 추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중점 - 내외투자자의 무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을 규정 - 선진국 간 FTA에서는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규정을 설치 - 양허방식: ○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방식은 통상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가운데 태국만 열거주의
서비스	- 서비스산업 자체의 무역창출보다는 상품무역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접근 - GATS를 상회하는 규정(현지 거점요구 금지, 금지규정 등)을 설치 - 시장접근 약속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을 병행 ○ 포괄주의 방식: 멕시코, 칠레, 페루, 스위스 ○ 열거주의 방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
금융 서비스	- 포괄주의 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 현지 거점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조항을 지정,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개방분야를 명시 ○ 포괄주의 방식: 멕시코, 칠레(독립 장을 마련) ○ 열거주의 방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부속서)
전기 통신 서비스	- 전기통신서비스분야는 ○ GATS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약속을 시행하는 경우(싱가포르, 페루) ○ GATS에서는 각국의 자주적 약속으로 맡겨진 규정의 의무화를 도모하는 등 GATS를 상회하는 수준의 약속을 시행하는 경우(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전자 상거래	- TPP 협정 참가국 간 FTA에 없는 규정으로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장려하는 규정을 마련 - 규정: 일·스위스 FTA에서만 규정 - 구체적인 내용은 ① 산업계 주도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정부가 지원, ② 민간부문에 의한 자주적 규제(행동규범, 지침, 실시 확보 등을 포함)를 채용하도록 장려, ③ 비영리단체에 의한 전자상거래 촉진 활동을 장려

자료: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a/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p. 43~63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추가·보완 정리.

마. 지식재산권

일본정부는 FTA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인식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채널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⁵²⁾

52) 일본 특허청은 매년 일본기업들의 모방품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 4,323개사 중에 일본기업의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대한 피해사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상대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장은 크게 ① 일반적 사항, ② 권리형태별 권리의무, ③ 권리 행사, ④ 협력으로 구성되며, TRIPS 협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절차의 간소화, 투명성, 특허, 상표, 부정경쟁, 식물 신품종에 관한 육성자, 권리 집행(국경조치, 민사구제, 형사절차 등), 소위원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특허, 상표, 의장(디자인), 권리 집행 등의 내용에는 TRIPS 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특허의 조기심사제도 도입, 부분의장보호제도 도입, 타국에서 광범위하게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자국에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 취소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다.⁵³⁾

표 3-10. 지식재산권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지식재산권 관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지식 재산권	- 기본적으로 TRIPS 협정을 기본으로 하며, 절차의 간소화, 투명성, 특허, 상표, 부정경쟁, 식물 신품종에 관한 육성자, 권리 집행, 소위원회 등의 조항을 마련 - 상대국에 따른 유연한 협상을 전개한 결과 다양한 협상결과 도출 ○ 독립 규정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ASEAN, 싱가포르, 멕시코, 브루나이 - 특허, 상표, 의장, 권리행사 등의 측면에서는 TRIPS 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규정을 마련 ○ 절차 간소화: 출원, 부여, 등록에 대한 정보공개 및 관련 절차의 신속화를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일본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허 취득이 가능한 ‘특허조기심사청구’ 제도를 마련 ○ 권리행사 강화: 국경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의장,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체로 강화 - 일본은 2008년 이후 ACTA 협상을 주도하며 권리 집행(국경조치, 민사구제, 형사절차,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집행) 측면에서 TRIPS 협정의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규정을 마련

자료: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a/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p. 35~36.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추가·보완 정리.

례가 중국(67.8%), 대만(21.3%), 한국(21.1%), ASEAN 6개국(20.2%)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特許庁 2013, p. 10).

53) 内閣官房(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a/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p. 35.

상대국별 특징을 보면, 초기에 체결한 싱가포르, 멕시코, 브루나이와의 FTA 협정문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독립된 장은 존재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적 사항들만을 협력조항(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 간단히 다루거나 지리적 표시 보호(멕시코)에 대한 일부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스위스, 페루와의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된 장이 설치되어 있다.

일·스위스 FTA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한 독립된 장을 마련하고 있다. 양국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문을 마련했다. 일본이 당시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구상을 미국과 함께 주도하던 상황에서 스위스도 이러한 구상에 관심을 보여 모방품·해적판의 확산방지에 관한 법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한편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바이오 테크놀로지 발명, 의료기기를 특허보호대상으로 포함, 신규 의약품 등의 임상데이터 보호규정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양측의 협상결과가 반영된 일·스위스 FTA 협정문에는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포함), TRIPS 규정의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권리 강화 규정,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이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인 일·스위스 FTA에서는 이미 TRIPS 협정 등 기존의 국제적 협약규정 수준을 상회하는 제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國際貿易投資研究所 2009, pp. 53~55).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은 많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LIBERTAS(2013), Ando and Urata(2011), 浦田・安藤(2010)의 연구방법을 참고했다.

LIBERTAS(2013)는 5개국(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FTA의 무역효과에 대해 사후적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방법으로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수출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상위 품목별 양허수준과 수출입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출입이 증가한 품목의 관세유형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분석대상품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입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Ando and Urata(2011)는 일·멕시코 FTA를 대상으로 수출입 효과 및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먼저 2001~08년 동안 주요 품목의 수출입 변화를 양허수준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FTA 교역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그리고 일본상공회의소(JCCI)와 공동으로 일본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FTA 활용도를 평가했다. 이 분석의 결론에서는 기발효 FTA 국가와의 무역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낮은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浦田・安藤(2010)는 FTA의 무역효과를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첫 번째는 FTA 협정문의 조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품무

역, 서비스 등의 양허수준을 비교·측정했다. 두 번째는 FTA 발효 이전의 경우 CGE 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고, 발효 이후의 경우 무역통계 및 FTA 활용도를 통해 그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FTA 활용도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가하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높게 나타나며, MFN 관세율과 FTA 우대세율 격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FTA 체결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FTA를 체결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FTA의 관세 철폐 영향력이 큰 품목의 경우 관세 유보를 시행하거나 10년에 걸친 관세 인하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FTA 무역효과는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외자유제 철폐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FTA 체결에 의한 순수한 무역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발효된 13개의 FTA가 얼마만큼의 무역증가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13개 기발효 FTA 전후의 수출입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5년에 발효되어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기발효 FTA 중 FTA의 경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일·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산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일본이 FTA를 발효시킨 국가들과의 무역이 일본 전체 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FTA 무역 비중)은 최초 일·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2002년 2.6%에 불과하였으나, 총 13개의 FTA가 발효된 2012년 18.9%로 증가했고, 2013년 18.2%로 소폭 하락했다. FTA 발효국가와의 무역금액도 2002년 192억 달러에서 2013년 2,823억 달러로 15배 증가했다.⁵⁴⁾ 이처럼 일본의 FTA 무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표 3-11]에서 주요국의 FTA 무역비중을 비교하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18.9%)은 한국(35.4%), 미국(36.8%), EU(28.3%), 중국(2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2년 ‘일본재생전략’을 통해 FTA 무역 비중을 20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TPP 협상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 낮은

표 3-11. 주요국의 기체결 FTA 무역 비중 비교					
	일본	한국	중국	미국	EU
FTA 체결 건수 (발효 및 타결)	13	8	9	14	28
FTA 무역 비중 (발효 기준)	18.9%	35.4%	25.6%	36.8%	28.3%
FTA 무역 비중 (협상 포함)	84.4%	82.3%	51.9%	70.9%	67.5%
총무역금액 (억 달러)	16,844	10,675	38,675	38,218	44,722

주: 1. 동일 국가를 대상으로 다자간·양자간 FTA를 진행하는 경우, 무역금액 산정은 진행단계(발효→서명 완료→교섭→기타)를 기준으로 하고, 진행 단계가 동일할 경우 다자간 무역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다.
 2. EU의 경우 역내 무역금액은 제외하여 시산된 것이다.
 자료: 外務省(2013), p. 4.

54) 이와 같은 수치는 [표 3-12]와 [표 3-13]의 수출입 통계를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다.

무역 비중은 일본이 TPP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TPP(19.0%), EU(9.8%) 및 한·중·일(25.8%)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의 FTA 무역 비중은 8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外務省 2013, p. 4).

[표 3-12]에서 일본의 13개 FTA 발효국가에 대한 수출액 변화(국별로 발효 연도 대비 2013년을 기준으로)를 보면 ASEAN 기타(219.7%),⁵⁵⁾ 베트남(61.9%), 싱가포르(47.8%), 태국(40.3%), 멕시코(39.8%) 순으로 증가한 반면, 칠레(-47.3%), 인도(-22.4%), 브루나이(-15.8%), 페루(-4.7%)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비중의 변화(국별로 발효 연도 대비 2013년 기준으로)를 보면 일본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태국(1.4%p.), 인도네시아(0.8%p.), 인도(0.4%p.), 멕시코(0.2%p.) 등이며,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각각 0.6%p., 0.5%p., 0.1%p.씩 감소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 13개 FTA의 전체 수출 비중은 18.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비중이 낮은 이유는 총수출(2013년 7,150억 달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상대국인 미국(18.8%), 중국(18.1%), ASEAN(15.5%), 한국(7.9%) 중 ASEAN에 대해서만 FTA가 발효되었고, 다른 기발효 FTA 국가(인도, 멕시코, 스위스, 칠레, 페루 등)의 경우 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55) ASEAN 기타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 3-12. 일본의 FTA 상대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세계	총수출	416,715	594,941	646,725	714,327	781,412	580,719	823,184	798,568	715,097
	증감률	3.3%	5.2%	8.7%	10.5%	9.4%	-25.7%	6.9%	-3.0%	-10.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싱가포르	수출	14,191	18,436	19,340	21,839	26,597	20,724	27,253	23,306	20,980
	증감률	-3.5%	2.5%	4.9%	12.9%	21.8%	-22.1%	8.0%	-14.5%	-10.0%
	비중	3.41%	3.10%	2.99%	3.06%	3.40%	3.57%	3.31%	2.92%	2.93%
멕시코	수출		6,930	9,276	10,251	9,949	6,824	10,229	10,483	9,691
	증감률		33.5%	33.9%	10.5%	-3.0%	-31.4%	6.8%	2.5%	-7.6%
	비중		1.16%	1.43%	1.44%	1.27%	1.18%	1.24%	1.31%	1.36%
말레이시아	수출			13,210	15,056	16,449	12,865	18,790	17,701	15,240
	증감률			5.4%	14.0%	9.3%	-21.8%	6.5%	-5.8%	-13.9%
	비중			2.04%	2.11%	2.10%	2.22%	2.28%	2.22%	2.13%
칠레	수출				1,580	2,749	1,339	2,346	1,992	1,699
	증감률				45.4%	74.0%	-51.3%	-13.5%	-15.1%	-14.7%
	비중				0.22%	0.35%	0.23%	0.29%	0.25%	0.24%
태국	수출				25,612	29,431	22,188	37,532	43,729	35,946
	증감률				11.8%	14.9%	-24.6%	9.8%	16.5%	-17.8%
	비중				3.59%	3.77%	3.82%	4.56%	5.48%	5.03%
인도네시아	수출					12,573	9,323	17,737	20,285	17,032
	증감률					38.8%	-25.8%	11.4%	14.4%	-16.0%
	비중					1.61%	1.61%	2.15%	2.54%	2.38%
브루나이	수출					181	163	143	188	152
	증감률					46.9%	-9.9%	-4.3%	31.0%	-18.9%
	비중					0.02%	0.03%	0.02%	0.02%	0.02%
ASEAN 기타	수출					434	390	786	1,629	1,389
	증감률					34.0%	-10.2%	62.6%	107.3%	-14.8%
	비중					0.06%	0.07%	0.10%	0.20%	0.19%
필리핀	수출					9,977	8,224	11,229	11,850	9,681
	증감률					5.2%	-17.6%	1.5%	5.5%	-18.3%
	비중					1.28%	1.42%	1.36%	1.48%	1.35%
스위스	수출						6,286	9,230	4,376	3,312
	증감률						44.9%	18.6%	-52.6%	-24.3%
	비중						1.08%	1.12%	0.55%	0.46%

표 3-12. 계속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베트남	수출						6,516	9,592	10,741	10,550
	증감률						-16.6%	17.4%	12.0%	-1.8%
	비중						1.12%	1.17%	1.34%	1.48%
인도	수출							11,078	10,586	8,593
	증감률							22.5%	-4.4%	-18.8%
	비중							1.35%	1.33%	1.20%
페루	수출								1,038	989
	증감률								13.7%	-4.7%
	비중								0.13%	0.14%
FTA	수출	14,191	25,365	41,827	74,338	108,339	94,843	155,946	157,904	135,255
	비중	3.41%	4.26%	6.47%	10.41%	13.86%	16.33%	18.94%	19.77%	18.91%

주: 1. ASEAN 기타(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2. 증감률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음영은 FTA 발효 연도의 실적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일본의 13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입액의 변화(국별로 발효연도 대비 2013년을 기준으로)를 보면, FTA 발효국 중 인도네시아, 칠레, 페루를 제외한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표 3-13 참고). 특히 ASEAN 기타(218.9%), 베트남(104.6%), 말레이시아(92.1%), 멕시코(66.9%), 싱가포르(48.8%)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일본의 2000~13년 동안 평균 수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중국(11.5%)을 상회한 국가는 페루(20.5%), ASEAN 기타(18.4%), 베트남(16.9%), 브루나이(14.6%), 칠레(11.6%)로 나타난다. 수입 비중의 변화(국별로 발효 연도 대비 2013년 기준으로)를 보면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한 국가는 6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ASEAN 기타, 멕시코, 인도, 페루)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한 국가도 5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칠레, 태국, 베트남)이 된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13개 FTA 발효국가와

의 수입 비중은 17.65%로 중국의 수입 비중(21.7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일본의 FTA 상대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세계	총수입	337,609	515,866	579,064	622,243	762,534	551,985	855,380	885,843	833,166
	증감률	-3.3%	13.3%	12.3%	7.5%	22.5%	-27.6%	23.2%	3.6%	-5.9%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싱가포르	수입	5,011	6,695	7,477	7,053	7,886	6,115	8,677	8,768	7,456
	증감률	-6.9%	6.4%	11.7%	-5.7%	11.8%	-22.5%	6.2%	1.0%	-15.0%
	비중	1.48%	1.30%	1.29%	1.13%	1.03%	1.11%	1.01%	0.99%	0.89%
멕시코	수입		2,535	2,825	3,158	3,813	2,799	3,979	4,403	4,230
	증감률		16.7%	11.4%	11.8%	20.8%	-26.6%	14.4%	10.6%	-3.9%
	비중		0.49%	0.49%	0.51%	0.50%	0.51%	0.47%	0.50%	0.51%
말레이시아	수입			15,488	17,415	23,156	16,703	30,463	32,826	29,745
	증감률			5.6%	12.4%	33.0%	-27.9%	34.2%	7.8%	-9.4%
	비중			2.67%	2.80%	3.04%	3.03%	3.56%	3.71%	3.57%
칠레	수입				8,159	7,922	5,305	9,822	9,353	8,020
	증감률				12.5%	-2.9%	-33.0%	26.8%	-4.8%	-14.2%
	비중				1.31%	1.04%	0.96%	1.15%	1.06%	0.96%
태국	수입				18,323	20,786	16,026	24,529	23,613	22,039
	증감률				8.5%	13.4%	-22.9%	16.7%	-3.7%	-6.7%
	비중				2.94%	2.73%	2.90%	2.87%	2.67%	2.65%
인도네시아	수입					32,624	21,839	34,109	32,274	28,882
	증감률					23.0%	-33.1%	20.6%	-5.4%	-10.5%
	비중					4.28%	3.96%	3.99%	3.64%	3.47%
브루나이	수입					4,540	3,335	5,705	5,953	4,742
	증감률					81.3%	-26.5%	38.8%	4.3%	-20.3%
	비중					0.60%	0.60%	0.67%	0.67%	0.57%
ASEAN 기타	수입					455	511	995	1,200	1,450
	증감률					1.9%	12.4%	57.6%	20.6%	20.8%
	비중					0.06%	0.09%	0.12%	0.14%	0.17%

표 3-13. 계속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필리핀	수입					8,426	6,413	8,943	9,324	9,246
	증감률					-3.5%	-23.9%	12.7%	4.3%	-0.8%
	비중					1.11%	1.16%	1.05%	1.05%	1.11%
스위스	수입						6,277	7,847	8,212	7,296
	증감률						-2.3%	15.3%	4.7%	-11.2%
	비중						1.14%	0.92%	0.93%	0.88%
베트남	수입						6,956	11,552	15,079	14,233
	증감률						-23.5%	41.3%	30.5%	-5.6%
	비중						1.26%	1.35%	1.70%	1.71%
인도	수입							6,823	6,998	7,072
	증감률							19.7%	2.6%	1.1%
	비중							0.80%	0.79%	0.85%
페루	수입								2,819	2,645
	증감률								20.3%	-6.2%
	비중								0.32%	0.32%
FTA	수입	5,011	9,230	25,790	54,108	109,608	92,277	153,444	160,822	147,056
비중	비중	1.48%	1.79%	4.45%	8.70%	14.37%	16.72%	17.94%	18.15%	17.65%

주: ASEAN 기타(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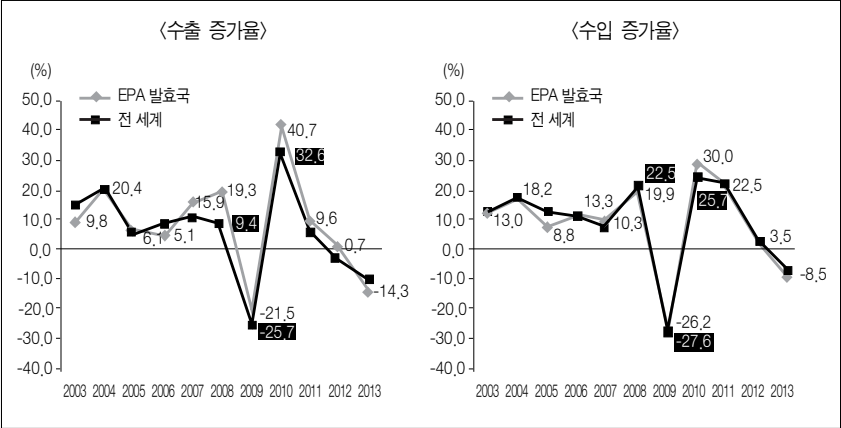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3-2]에서 일본의 대세계 및 FTA 발효국의 수출입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대세계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 대비 2009년에 각각 25.7%, 27.6%나 급감한 이후 2010년에 각각 32.6%, 25.7%나 급증하는 변화를 보였다. 한편 13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은 대세계에 비해 2009년에 낮은 감소율(-21.5%, -26.2%)을 기록한 이후, 2010년에 높은 증가율(40.7%, 30.0%)로 회복했다. 기발효국가와의 수출입 실적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FTA 발효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무역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FTA 발효시점이 2008년과 2009년에 해당하는 대상국은 6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기타, 필리핀, 칠레, 베트남)이며,

이 국가들의 수출입 변화에는 FTA 발효에 의한 효과보다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일본의 대세계 및 FTA 발효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ASEAN 기타(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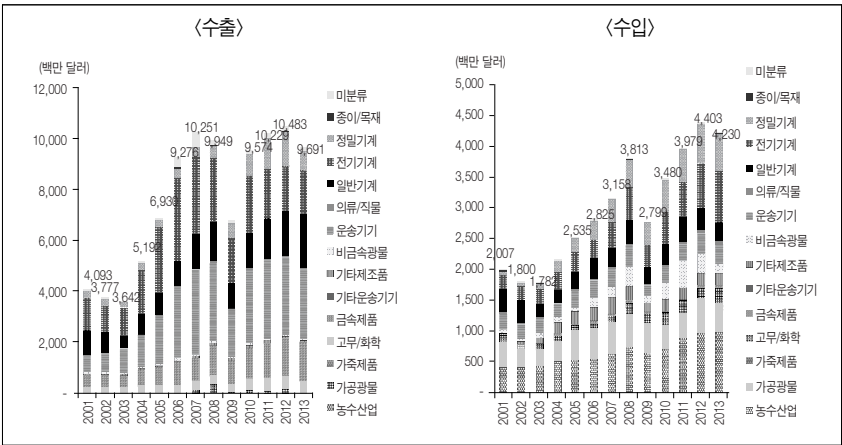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각국 및 세계 경기 변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변동 중에서 FTA의 효과만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나마 2005년 이전에 발효되어 발효 2년차까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상대국이 싱가포르와 멕시코 정도이다. 이 중 일·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가 이미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일본이 기존에 무관세를 적용하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개방을 시행했기 때문에 관세 철폐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일·멕시코 FTA는 일본이 처음으로 농수산업 개방을 포함한 FTA로 관세 철폐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安藤 2007,

p. 83). 다음에서는 일·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산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 일·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일·멕시코 양국간 무역추이는 발효 이전인 2002~03년 사이 수출입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발효 전 연도인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멕시코 FTA 협정이 발효(2005년 4월 1일)된 이후인 2005~06년 동안,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율은 33.5%, 33.9%로, 수입 증가율은 16.7%, 11.4%로 급증하였고, 발효 3년차인 2007년에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0.5%와 11.8%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율은 발효 이후 3년차 동안 대세계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FTA 발효의 긍정적인 효과

그림 3-3.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수입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⁵⁶⁾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1%, 30% 이상 급감하였으나, 일·멕시코 FTA 발효기간인 2005~13년 동안 양국간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은 9.2%를 기록했다.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04년에는 52억 달러였으나, 발효 이후인 2006년 93억 달러, 2007년에는 10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FTA 발효 이후 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9.5%를 기록하였고, 2013년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규모는 97억 달러로 2004년 대비 2배 늘어난 규모이다(그림 3-3 참고).

수입의 경우,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04년 22억 달러였으나, 발효 이후인 2005년 25억 달러, 2006년 28억 달러, 2007년 3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8%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규모는 42억 달러로 수출과 비슷하게 2004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발효 2년 차까지는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발효 3년차인 2007년부터는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그림 3-3 참고).

일본의 산업별 대멕시코 수출 현황을 수출총액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운송기기, 전기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순으로 나타나며 이 4개 업종이 총수출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효 1년차 시점인 2005년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수출 비중이 큰 전기기계와 운송기기가 각각

56) 일본의 세계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 2005~07년 동안 수출이 5.2%, 8.7%, 10.5%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수입이 8.8%, 10.4%, 9.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 본문과 각 주의 무역 데이터는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에 기초한 것이다.

49%, 48%나 증가했다(표 3-14 참고).

일·멕시코 FTA에서 관세삭감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단연 자동차(버스·트럭, 승용차) 부문이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기준으로 일본의 2005년 버스·트럭 수출은 전년 대비 96.4% 증가한 164억 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7.5% 증가한 1,023억 엔을 기록했다. 특히 일

표 3-14. 일·멕시코 FTA 발효 전후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율 변화

	발효 전		발효시점	발효 후			1999~2013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3년	평균 비중
곡물·과채	93%	-100%	-	-59%	-100%	292%	0,00%
수산물	83%	384%	-10%	-2%	775%	-	0,00%
식품	41%	-1%	23%	123%	14%	19%	0,03%
육류·낙농	-85%	-100%	-	-55%	-100%	-	0,00%
농수산업	34%	-13%	37%	94%	32%	23%	0,04%
가공광물	205%	38%	-75%	12%	4,543%	-93%	0,87%
가죽제품	-95%	62%	-12%	3%	391%	295%	0,00%
고무/화학	1%	4%	8%	9%	2%	-7%	4,83%
금속제품	-6%	45%	14%	27%	-2%	1%	11,98%
기타 운송기기	1,471%	118%	-98%	1,230%	-75%	-21%	0,02%
기타 제조품	4%	-9%	5%	38%	27%	-40%	0,94%
비금속광물	-50%	-1%	119%	35%	-36%	-18%	0,73%
운송기기	27%	38%	48%	43%	20%	-9%	27,35%
의류/직물	-9%	21%	7%	19%	11%	-20%	0,29%
일반기계	-35%	56%	7%	11%	45%	17%	16,10%
전기기계	4%	53%	49%	30%	-9%	0%	27,21%
정밀기계	-16%	39%	13%	24%	19%	-46%	7,02%
종이/목재	40%	14%	18%	13%	-14%	-2%	0,15%
제조업	-3%	43%	34%	30%	10%	-8%	97,48%
미분류	-30%	36%	30%	303%	31%	5%	2,48%
총수출 (금액)	-4%	43%	33%	34%	11%	-8%	100,00%
	3,642	5,192	6,930	9,276	10,251	9,691	7,30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본의 대멕시코 버스·트럭 수출규모는 2004년 83억 엔에서 2013년 321억 엔으로 3.8배 증가했다. 자동차 이외에 FTA의 발효 이후 수출 증가효과가 높은 품목은 9%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합금강(72251999), 기타 열간압연합금강(72254099) 등이며, 자동차 부품 중 10% 관세가 즉시 철폐된 안전벨트용 부품(87082923)과 오토 변속기(87084003)도 급증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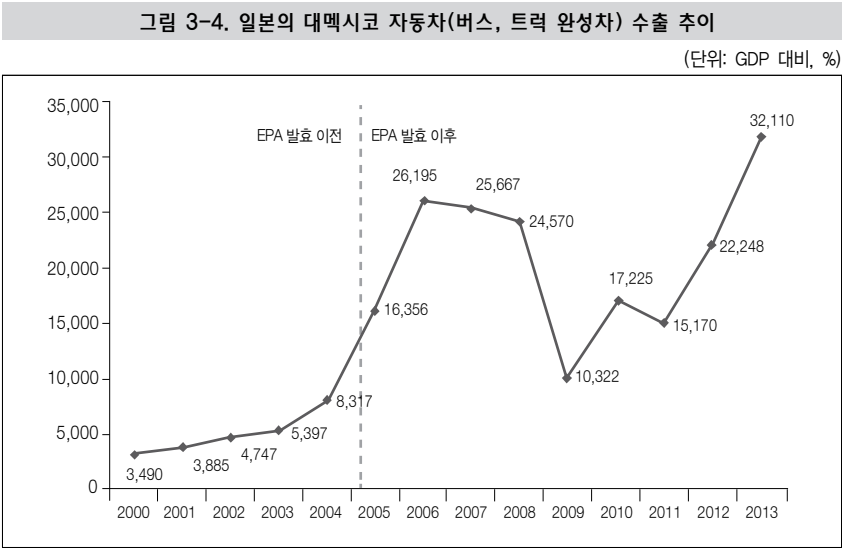
이 품목들의 수출 증가는 일·멕시코 FTA 발효로 발생한 관세 철폐효과에 기인한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에 대해서 FTA 발효 이전까지 50%의 높은 일반관세율을 적용하였고, 일본기업의 현지 생산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무관세 범위를 할당해왔다. 이로 인해 사실상 현지 진출 일본기업인 닛산, 도요타, 혼다 정도가 무관세 범위에서만 수출이 가능했다. FTA 발효 이후에는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범위가 새롭게 전년도 멕시코 현지 판매대수의 5%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신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하지 않은 일본 자동차기업들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출이 급증한 것이다.⁵⁸⁾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변화를 보면,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 확대과정에서 FTA에 의한 효과는 자동차와 즉시 관세 철폐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이 높은 중간재(화학품, 합성섬유, 철강) 중 관세 철폐 이행기간이 9년으로 설정된 품목이 많고, 이미 멕시코 정부의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세제조치로 자동

57) 日本貿易振興機構.(2006), 「日本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日墨FTA)発効1年目の効果(リバイス版)」. http://www.jetro.go.jp/file/report/05001225/05001225_005_BUP_D.pdf(검색일: 2014. 8. 10), p. 5.

58) 日本貿易振興機構.(2006), 「日本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日墨FTA)発効1年目の効果(リバイス版)」. http://www.jetro.go.jp/file/report/05001225/05001225_005_BUP_D.pdf(검색일: 2014. 8. 10), pp. 2~4.

차부품과 전자부품 등에 대해서 FTA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0% 또는 3%의 저관세 적용이 가능하며,⁵⁹⁾ 일본의 주요 수출 전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이 이미 무관세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⁶⁰⁾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info/>(검색일: 2014. 8. 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일본의 산업별 대멕시코 수입 현황을 보면, 수입 평균 비중을 기준으로 가공광물(15.6%), 전기기계(14.4%), 일반기계(10.5%), 정밀기계(10.2%), 육류·낙농(9.6%), 곡물·과채(6.4%) 순으로 나타난다. 발효 1년차 시점

59) 산업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멕시코의 ‘PROSEC’ 제도는 22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원재료·부품 등 우대관세율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 현지 생산기업에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0) 日本貿易振興機構.(2006), 『日本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日墨FTA)発効1年目の効果(リバイス版)』. http://www.jetro.go.jp/file/report/05001225/05001225_005_BUP_D.pdf(검색일: 2014. 8. 10), p. 5.

인 2006년 기준으로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정밀기계는 각각 137.6%, 47.1%, 28.8%나 증가한 반면, 농수산업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발효 2년차 시점인 2007년부터는 전기기계(39%), 가죽제품(30%), 정밀기계(28%)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농수산업도 식품, 수산물, 육류·낙농 수입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표 3-15 참고).

표 3-15. 일·멕시코 FTA 발효 전후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 증가율 변화							
	발효 전		발효시점	발효 후			1999~2013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3년	평균 비중
곡물·과채	17%	16%	-2%	4%	2%	-8%	6.43%
수산물	66%	36%	4%	-6%	18%	54%	2.17%
식품	-9%	27%	2%	2%	21%	2%	3.46%
육류·낙농	-12%	12%	16%	1%	16%	1%	9.62%
농수산업	3%	19%	7%	1%	13%	1%	21.67%
가공광물	-8%	23%	42%	6%	4%	-14%	15.57%
가죽제품	29%	-8%	37%	27%	30%	33%	0.13%
고무/화학	23%	-2%	-20%	9%	45%	36%	4.81%
금속제품	-27%	305%	-31%	47%	-25%	2%	0.95%
기타 운송기기	261%	-74%	508%	-24%	-47%	88%	0.02%
기타 제조품	302%	62%	24%	9%	23%	3%	4.93%
비금속광물	0%	77%	-29%	138%	8%	-52%	5.55%
운송기기	7%	-5%	21%	4%	7%	-7%	9.07%
의류/직물	-10%	2%	33%	9%	-9%	-1%	1.31%
일반기계	-41%	-9%	38%	18%	-9%	-16%	10.46%
전기기계	10%	17%	9%	-5%	39%	14%	14.35%
정밀기계	56%	140%	25%	29%	28%	-7%	10.22%
종이/목재	20%	-7%	-5%	-40%	-31%	-48%	0.14%
제조업	-2%	23%	20%	14%	13%	-6%	77.51%
미분류	-7%	52%	28%	49%	-53%	26%	0.81%
총수입	-1%	22%	17%	11%	12%	-4%	100.00%
	1,782	2,172	2,535	2,825	3,158	4,230	2,867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7. 3)를 기초로 저자 작성.

일본의 대멕시코 농수산물 수입에서 FTA에 의한 효과는 예상대로 즉시 관세가 철폐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호박(관세 3.0% → 0.0%,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890만 달러), 냉동 정어리(관세 10.0% → 8.0%,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661만 달러), 냉동 새우(관세 1.0% → 0.0%, 전년 대비 32.6% 증가한 660만 달러), 포도주스(관세 25.5% → 22.3%, 전년 대비 3.3배 증가한 340만 달러) 등이 대표적이다.⁶¹⁾

그리고 육류·낙농의 경우 관세 할당품목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13.7%를 차지한다. 이러한 관세 할당품목에 해당하는 쇠고기가 2004~12년 동안 연평균 24.2%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쇠고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는 0.6%에 불과했으나 2012년 2%로 증가했다.⁶²⁾ 쇠고기의 양허내용을 보면, 발효이후 2년까지는 우선적으로 10톤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3년째부터 3,000톤, 4년째부터 4,000톤, 5년째부터 5,000톤, 10년째부터 15,000톤에 대하여 현행 세율인 7.6~34.6%(1차 세율기준)를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⁶³⁾

일본에 일·멕시코 FTA는 농수산물 개방을 포함한 첫 번째 FTA이다. 그럼에도 발효 1년차 시점의 농수산업 수입 증가율 변화가 미미한 것은 농수산물 양허수준이 전 품목의 절반 정도(49.8%)만을 양허한 소폭 개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1) 日本貿易振興機構.(2006), 「日本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日墨FTA)発効1年目の効果(リバイス版)」. http://www.jetro.go.jp/file/report/05001225/05001225_005_BUP_D.pdf(검색일: 2014. 8. 10), p. 7.

62) LIBERTAS(2013), p. 19.

63) 農林水産省, 「日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EPA)に基づく関税割当制度対象品目」. http://www.maff.go.jp/j/kokusai/boueki/triff/t_mex/01/pdf/25_besi.pdf(검색일: 2014. 9. 20).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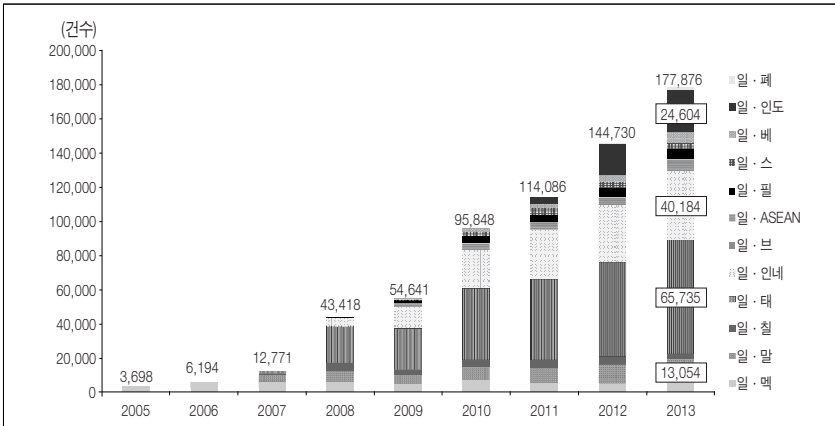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앞서 일·멕시코 FTA 사례분석을 통해 발효 이후 일부 품목의 무역증가가 관세 철폐 과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지만, 전체 교역에서 일본기업이 실제로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한 무역효과인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실제 FTA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utilization rate)이 사용된다.⁶⁴⁾ 이러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은 일본 관세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과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매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본기업의 FTA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원산지 증명서는 일본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이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 추이를 보면, FTA 발효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건수는 일·말레이시아 FTA하에서 FTA 발효 2년차 시점(2007년)에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만 2,771건, 일·태국 FTA하에서도 발효 2년차 시점(2008년)에 전년 대비 240% 증가한 4만 3,418건을 기록했다(그림 3-5 참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 증가율은 2009년 25.8%로 하락한 이후,

64) 활용률은 상대국 간의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교역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교역액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일본 관세청은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한 무역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림 3-5.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



자료: 經濟産業省(2014b), pp. 1~2,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FTA/file/co_issuance.pdf(검색일: 2014.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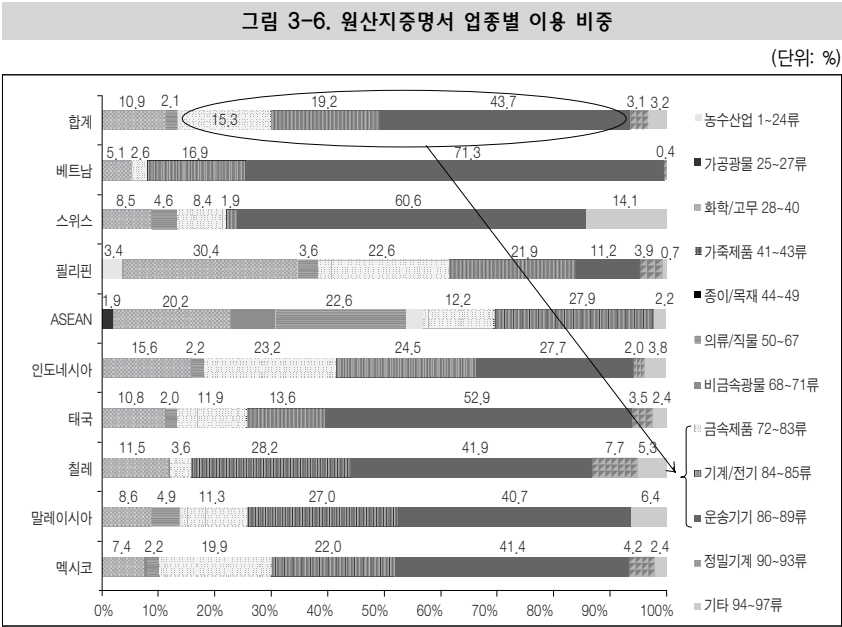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 전후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17만 7,876건)의 국별 비중을 보면, 태국이 37%(6만 5,73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22.6%, 4만 184건), 인도(13.8%, 2만 4,604건)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일·멕시코 FTA하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건수가 2010년 6,542건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17.9%, -7.6%)를 기록하여 2013년 5,713건으로 감소했다.

[그림 3-6]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업종별 이용 비중(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발급실적이 가장 많은 태국의 경우 운송기기(52.9%), 기계·전기(13.6%), 금속제품(11.9%) 3개 업종의 비중이 전체 발급건수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⁶⁵⁾ 일·태국 FTA하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기어박스, 클

65)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상공회의소는 국별 발급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업종별 통계의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기서 기술한 업종별 발급실적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9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經濟産業省(2010b), p. 15.

러치, 안전벨트 등 8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추가로 철폐됨에 따라, 운송기기에서의 발급 비중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운송기기(27.7%), 기계·전기(24.5%), 금속제품(23.2%) 3개 업종의 비중이 75.4%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화학·고무가 30.4%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고, ASEAN의 경우에는 의류·직물이 22.6%를 차지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을 통해 일본의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종별로는 일본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력 수출품목인 운송기기, 기계·전기,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특혜관세를 활용한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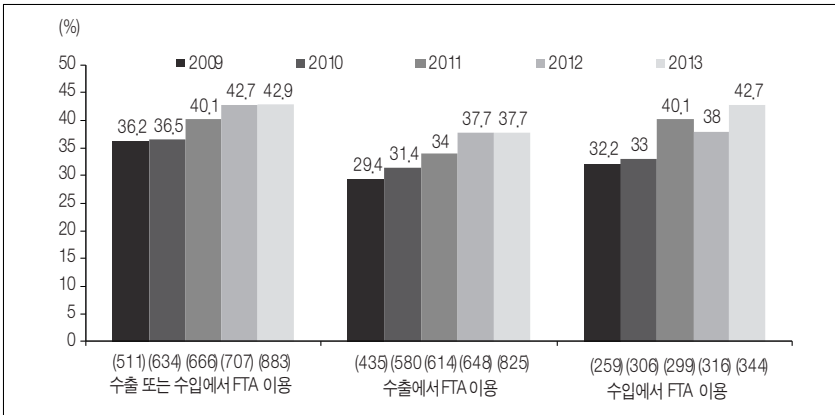


자료: 経済産業省(2010b), p. 15.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JETRO가 매년 시행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전체 수출입에서 FTA 활용률은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3-7 참고). 2013년 기준으로 FTA 이용률은 수출이 37.7%, 수입이 42.7%로, 수입에서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⁶⁶⁾ 2013년 상대국별 FTA 이용률을 보면, 수출입에서 모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수출: 30.2%, 수입: 45.5%)이며, 이용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수출: 338개사, 수입: 145개사)으로 집계되었다(日本貿易振興機構 2014a, p. 52).

그림 3-7. 일본기업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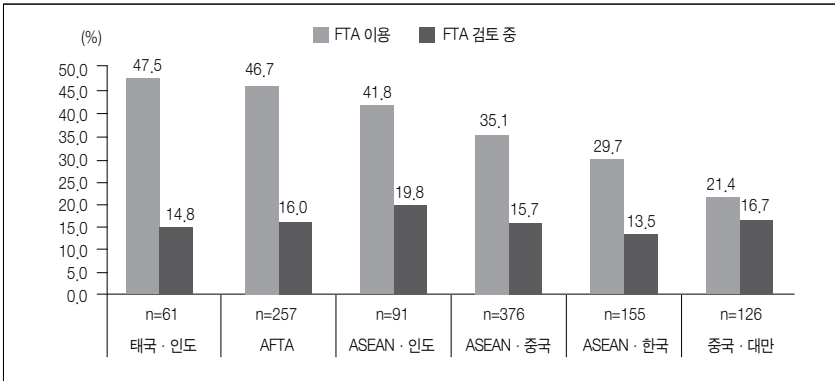


주: n은 국가별로 일본이 수출입을 시행하는 기업 수.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a), p. 51.

66)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매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발효 FTA 이용률을 묻는 설문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 이용률은 FTA 체결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또는 수입에 하나 이상의 FTA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로 계산된다. 日本貿易振興機構(2014a).

그림 3-8. 일본기업의 제3국 간 FTA 활용 현황



주: 조사대상기업 수가 50개 이상인 FTA 기준.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a), p. 55.

수출에서의 FTA 이용률 증가는 발효기간이 경과하면서 FTA 상대국에서의 단계적 관세 삭감이 진전된 결과로 해석된다. 2006~09년 동안 발효된 ASEAN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양허안에 기초하여 관세 철폐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발효 이후 5년 시점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수입의 경우 이미 무관세품목이 많은 데다, 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FTA 이용률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 시 FTA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⁶⁷⁾

한편 일본기업들이 일본 이외 국가 또는 지역 간 무역에서 FTA를 활용하는 제3국 간 FTA 이용률도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JETRO 조사결과에서는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 3개사 중 1개사가 ASEAN 역내 FTA

67) 日本貿易振興機構(2013a), p. 69.

를 이용하고 있고, FTA를 검토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3-8]은 JETRO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수가 50이상인 경우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2013년 일본기업의 제3국 간 FTA 활용률은 태국·인도와와 FTA(47.5%)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AFTA(46.7%), ASEAN·인도(41.8%), ASEAN·중국(35.1%) 순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기업 수는 50미만이지만, 한·EU FTA와 한·미 FTA의 활용률은 각각 56.0%, 45.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日本貿易振興機構 2014a, p. 55).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부품조달 현황(표 3-16, 梶田, 安田 2014, p. 98)을 살펴보면, RCEP의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부품조달 공급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RCE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CEP은 ASEAN이 제안한 동아시아 메가 FTA로, ASEAN 10개국을 허브로 하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은 5개의 별도로 완성된 ASEAN+1(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표 3-16.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부품조달대상						
(단위: %)						
소재지	응답기업 수	현지	일본	ASEAN	중국	RCEP
태국	444	52,7	29,7	4,6	6,5	93,5
인도네시아	165	40,8	32,7	13,5	4,6	91,6
말레이시아	161	42,3	27,9	11,5	7,0	88,7
베트남	264	32,2	34,8	12,4	11,4	90,8
필리핀	82	27,9	41,6	10,7	8,6	88,8
중국	530	64,2	27,9	2,9	-	95,0
한국	89	47,9	38,9	2,0	5,4	94,2
인도	123	43,4	32,2	12,1	7,7	95,4

주: 일본기업의 부품조달금액에서 차지하는 RCEP 역내 및 각국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자료: 梶田, 安田(2014), p. 98.

뉴질랜드) 협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제창된 것이다. 이와 같은 RCEP은 별도의 ASEAN+ 1이라는 FTA 형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각 FTA에 별도로 규정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의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梶田, 安田 2014, pp. 92~94). 일본정부는 일본기업들이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원산지 규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RCEP, TPP와 같은 메가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일본과 주요국의 FTA 활용도를 비교하면, 상대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본의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3-17, 浦田, 安藤 2010, p. 28). 호주의 경우에는 MFN 관세가 이미 무관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관세 혜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호주의 FTA 활용도는 매우 낮지만, 무관세품목을 조정한 FTA 활용도는 80~90%로 높아진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체결대상국인 칠레와의 FTA 이용도를 비교하면, 일본이 23.7%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9%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기업의 기업규모별 FTA 이용실태를 보면, FTA 이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저조한 수준인 점이 주목된다. FTA 이용률은 3억 엔 이상의 기업은 40%를 상회하지만, 1억 엔 이하의 기업은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활용도는 FTA 체결 수 증가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일본

기업들이 수출입에서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MFN 관세가 이미 철폐되거나 경미하다, ② 해당 품목의 무역량이 적거나 무역금액이 작다, ③ FTA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FTA 제도와 절차를 모른다, ⑤ 원산지 증명서 취득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⁶⁸⁾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FTA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취득비용의 부담이 크고, 무역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FTA 이용에 따른 혜택이 적은 반면, 대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물리적·시간적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FTA를 이용하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주요국의 FTA 활용도 비교

(단위: %)

〈수 출〉					
일 본		한 국		태 국	
대상국	활용도	대상국	활용도	대상국	활용도
멕시코	32.9	칠레	96.9	인도네시아	61.5
말레이시아	12.2	ASEAN	2.6	말레이시아	25.2
칠레	23.7			필리핀	46.9
				베트남	46.6
				호주	62.5
				일본	22.7

〈수 입〉				
한 국		호 주		
대상국	활용도	대상국	활용도	무관세품목 조정
칠레	90.5	뉴질랜드	50.5	95.19~97.60
싱가포르	29.8	남태평양	3.2	99.32~99.35
EFTA	42.5	싱가포르	2.9	90.99~91.44
ASEAN	43.3	태국	42.0	75.97~78.36
		미국	23.2	67.42~82.51
		칠레	6.5	96.05~96.33

주: 일본의 데이터는 기업 설문조사, 다른 국가 데이터는 통관통계를 활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자료: Cheong *et al.*(2010), Pomfret *et al.*(2010), Takahashi and Urata(2010), Kohpaiboon(2010), 재인용: 浦田, 安藤(2010), p. 28.

68) 日本貿易振興機構(2013a), pp. 44~45.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취득에 관한 절차와 비용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石川(2013, pp. 12~13)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수수료 경감 등을 위해 자율증명제도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3-18. 일본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FTA 이용률					
(단위: 개, %)					
자본금 규모	기업 수 (사)	수출 기업 수 (사)	FTA 이용	FTA 이용 검토 중	이용 또는 검토
1000만 엔 이하	368	134	19.4	16.4	32.8
1,000만~5,000만 엔	598	252	22.6	15.9	33.7
5,000만~1억 엔	280	167	26.3	12.6	36.5
1억~3억 엔	143	91	37.3	14.3	44.0
3억~10억 엔	155	96	43.8	14.6	52.1
10억 엔 초과	413	263	41.4	16.3	49.0
총합	1,957	1,003	31.1	15.3	40.8

주: 기업 수는 일본의 2013년 1월 시점의 13개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1개 이상 국가와 수출 또는 수입을 시행하는 기업 수를 말한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b), 재인용: 日本貿易振興機構(2013a), p. 70.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일 협상을 중심으로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013년 3월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배경은 TPP를 매개로 글로벌 통상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함으로써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둘째,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규관 2013, p.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p. 103~105).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 관점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여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10월 당시 일본 민주당 간(菅直人) 총리의 협상 참여검토 발언, 그리고 2011년 11월 민주당 노다(野田佳彦) 총리의 참여 표명, 2013년 3월 자민당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공식 참여선언을 거치면서,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FTA 추진이 늦어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⁹⁾

첫째, 2012년 미국과 EU의 기발효 FTA 상대 국가·지역과의 무역 비중은 각각 37.8%, 26.9%에 이르고, 한국 역시 33.9%로 미국 다음으로 높으며 중국도 23.9%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은 18.6%로 가장 저조하다.

둘째, 일본정부는 그간 한국의 미국, EU와의 FTA 추진이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TPP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는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2010년 10월 일본이 중국,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TPP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

69) 아래 세 가지 사항은 김규관(2013, p. 4)에서 인용.

서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2020년 자국의 실질 GDP는 10조 5,000억 엔(1.53%) 감소할 것이라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이 3개 시장에서 자국의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한국기업에 크게 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승용차와 박형 TV(액정 TV, 플라스마 TV)의 경우, EU의 대한(對韓) 수입관세는 한·EU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승용차 10%, 박형 TV(액정 TV, 플라스마 TV) 14%의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수입관세 역시 한미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지만, 일본은 승용차 2.5%, 트럭 25%, 베어링 9%의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 GDP와 수출 증가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⁷⁰⁾ 이와 관련해서는 Petri et al.(2014)의 추정결과가 가장 대표적인데, [표 4-1]에 따르면 일본이 2015년 중 TPP 협상을 타결할 경우 2025년 일본의 GDP가 1,046억 달러(2%)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무역대체 효과로 각각 28억 달러(-0.1%), 348억 달러(-0.2%)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15년 중 한국이 TPP에 가세하고 2018년 중 중

70) 2013년 3월 일본 내각부는 자국의 TPP 참여는 GDP를 0.66% 증가시키지만, 농림수산물 생산감소(3조 엔)는 불가피하다는 추정결과를 발표했다(首相官邸 2013b, 「関税撤廃した場合の経済効果についての政府統一試算」,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dai5/index.html>, 검색일: 2014. 6. 15). 단 관세 철폐의 효과만을 추정한 것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효과는 감안하지 않고 있어, Petri et al.(2014)의 추정결과치인 GDP 2% 증가보다 훨씬 낮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한·중·일 모두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GDP 증가를 예측하고, 일본보다는 중국과 한국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4-1.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¹⁾

(단위: 십억 달러, 2007년 불변가격 기준, %)

구분	2025년 GDP	GDP 증감(률)			수출 증감(률)		
		TPP12 ²⁾	TPP16 ³⁾	TPP17 ⁴⁾	TPP12 ²⁾	TPP16 ³⁾	TPP17 ⁴⁾
미국	20,273	76.6 (0.4)	108.2 (0.5)	327.6 (1.6)	123.5 (4.4)	190.5 (6.8)	634.4 (22.5)
중국	17,249	-34.8 (-0.2)	-82.4 (-0.5)	808.6 (4.7)	-43.7 (-1.0)	-107.8 (-2.3)	1,621.5 (35.3)
일본	5,338	104.6 (2.0)	128.8 (2.4)	237.3 (4.4)	139.7 (11.2)	202.5 (16.2)	458.2 (36.6)
한국	2,117	-2.8 (-0.1)	50.2 (2.4)	136.3 (6.4)	-7.0 (-1.0)	94.5 (13.2)	264.1 (36.8)
세계 전체	103,223	223.4 (0.2)	450.9 (0.4)	1,908.0 (1.8)	305.2 (1.1)	654.7 (2.3)	3,125.1 (11.0)

주: 1) TPP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자유화 효과도 포함. 이때 변수별 변화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5개 FTA를 참고, 단 () 안은 증가율(%).
2) TPP12: 2015년 중에 일본이 TPP 협상을 타결한다는 시나리오.
3) TPP16: 2015년 중에 TPP12에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참여·타결한다는 시나리오.
4) TPP17: 2018년 중에 TPP16에 중국이 참여·타결한다는 시나리오.
자료: Petri *et al.*(2014).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1) 농축산물⁷¹⁾

일본의 농축산물 5대 품목에 대한 ‘성역화’ 요구⁷²⁾와 마찬가지로, 다른

71) 시장접근분야 중 제조업 관련 협상 쟁점은 아직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TPP 협상국에서도 이 농축산물들은 민감품목에 속한다. 먼저 쌀 시장접근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호주, 베트남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 말레이시아 간 대립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FTA 중 쌀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ASEAN+1, 즉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와 한·미 FTA가 대표적인데, 일본은 TPP에서도 쌀을 관세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chott *et al.* 2013, p. 23).

쇠고기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TPP 11 내에서는 쇠고기 시장개방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협상 참여로 미·일 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내에 단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40%의 수입관세를 95%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Schott *et al.* 2013, p. 23).

유제품 시장접근을 둘러싼 TPP 협상은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공세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뉴질랜드는 미국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구함과 동시에, 유제품협동조합을 반독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미국의 경쟁정책과 유제품가격지지프로그램(The Dairy Product Price Support Program)⁷³⁾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유제품과 닭, 칠면조 등과 같은 가금류

72) 일본의 농축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제3절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일 협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73) 미국 농업법에 의거하여 장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제품의 투입 비용과 유제품 가격 간 격차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高橋 2014, p. 86).

를 대상으로 한 공급관리제도가 유제품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할당제도의 운용으로 2차 관세율이 치즈 245%, 버터 298%로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高橋 2014, p. 87).

설탕의 시장접근을 둘러싼 협상구도는 매우 복잡하다. 먼저 설탕수입 국이자 관세 할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호주로부터 시장접근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호주는 설탕 약 9만 톤에 대해 관세 할당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WTO 협상에서 확보한 것이고,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로 관세 할당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호주는 미국과의 TPP 협상에서 별도로 관세 할당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FTA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高橋 2014, p. 83). 한편 ASEAN 국가 중에서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주요 설탕 생산국으로 베트남은 이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조당에 대해 2013년 현재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고, 2011년 11월 ASEAN·호주·뉴질랜드와 FTA를 조인했음에도 역내 조당 관세율을 관세 할당 이내에서는 30%,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80%로 책정하고 있어 호주, 뉴질랜드로부터도 시장접근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高橋 2014, p. 85).

2)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분야의 TPP 협상은 WTO가 정의⁷⁴⁾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네 가지 모드, 즉 모드 1 국경 간 서비스무역(cross border services), 모드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74)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cbt_course_e/cls3p1_e.htm/ (검색일: 2014. 7. 23).

presence), 모드 4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⁷⁵⁾

제1모드인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⁶⁾ 먼저 서비스무역의 일반규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첫째, WTO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제한조치의 금지와 이와 관련된 조치의 투명성 확보, 현지 주재의무부과 금지, 래칫조항(ratchet claus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합의가 끝났다. 둘째,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경우 TPP 협정 발효 후에 관심국 간 별도로 논의하기 위한 틀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의사 등 구체적인 자격증 또는 면허의 상호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셋째, 특급우편(express delivery)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여건 확보 관점에서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⁷⁷⁾

한편 시장접근에 관한 부분에서는 첫째,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의거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고, 둘째, 협상국가들이 작성한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상황이다(内閣官房 2012a, 재인용: 石戸 2014, pp. 170~

75) TPP는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국경 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service), 일시적 입국(temporary entry),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전자상거래(E-commerce) 등 5개 장(chapter)을 두고 있다.

76) 内閣官房(2012a), 재인용: 石戸(2014), pp. 170~172.

77) 미국은 2011년 2월 ‘미·일경제조화대화’에서 다른 국제특급운송서비스 업자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통관 절차와 비용을 Japan Post(日本郵便)에 대해서도 부과할 것과 Japan Post의 독점적 우편사업수익이 EMS(국제우편) 보조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外務省(2011), 「日米経済調和対話」,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tpp04_04.pdf(검색일: 2014. 8. 20) 참고.

172). 그러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은 미래 유망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TPP 규범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비합치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라는 다른 국가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다(*Inside U.S. Trade* 2014d).

제3모드인 상업적 주재에서 현지 주재의무부와 금지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외자 편의점 등 소매업체의 진입규제와 말레이시아의 외자 소매 및 외식산업 진입규제가 쟁점화된 상태이다(김규관 2013, p. 9).

제4모드인 상용관계자의 이동, 즉 일시적 입국에 관한 규범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⁷⁸⁾ 첫째, 입국신청 처리의 투명성 확보, 절차의 신속화, TPP 협상국 간 기술협력 촉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둘째, 일시적 입국 관련 기술협력분야에서는 입국심사 시 생체정보에 의한 본인인증기술에 관한 구체적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셋째, 전문가를 포함한 상용관계자에 대해 각국이 각각 양허를 적용하는 비자 범주를 검토함과 동시에, TPP 협상국 공통의 양허를 정할 것인지 국가별로 독자적 양허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넷째, 단순 노동자의 이동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기통신서비스분야에서의 규범 설정과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⁷⁹⁾ 첫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나 상호 접속 의무화와 같이 WTO GATS에서 각국의 자율적 양허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공평한 통신 인프라 접근, 기

78) 内閣官房(2012a), 재인용: 石戸(2014), pp. 173~174.

79) 内閣官房(2012a), 재인용: 石戸(2014), pp. 172~173.

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제3자의 설비 설치, 상호 접속, 주파수 할당, 투명성, 경쟁 등 기존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통규범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둘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상호 접속이나 물리적 설비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부여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규제와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 강화나 규제기관 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제기신청 권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셋째, 정부가 통신방식 등과 같은 특정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 도입과 고가의 휴대전화 국제로밍요금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⁸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규범분야와 시장접근분야로 나누어, 규범분야에서는 투명성, 무차별성, 신규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취급,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중재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적용,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협상 중이고,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이지만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대두했다(김규관 2013, p. 13).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소유권 제한 요구를 견지하고 있는 등 완전합의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다(*Inside U.S. Trade* 2014d).

80) 미국은 2011년 2월 ‘미·일경제조화대화’에서 일본의 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NTT의 지배적 사업자 규제와 관련하여 신규 시장참가자에 대해 경쟁적 기회를 보장할 것, 그리고 휴대폰 착신요금에 국 내법률과 비용절감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外務省 2011, 『日米經濟調和対話』,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tpp04_04.pdf/검색일: 2014. 8. 20),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가 TPP 협상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분야의 협상에서는 협상국의 기존 FTA를 참고 하면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서명·인증 채택, 무역문서의 전자화, 스팸 대책,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논의하고 있다(内閣官房 2012b, p. 18). 특히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실물거래와 동급으로 자유화하고, 소프트웨어나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국가 간 데이터 전송거래 자유화와 로컬서버에 대한 데이터 저장요구 금지도 제안하고 있다(Schott *et al.* 2013, pp. 31-32). 그러나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국가 간 데이터 전송거래 자유화와 데이터의 로컬서버 저장해제요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Inside U.S. Trade* 2014d).

나. 규범

1) SPS

SPS(위생 및 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규범을 둘러싼 TPP 협상은 이행 메커니즘과 SPS 분쟁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2014년 9월 현재 최종 합의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Inside U.S. Trade* 2014b). 미국은 기체결 FTA에서 ‘two track’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WTO의 SPS 협정을 재확인하는 장(chapter)을 포함하는 한편, 양자간 SPS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여 합의결과를 양자간 FTA에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Fergusson *et al.* 2013, p. 30). 이에 맞춰 TPP 협상국들은 WTO+ SPS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USTR이 일본 등과 기존 SPS 분쟁협상을 진행했다(Fergusson *et al.* 2013, p. 31).

2012년 초 미국의 농식품 관련 업계는 미국의 기존 FTA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 WTO+ SPS를 USTR에 제시했다. 그 권고안은 무역원활화 조치, 모든 신규 SPS 조치의 통지 요구, 과학적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조치에 사용되는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규범들은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고, TPP 국가 모두에 구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3월 USTR은 SPS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의 설치와 귀중품의 원만한 교역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메커니즘의 설치만 제안하였을 뿐, SPS 규범의 이행 메커니즘이나 TPP 협상에서의 최우선의제 등 자국 내 농식품 관련 업계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Fergusson *et al.* 2013, pp. 31-32).

2014년 7월, TPP 12 협상단은 미국이 제안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 협의 메커니즘이란 어느 한쪽의 TPP 당사국이 다른 TPP 가입국에 SPS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 전문가집단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SPS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다. 한편 미국은 SPS 장(chapter)에 명시된 일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처리를 도입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였으나, 호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SPS 의무사항에 대한 분쟁처리 도입은 WTO SPS 협정을 넘어서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Inside U.S. Trade 2014a).

2) 원산지 규정: 섬유⁸¹⁾

섬유 · 의류의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는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기체결 FTA가 규정하고 있는 섬유 · 의류 분야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이른바 ‘yarn forward rule’로 불린다. 방적에서 최종 의류제품 제조까지의 모든 공정이 FTA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규범이다. 그런데 의류 · 섬유 소재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TPP를 통해 미국의 섬유 · 의류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yarn forward rule’(원사기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高橋 2014, p. 89; Schott *et al.* 2013, p. 24; Fergusson *et al.* 2013, p. 40).

베트남은 TPP 역외의 의류 · 섬유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cut and sew rule’(봉제기준) 혹은 ‘single transformation rule’(단일전환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베트남 간 이견은 다른 TPP 협상국들의 이해관계와도 결부되어 협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다. 즉 미국은 2013년 5월 자국 내 의류소매업자와 베트남의 반발을 감안하여, 이른바 ‘short supply list’(공급부족재료)를 제안하였는데, 의류제품 제조 시 TPP 역내국에서 생산이 곤란하여 역외에서 조달한 소재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원사와 직물 리스트를 놓고 협상을 전개하기도

81) 2013년 11월 현재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페루만 반대(WikiLeaks 웹사이트, <http://wikileaks.org/IMG/pdf/tpp-salt-lake-positions.pdf>, 검색일: 2014. 8. 15)하고 있고,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했다.⁸²⁾ 그렇지만 미국과의 FTA에서 이미 ‘yarn forward rule’(원사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멕시코와 페루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와 미국 시장 내 베트남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高橋 2014, p. 89; Schott *et al.* 2013, p. 24; Fergusson *et al.* 2013, p. 40).

3)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역시 TPP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 의약품 특허권, 저작권, 이행(enforcement) 세 분야에서 의무범위를 놓고 협상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의견대립은 WTO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협상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국가들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온라인 구매 등의 분야에서 TRIPS-plus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를 모델로 제시하는 미국으로 갈리고 있다(Schott *et al.* 2013, p. 26).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에 관한 TPP 협상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모델로 ① 특허기간 종료 전 제3자 실시행위의 제한, ② 제조·판매 절차에 의한 특허기간의 침해 회복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특허기간의 회복), ③ 의약품의 승인 신청 데이터 보호, ④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patent linkage)⁸³⁾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增

82)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제안과는 달리 다른 협상국들은 TPP 역내 부가가치 산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regional value content RoO를 제안한 상태이다(Fergusson *et al.* 2013, p. 40).

83)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복제약에 대해 승인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에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增田 2014, p. 120). 또한 정부당국이 복제약을 승인할 때 이것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보증해야 함을 의미한다(Schott *et al.* 2013, p. 26).

田 2014, p. 120). 일본은 patent linkage를 제외한 다른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미 마련한 상태이다(増田 2014, p. 122). 구체적인 내용은 [글상자 4-1]과 같다.⁸⁶⁾

글상자 4-1. TPP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

□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보호(발명 혹은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보호)와 의약품 데이터 보호(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 보호)로 대별

1) 특허권 보호: 특허기간의 연장과 회복 두 가지 방법 존재

- (특허권의 특허기간 연장)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TRIPS 협정도 20년으로 규정.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면 국내법 개정이 필요. 따라서 직접적인 특허기간 연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대안(특허신청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한 보호기간의 연장, 판매승인절차에 의한 특허기간 침해 회복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이 현실적이고, 미국 역시 협상에서 이에 집중

* TPP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 다른 대다수 국가는 이에 반대→특허기간 연장이 미국의 요구대로 가능할 것인가가 초점

- (특허신청절차 지연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불합리한 특허발급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하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주장. 여기서 '불합리한 지연이란 출원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든가 출원심사청구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특허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반발

* 한·미 FTA는 특허발급절차의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명시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한다.'(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6항)⁸⁴⁾

- (판매승인절차에 의한 특허기간 단축 회복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고유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절차에서 비롯되는 특허기간 침해를 막기 위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미국은 Hatch-Waxman 법을 통해 최대 5년, 단 제품 인가 후의 존속기간이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일본 역시 5년을 한도로 인정. 이에 미국은 TPP 협상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특허기간 조정제도 도입을 요구.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가 반대

* 한·미 FTA는 판매승인절차에 의한 특허존속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을 보상하기 위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7항)⁸⁵⁾

84)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us/>(검색일: 2014. 9. 5).

85)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us/>(검색일: 2014. 9. 5).

86) 별도의 출처표기가 없는 한 増田(2014, pp. 123~130)를 정리한 것이다.

2) 의약품 데이터 보호: 신약의 독점적 판매기간 연장과 의약품의 자료 보호(승인신청 데이터 보호)기간 연장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신약 개발업체가 승인신청 때 사용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도 복제약의 시판시점을 늦출 수 있다.

** 미국과 일본에서는 신약개발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복수의 효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경우, 해당 신약 개발업체는 순차적으로 효능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효능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비. 단 특허존속기간은 대체로 20년이고, 특허기간의 회복제도를 적용한다 해도 25년인 상황에서, 뒤늦게 특허를 취득한 효능의 특허는 유지되는 반면 특허기간이 지난 효능에 대해서는 특허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 신약 개발업체의 자료독점권은 규제당국이 복제약이나 바이오 복제약(특허기간이 지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승인할 때 의약품의 임상시험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약품이라도 전매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

- (신약의 독점적 판매기간 연장) 미국에서는 승인신청 데이터에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복제약 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data exclusivity) 복제약 역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약 제조업체와 같은 정도의 임상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복제약 제조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은 화학의약품은 5년(단 적용확대기간 3년을 포함하면 8년, 일본도 8년, 즉 원칙 6년+2년 연장), 바이오의약품은 12년 설정(한·미 FTA와 동일). 미국은 TPP 협상에서 자국 내 제도의 관철을 주장. 그러나 화학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8개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2월 개최된 제16차 싱가포르라운드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개도국에 대해서는 20년간의 적용유예를 제안

- (허가·특허 연계: patent linkage) 정부당국에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복제약에 대해 승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규제당국이 복제약의 시판 허가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데이터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Schott *et al.*, 2013, p. 26)

* 미국이 TPP 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신약에 관한 특허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제약의 시판을 승인해주는 국가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다수 존재하기 때문

** 한·미 FTA에서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① 한국은 green list로 불리는 신약 관련 특허의 등재부를 작성·공개하여 복제약 업체에 특허 침해에 관한 인식을 제고, ② 복제약의 시판 신청이 있을 경우 상기 green list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 ③ 특허권자의 동의 혹은 묵인 없이 일반 의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시판 허가 전에 특허침해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

*** WikiLeaks가 공개한 자료⁸⁷⁾에 의하면, 2013년 11월 현재 TPP 협상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이견대립이 심각한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인데, 거의 모든 협상국이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87) WikiLeaks 웹사이트, <http://wikileaks.org/IMG/pdf/tpp-salt-lake-positions.pdf>(검색일: 2014. 8. 15).

TPP 협상에서 저작권 보호분야의 주요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⁸⁸⁾

미국은 1998년 저작권 연장법 시행과 함께, 1978년 이후에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저작권에 대해서는 1977년 이전에 발표된 작품은 발표 후 95년, 1978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은 발표 후 95년과 제작 후 120년 중 짧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영상작품은 공표 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은 베른조약 가입 후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초 공개시점으로부터 5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 지식재산법 개정과 함께 75년으로 연장했다. 말레이시아는 베른조약과 마찬가지로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吉野 2014, pp. 110~111). 단 한국은 한·미 FTA를 계기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WikiLeaks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현재 미국의 제안에 대해 나머지 11개 협상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⁸⁹⁾

저작권의 비친고죄화는 미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TPP 협상국에 대해 비친고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88) 미국은 2011년 2월, TPP 협상과는 별도로 ‘미·일경제조화대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함께 기술적 보호수단의 강화, 즉 지식재산권의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나 서비스의 거래와 회피라는 부정행위에 대해 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충분한 민사·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外務省(2011) 참고.

89) WikiLeaks 웹사이트, <http://wikileaks.org/IMG/pdf/tpp-salt-lake-positions.pdf>(검색일: 2014. 8. 15).

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FTA 협상에서 관철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한·미 FTA 발효 이전에도 비친고죄 대상이었으나, 2011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저작권법」 제140조, 2011년 12월 개정)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다루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 것이다.⁹⁰⁾ 일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吉野 2014, pp. 112~113). 이러한 연유로 TPP 협상에서 저작권의 비친고죄화에 대해서는 일본과 베트남만이 반대하고 있다.⁹¹⁾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일본은 친고죄를 적용하고 미국은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어 TPP 협상에서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이다.

4)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은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의 도입 여부와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D 조항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담배상자 디자인에 대한 규제 강화문제로 미국 담배 제조업체에 제소 당한 경험이 있는 호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김규판 2013, p. 14). ISD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주권 확보와 국가에 대한 남소 방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90)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회사와 로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일반인 및 범인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취하해주는 건수가 급증함은 물론, 사이비 저작권 단체와 이른바 ‘법(法)과 라치’의 고소가 남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친고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권, 저작권법 ‘친고죄 전환’ 발의」(2014), 『머니투데이』. (4월 1일)

91) WikiLeaks(2013), 재인용: 吉野(2014), p. 113.

다. 일본정부는 한·일 투자협정(2003년 1월 발효), 일·중 투자협정(1989년 5월 발효) 등 15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은 물론, 일·필리핀 FTA를 제외한 모든 투자 관련 협정에서 ISD 조항을 포함⁹²⁾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찬성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일본 국내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TPP 협상 참여를 전후로 ISD 조항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⁹³⁾ 외국인투자자가 일본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기구를 선택하면 국가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연유에서이다.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나 양자 간 투자협정을 통해 ISD 조항을 도입해야겠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과의 분쟁가능성을 고려하면 국가주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高安(2014, pp. 145~146)는 ISD 조항에 의거하여 국제중재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투자분쟁인 간접수용문제도 TPP 협상에서 쟁점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간접적 손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해야 하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은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2) 外務省・経済産業省(2012), 『国家と投資家の紛争解決手続の概要』,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tpp20120327_06.pdf(검색일: 2014. 7. 14), p.4.

93) 2013년 3월 아베 총리는 국회 연설을 통해 향후 TPP 협상 추진에서 일본정부가 견지하게 될 기본방향으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6항목’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ISD 조항의 도입 반대가 포함되어 있다(김규관 2013, p. 6).

5) 경쟁정책

경쟁정책분야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취급문제가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TPP 협상국들은 기체결 FTA에서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단일 협정 문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쟁법의 원칙, 경쟁당국의 설치·유지, 공정한 경쟁법 집행,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경쟁당국 간 기술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규관 2013, p. 13).

국영기업문제를 경쟁정책분야에서 협상한다는 것은 미국이 제안한 국영기업 규율(SOE discipline)에서 알 수 있듯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Temasek 등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 등은 국영기업 개혁을 유보하고자 국영기업 리스트를 비합치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에 포함하였거나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TPP 협상에서 국영기업의 공정한 경쟁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조차 Export-Import Bank, Fannie Mae, Frennie Mae, Freddie Mac, 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Tennessee Valley Authority and Amtrak 등을 NCMs 리스트에 등재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쟁정책분야의 협상을 공전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TPP交渉 `12分野決着」. 2014e. 『日本経済新聞』. 7월 13일; Inside U.S. Trade 2014d).

6) 기타: TBT, 노동, 환경

TPP의 TBT(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정보가 없으나, 한·미 FTA를 모델로 하면서 분야별 TBT 약속사항을 부속서에 첨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Fergusson *et al.* 2013, p. 41).

노동분야에서의 TPP 협상은 장(chapter) 구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은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 의무, 분쟁처리, 이해당사자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개도국 처우문제 등 4개이다(*Inside U.S. Trade* 2014a).

노동권 의무와 관련해서는 ILO의 8개 기본조약 비준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8개 기본조약을 모두 조인한 칠레와 페루가 2개밖에 조인하지 않은 미국을 상대로 다른 TPP 협상분야에서 양보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쟁처리에서는 노동과 무역의 연계와 관련하여 한쪽의 TPP 당사국이 노동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과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전적 벌칙 부과에 국한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전자는 미국, 후자는 캐나다의 입장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문제란 이해당사자가 특정 TPP 국가의 기업이 노동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Inside U.S. Trade* 2014a). 특히 분쟁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호주가 노동과 무역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동의하고 있을 뿐 베트남, 페루, 칠레의 반발이 심하고 다른 협상국들 역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유보입장이다.⁹⁴⁾

환경분야의 TPP 협상은 USTR이 2011년 12월 제안한 ‘Green Paper

on Conservation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TPP 국가가 합의한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 위반하는 상품에 대해 TPP 역내에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岩田 2014, p. 196). 그러나 세계 전체에 250개 이상 존재하는 MEA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TPP交渉 12分野決着」, 2014e. 『日本経済新聞』, 7월 13일).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1) 일본의 관세구조: 고관세품목은 농산물에 집중

WTO, ITC and UNCTAD가 2013년 공표한 *World Tariff Profile 2013*을 보면, 양허세율(Final bound tariffs)이나 실행세율(MFN applied tariffs)의 단순평균 세율은 물론, 실제 무관세 수입액 비중에서도 일본은 미국,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표 4-2 참고). 2012년 실행세율을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 4.6%, 미국 3.4%로 일본이 미국보다 다소 높지만 EU의 5.5%보다 낮다. 2011년 일본의 비농산물 무관세 수입액 비중은 83.0%로 미국(50.5%), EU(59.8%)보다 훨씬 높고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액 비중도 일본

94) WikiLeaks 웹사이트, <http://wikileaks.org/IMG/pdf/tpp-salt-lake-positions.pdf>(검색일: 2014. 8. 15) 참고.

표 4-2. 주요국 관세율 비교(2012년)

(단위: %)

	단순 평균세율		무관세 비율 ³⁾		양허율 ⁴⁾
	양허세율 ¹⁾	실행세율 ²⁾	농산물	비농산물	
일본	5.2	4.6	47.0	83.0	99.7
미국	3.5	3.4	43.0	50.5	100.0
EU	5.2	5.5	46.5	59.8	100.0
캐나다	6.9	4.3	53.5	69.6	99.7
호주	10.0	2.7	49.6	53.0	97.1
중국	10.0	9.6	1.0	54.3	100.0
태국	27.8	9.8	28.7	48.6	75.0
한국	16.6	13.3	10.3	37.6	94.6

주: 1) 양허세율(Final bound tariffs)이란 GATT나 WTO의 관세협상에서 해당 국가가 합의한 관세율의 상한치를 의미

2) 실행세율(MFN applied tariffs)이란 양허세율을 상한으로 실제 해당 국가가 적용하는 관세율을 의미

3) 2011년 수입액 중 무관세 수입액 비율을 의미

4) 양허율(binding coverage)이란 해당 국가가 WTO에 제시한 연도별 양허세율표에서 전체 품목 중 양허세율을 설정하고 있는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금액 기준)을 의미

자료: WTO, ITC and UNCTAD(2013).

47.0%, 미국 43.0%, EU 46.5%로 일본이 높다. 품목을 광공업제품으로 한정하면, 일본은 1993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무역량 가중평균의 양허세율이 1.5%로 미국의 3.5%, EU의 3.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⁹⁵⁾

World Bank의 무역 및 무역장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인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⁹⁶⁾에서 HS-6 코드 기준 일본의 품목별 관세율을 추출한 다음, 재화의 가공단계별 산업분류체계인 BEC(Broad Economic Category) 코드로 전환해보면,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중간재

95) 經濟産業省(2010a), p. 240, 재인용: 石川(2013), pp. 17~18.

96) WITS 웹사이트, <http://wits.worldbank.org/>(검색일: 2014. 5. 12).

에 대한 수입관세는 산업용 음·식료 가공품을 제외하면 무관세 혹은 2% 대 이하의 저관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공업제품 중에서도 중간재에 대한 일본정부 무역자유화 정책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표 4-4]는 품목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관세율을 살펴보는데, 여기서도 일본의 비대칭적 관세구조, 즉 제조업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혹은 저관세 정책과 농산물제품에 대한 고관세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일본과 한국의 관세율 비교		
(단위: %)		
BEC 코드 ¹⁾	단순 실행세율 평균 ²⁾	
	일본(2011년)	한국(2010년)
111. 음·식료: 산업용 기초재	2.06	70.69
121. 음·식료: 산업용 가공품	9.94	51.56
21. 산업용 공급재: 기초재	0.57	10.37
22. 산업용 공급재: 가공품	2.73	7.56
31. 연료 및 윤활유: 기초재	0.91	1.56
32. 연료 및 윤활유: 가공품	1.56	4.48
42. 자본재: 부품	0.27	6.26
43. 운송기기: 부품	0.03	6.83

주: 1) HS-6 코드를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로 변환한 다음, 다시 BEC 코드로 변환한 것이다.⁹⁷⁾ 산업분류방식인 BEC(Broad Economic Category) 산업을 7개로 대분류→재화의 성격에 따라 중간재, 최종재(가계소비, 산업자본재)로 구분
2) simple average MFN applied tariffs
자료: WITS 웹사이트, <http://wits.worldbank.org/>(검색일: 2014. 5. 12)를 기초로 저자 작성.

97) BEC와 HS-6 코드 간 대응관계는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10&Lg=1&Co=11/>(검색일: 2014. 5. 12) 참고.

표 4-4. 일본의 주요 품목별 관세율(실행세율¹⁾, 2012년)

(단위: %)

	일본			한국		
	평균	무관세 비율 ²⁾	최대 세율	평균	무관세 비율 ²⁾	최대 세율
동물제품	18.1	46.6	189	21.7	3.0	89
낙농제품	89.6	6.3	692	66.0	0	176
과일 · 채소 · 식물	12.5	19.6	337	58.7	0.2	887
커피 · 차	16.1	227	182	53.9	0	514
곡물 · 곡물원료	27.5	18.1	610	153.6	0.2	800
지방종자 · 유지	11.0	46.1	580	40.7	3.6	630
설탕 · 사탕	27.5	12.0	93	15.7	0	243
음료수 · 담배	15.3	31.1	54	32.2	0	270
면화	0.0	100.0	0	0.0	100.0	0
기타 농산물	6.2	67.5	415	20.4	21.6	754
어류 · 어류제품	5.7	3.2	15	16.5	0.6	43
광물 · 철금속	1.0	70.4	10	4.5	27.1	8
석유	0.7	64.7	8	4.4	9.6	8
화학제품	2.2	38.9	7	5.7	6.5	334
목재 · 종이 등	0.8	80.6	10	2.3	66.7	13
섬유	5.4	8.1	25	9.0	1.5	13
의류	9.1	1.8	13	12.5	0	13
가죽 · 신발 등	12.1	54.1	463	7.5	2.6	16
비전기기계	0.0	100.0	0	6.0	22.5	13
전기기기	0.1	97.8	5	6.2	21.4	13
운송기기	0.0	100.0	0	5.5	27.0	13
기타 제조업 제품	1.2	75.7	8	6.6	16.4	13

주: 1) 실행세율(MFN applied tariffs): 양허세율을 상한으로 실제 해당 국가가 적용하는 관세율

2) HS-6 코드 기준 무관세품목의 비율

자료: WTO, ITC and UNCTAD(2013).

현재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 비관세 장벽은 1993년 11월 타결된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수출보조금, 국내보조 세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

였고, WTO 회원국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에 걸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 후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세계 농업 교역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WTO는 2000년 DDA 라운드에서도 계속 협상을 전개해왔으나, 수출보조금 철폐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⁹⁸⁾

1993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이후 일본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 분야는 상기 세 분야 중 시장접근(market access), 그 중에서도 관세화였다. 농산물의 관세화는 관세주의라는 GATT 기본원칙과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일정한 의무수입량(minimum access) 이내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낮거나 무관세(1차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2차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할당(tariff quota)제도를 용인함으로써 복잡한 관세제도를 초래하였고, 특히 2차 관세율 책정에서는 관세 책정기준인 내외가격차를 국제시세가 높은 시점에서 평가하여 고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本間 2005, p. 107).

일본은 농산물 중에서도 쌀의 관세화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1995년 당시 일본정부는 의무수입량(minimum access)을 늘리는 대신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국내 쌀 생산이 3년 연속 풍작을 기록하자 재고가 늘고 외국산 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의무수입량을 줄일 목적으로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를 단행했다. 이와 같은 쌀의 관세화로 일본의 쌀 의무수입량은 1999년 72만 4,000톤, 2000년 76만 7,000톤으로 조정되었고,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 비

98)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분야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本間(2005, pp. 105~109)를 참고하고, WTO DDA 라운드에서의 농업협상에 대해서는 農林水産省(2012)을 참고하라.

해 1999년 4만 3,000톤, 2000년 8만 5,000톤만큼 의무수입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차 관세율 책정 시 산정한 관세상당치(TE)는 2000년 이후 341엔/kg(정미)으로 사실상 수출금지에 가까운 고율을 유지하고 있다(本間 2005, pp. 107~108).⁹⁹⁾

2) 국가무역제도(농축산물 6대 품목)와 차액관세제도(돼지고기)

일본의 농축산물에 대한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는 쌀, 밀, 보리, 지정 유제품, 설탕, 생사 등 6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무역제도와 돼지고기에 적용하고 있는 차액관세제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국가무역제도는 관세 할당 틀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입한 다음 관세 상당치에 일종의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인 ‘mark-up’을 추가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고, 관세 할당을 벗어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과 ‘mark-up’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GATT 제17조(State Trading Enterprises)에 위반하지는 않지만 국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제도 운용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石川 2013, p. 27). [표 4-5]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공개한 수입 관련 국가무역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차액관세제도는 수입가격과 국내 기준 수입가격의 차액을 그대로 관세로 징수하는 제도

99) 2014년 4월 현재 일본의 쌀(정미) 관세율은 기본세율 402엔/kg, 잠정세율 49엔/kg이다. 税関 2014, 「輸入統計品目表 実行関税率表(2014年4月版)」.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0.htm(검색일: 2014. 7. 12) 일본 정부는 2005년 6월 WTO와의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율을 정미기준으로 종가세로 환원하였을 때 778%로 결정하바 있다(The Japan Times. June 10, 2005).

표 4-5. 일본의 농축산물 수입 관련 국가무역제도

시행주체	대상품목	내용
농림수산성	쌀	의무수입량(Minimum Access)과 관련되는 쌀의 수입 및 판매(1999년 4월 관세화 조치 이후에는 의무수입량 외의 수입에 대해 납부금 징수)
	밀, 보리	'Current Access' ¹⁾ 내 수입 및 판매,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납부금 징수
농축산업진흥사업단	지정유제품 등	'Current Access' ¹⁾ 내 수입 및 판매,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mark-up' 징수
	생사	조정금 징수

주: 1) 'Current Access'란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일본정부가 농축산물 수입 개방 폭과 관련하여 사용한 용어로 기준기간(1986~88년)에서의 연평균 수입실적을 말한다.

자료: 農林水産省, 『国家貿易』, http://www.maff.go.jp/j/kokusai/kousuyo/wto/w_16_iken/02_1/b02/kihon_06.html (검색일: 2014. 7. 25).

로, 1971년 돼지고기 수입자유화 당시 양돈 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입가격이 기준 수입가격(2014년 4월 현재 부분육은 546.53엔/kg)보다 낮을 경우 차액이 관세액이 된다. 단 기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4.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¹⁰⁰⁾ 이 차액관세제도는 일본 국내 가공업자 보호 차원에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햄, 베이컨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준 수입가격의 분기점은 897.59엔/kg이고 수입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8.5%의 추가세가 부과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kg당 $614.85 - (0.6 \times \text{수입가격})$ 의 공식에 맞춰 차액관세를 부과한다(農林水産省 2005, p. 4).

3) 농축산물분야에서의 TPP 미·일 협상

馬田(2005, pp. 8~9)는 2000년 당시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을 ‘중층적 통상정책’, 즉 WTO를 중심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기본

100) 『TPP日米協議で豚肉差額関税見直し検討: 『従量税』一本化が浮上』, 2014. 『日本農業新聞』, (5월 13일)

으로 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regional) FTA와 양자간(bilateral)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¹⁰¹⁾으로 이해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본의 통상정책은 WTO든 FTA든 농산물 자유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WTO 협상에서 일본은 농산물시장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협상 주도권을 G5(미국, EU, 호주, 인도, 브라질)에 넘기고 말았고, 거의 모든 FTA 협상에서도 농산물 자유화 문제야말로 일본의 FTA 전략의 걸림돌이자 일본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 ‘통상정책’의 결과는 기체결 FTA의 낮은 자유화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화율이란 HS-9 코드 9,018개 상품 중 FTA 발효 후 즉시 혹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것인데, 일·싱가포르 FTA 84.4%, 일·멕시코 FTA 86.0%, 일·말레이시아 FTA 86.8%, 일·칠레 FTA 86.5%, 일·태국 FTA 87.2%, 일·인도네시아 FTA 86.6%, 일·브루나이 FTA 84.6%, 일·스위스 FTA 85.6%, 일·베트남 FTA 86.5%로, 자유화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없다(經濟産業省 2012b, p. 390).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서 98.2%, 한·EU FTA에서 98.1%의 자유화율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TPP 협상에서 최대의 쟁점분야는 역시 농업분야의 관세협상이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2014년 9월 현재, 일본의 TPP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농축산물 5대 품목의 성역화 여부이다. HS-9 코드 기준으로 쌀 58개 품목(tariff lines), 밀·보리 109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각각 51개 품

101) 經濟産業省(2000), p. 58, 재인용: 馬田(2005), p. 2.

표 4-6. 일본의 고관세품목

(단위: %)

품목	관세율 ¹⁾	증가세 환산 ²⁾	품목	관세율 ¹⁾	증가세 환산 ²⁾
쌀	341엔/kg	778%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120~380%
밀	55엔/kg	252%	분유	21,3%+396엔/kg	218%
보리	39엔/kg	256%	버터	29,8%+985엔/kg	360%
생낙화생	617엔/kg	737%	조당(막설탕)	71,8엔/kg	305%
잡곡	354엔/kg	403%	정당(정제설탕)	103,1엔/kg	379%
곤약(구근)	2,796엔/kg	1,706%	전분	119엔/kg	583%

주: 1) 관세율은 2차 세율.

2) Ad valorem equivalent tariffs.

자료: 農林水産省(2007); 本間正義(2012), 재인용: 石川(2013), p. 24.

목, 49개 품목, 유제품 188개 품목, 설탕(원료) 81개 품목을 흔히 ‘5대 품목’이라 하나 전분 50개 품목을 포함한 총 586개 품목을 ‘5대 품목’이라 한다. ‘5대 품목’의 성역화란 TPP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 협상대상에서 이 5대 품목을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5대 품목’ 586개에 곤약 3개 품목과 수산물 91개 품목, 합관 34개, 기타 104개 등 총 940개 품목은 일본이 13개 기체결 FTA에서 한 번도 관세 협상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다(김규판 2013, p. 7).

일본이 미국과의 TPP 협상에서 과거 FTA 협상에서처럼 상기 940개 품목을 ‘성역화’하면 일본 측의 TPP 자유화율은 89.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3년 3월 TPP 협상을 공식 선언하고나서부터 앞에서 언급한 ‘5대 품목’의 성역화를 농산물분야의 협상전략으로 정식 채택했다.¹⁰²⁾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본 측의 자유화율은 93% 정도에 불

102) 2013년 3월 니시카와(西川公也) 자민당 TPP 대책위원장이 ‘5대 품목’, 586개 품목의 성역화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TPP 협상 탈퇴도 불사한다는 결의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김규판 2013, p. 7). 그러나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측의 강경입장을 확인한 일본정부는 TPP 자유화율을 더

과하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천명한 ‘5대 품목’의 성역화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모두 200%를 넘는 고관세품목이라는 점이다(표 4-6 참고). 단 일본의 현행 쇠고기 관세는 38.5%로 고관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현재 미·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¹⁰³⁾ 미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품목들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of 엄격화,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제도 철폐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관세 인하의 최소화, 관세 할당제도의 유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¹⁰⁴⁾

나. 자동차분야

미·일 간 자동차분야 TPP 협상은 2014년 9월 현재 다음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에 대해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둘째, 미국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무역장벽으로 일본정부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과 세제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다.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聖域なし崩れの恐れ：TPP重要品目も検証問題』, 2013. 『日本農業新聞』, 10월 8일).

103) 『牛・豚肉の交渉再交渉』, 2014g. 『日本経済新聞』, 8월 5일; 『日米関税協議溝埋まらず』, 2014l. 『日本経済新聞』, 9월 11일.

104) EU 측은 TPP에서 일본이 식품분야의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 일·EU FTA 협상에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試練メカFTA(上)TPP停滯、世界に余波』, 2014h. 『日本経済新聞』, 8월 10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3년 4월 USTR이 공개한 자동차무역에 관한 미·일 협상 기본 틀(terms of reference)¹⁰⁵⁾ 아홉 가지에 요약되어 있다. 이 협상 틀을 기초로 미·일 간 자동차 협상을 별도로 전개하고, 협상결과는 TPP 협정문의 시장접근 장(chapter)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미·일 TPP 협상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미·일 협상 기본 틀은 첫째,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2013년 4월 일본과 미국은 미국이 일본의 승용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율과 25%의 트럭 관세율에 대해, TPP 협상에서는 다른 품목에 비해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가장 길게 잡기로 합의했다.¹⁰⁶⁾ 이에 대해 미국은 자동차부문의 관세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자동차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조건과 기간 등을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車の安全基準溝残る」. 2014j. 『日本経済新聞』. 8월 15일).

둘째, 일본의 ‘수입자동차 특별 취급제도(PHP 인증제도: 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Certification System)’(글상자 4-2 참고)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 폭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 특별 취급제도를 적용받으면 일본에 대한 자동차 수출 시 수입자동차 인증이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13년 3월 미국과의 TPP 사전협의 당시 미국산 자동차

105) USTR(2013), *Motor Vehicle Trade Terms of Reference*.

106)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삭감기간은 한·미 FTA를 근거로 TPP 발효 후 승용차는 5년 이내, 트럭은 10년 이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단 미국이 일본의 농축산물 5대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는 20년 이상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김규관 2013, p. 8 참고).

글상자 4-2. 일본의 수입자동차 특별 취급제도(PHP)

□ 일본정부가 운용 중인 수입자동차 인증제도는 형식(型式)지정제도, 신형자동차신고제도,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세 가지로 구분

1) 형식지정제도

- 일본 국내에서 대량 판매되고 있는 형식(型式)의 승용차에 대해, 견본품 차량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차량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품질 균일성(quality control system)에 대해서도 심사
- 형식지정제도에 따라 형식지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업자 등의 완성품 검사로 대체하여 신규검사 시 차량 제사를 생략한다.
- 단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의 요구에 따라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한 심사관 파견이나 지정 외국자동차시험기관에서의 시험항목 추가 등 간소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 1998년 11월 일본은 자동차 기계장치의 국제유통 확대와 국내 기계장치의 공통화 흐름에 맞춰, 기계장치의 기준 통일과 상호 승인을 목적으로 UN의 상호 인정협정에 가입함과 동시에 '장치형식지정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 자동차의 형식지정 심사 시, 이미 형식지정을 받은 장치에 대해서는 심사 생략

2) 신형자동차신고제도

- 주로 사양이 다양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대해, 견본품 차량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차량 심사를 실시하고, 신규검사 시에는 수입차량과 견본품 차량이 동일한지 확인. 단 제품 균일성에 대한 심사는 생략

3)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 자동차 수입 촉진 차원에서, 소량 판매되고 있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견본품 차량의 제사 생략,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으로 형식지정제도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
- 수입자동차 중 1형식(型式)당 연간 2,00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자동차가 형식지정을 이행한다는 조건에서는 연간 3,000대까지 허용

□ 일본정부는 수입자동차의 인증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

- 1) 형식지정제도: 수입업자의 견본품 차량 수입→사전신청(국토교통성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견본품 차량을 보고 심사하며, 이때 품질 균일성에 관한 심사도 실시)→형식지정(type designation)(사전신청 후 2개월 정도 소요)→수입업자 등이 양산차 수입→완성품 검사(completion inspection)(형식지정을 받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한지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 검사하고, 국토교통성은 품질 균일성을 감독)→완성품 검사 완료증 발행→신규검사(initial inspection)(수입업자 등이 운수지국 또는 검사등록사무에 완성품 검사 완료증 제출. 차량 제시는 불필요)→신규 등록
- 2)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수입업자의 견본품 차량. 수입→사전신청(제출서류 심사)→신고필증 교부(사전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수입업자 등이 양산차 수입→신규검사(수입업자 등이 운수지국 또는 검사등록사무에 수입차량과 신고필증 제시)→신규 등록

자료: 日本自動車輸入組合(2012), 「日本の自動車市場 2012」,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pp. 113~114.

에 대한 PHP 적용한도를 모델 혹은 차종 기준으로 연간 2,000대에서 5,000대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의 TPP 미·일 협상을 거쳐 다시 그 한도대수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PHP 제도 내에서 인증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2013년 EU는 일본에 260개 자동차 모델을 수출한 반면 미국은 25개 모델밖에 수출하지 못하였는데, 자동차 수출모델 수가 적은 미국으로서는 모델별 PHP 적용한도 확대와 인증절차의 간소화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International Trade Daily* 2014. 8. 13).

셋째, 일본의 국내 자동차 세제지원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3년 3월 일본의 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수준이 대형차에 비해 1/5~1/10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과세 차별이 미국산 트럭의 일본 진출에 불리하다고 반발한 적이 있다(김규판 2013, p. 8). 2014년 8월에는 일본정부가 국산 친환경차(eco car)에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상기 PHP 인증제도하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International Trade Daily* 2014. 8. 13).¹⁰⁷⁾

넷째, 일본의 국내 자동차 유통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제도적으로 일본 국내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실질적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

107)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에코카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에코카 세제지원을 부여하면, 이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됨을 근거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International Trade Daily* 2014. 8. 13).

본 측은 도요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경우 폭스바겐 자동차를 판매하고 닛산 자동차의 판매대리점도 르노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 Daily* 2014. 8. 13).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TPP 협상에서 미국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우정(Japan Post Holdings Co., Ltd., 日本郵政株式会社)과 일본 국내 민간기업 간 대등한 경쟁조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기업 Aflac이 일본 암보험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일본우정의 자회사 중 하나인 Japan Post Insurance (かんぽ生命)의 암보험시장 진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USTR은 일본우정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 신상품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본 측에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일례로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내각이 Japan Post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우정개혁법안을 각 의결정하자, USTR은 이것이 WTO GATS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Japan Post Insurance는 2012년 5월 일본 국내 암보험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기로 하고, 2013년 4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던 학자금보험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김규판 2013, p. 9).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미국 요구 수용을 계기로 2013년 7월 Aflac은 일본우정의 우편창구를 활용하여 암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하는 등 이후의 미·일 TPP 협상에서는 일본우정 지주회사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잠잠해진 상태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EU 간 무역·투자 현황
2. 일·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3. 일·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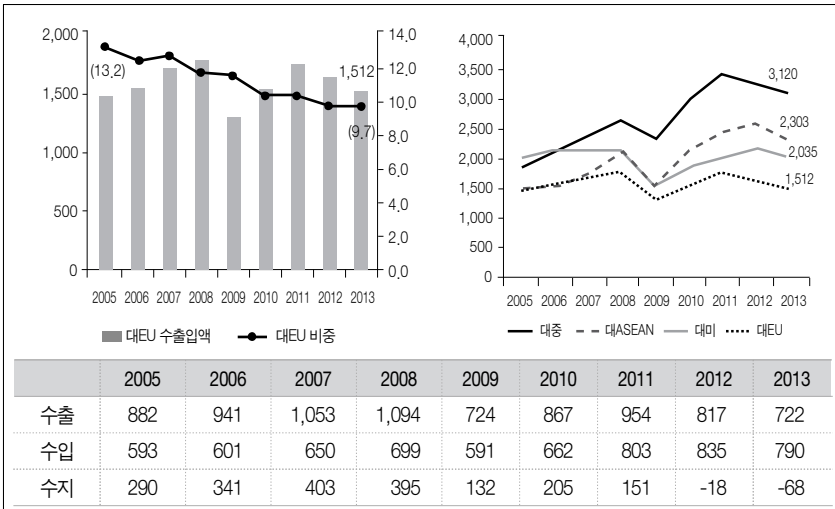
1. 일·EU 간 무역·투자 현황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EU는 네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최대 투자 유입국이다. EU 입장에서 일본은 여섯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양측은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경제현안, 글로벌 이슈, 지역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일본의 수출입총액에서 EU는 약 10%를 차지하여 중국, ASEAN,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그림 5-1 참고). 일본과 EU의 양자간 무역(수출입액 기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이후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간은 유럽경제의 부진에 따른 대EU 수출감소로 전체 수출입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5-1. 일본의 대EU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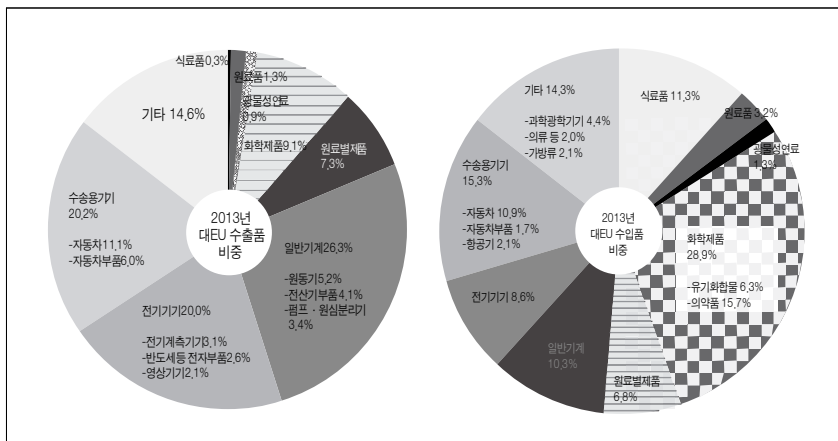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웹사이트, <http://www.jetro.go.jp/world/japan/stats/trade/> (검색일: 2014. 5. 15).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2005년 13.2%에서 2013년 9.7%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의 대EU 수출은 2011년까지 수입을 크게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에는 양자가 역전되면서 무역수지 적자(2013년 68억 달러)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EU 수출(금액기준)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자동차분야이다(그림 5-2 참고). 2013년에 자동차(11.1%)와 자동차부품(6.0%)의 비중은 17.1%로, 이 두 품목이 대EU 수출 전체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두 품목의 수출은 2010~13년간 15% 정도 감소했다. 중분류에서는 일반기계 26.3%(원동기 5.2%, 전산부품 4.1% 등), 수송용 기기 20.2%(자동차 11.1%, 자동차부품 6.0% 등), 전기기기 20.0%(전기계측기기 3.1%, 반도체 전자부품 2.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약품(15.7%)과 자동차(10.9%)이다. 이 두 품목의 수입은 최근 5년간(2008~13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림 5-2. 2013년 일본의 대EU 수출입 품목별 비중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time.htm>(검색일: 2014.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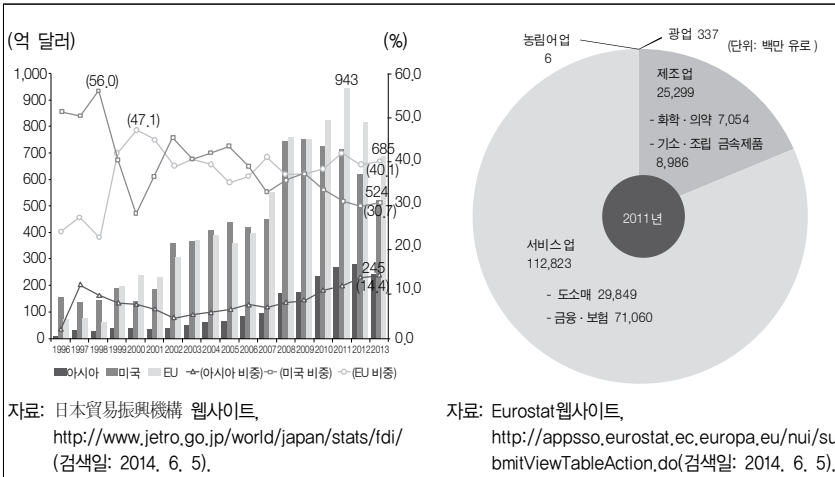
중분류에서는 화학제품 28.9%(의약품 15.7%, 유기화합물 6.3% 등), 수송용 기기 15.3%(자동차 10.9%, 항공기 2.1% 등), 기타 14.3%(과학광학기 4.4%, 가방류 2.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¹⁰⁸⁾

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도 일본과 EU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EU이다(그림 5-3 참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EU의 대일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일본의 FDI 잔액은 2,262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EU의 투자 잔액은 943억 달러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신규진출감과 퇴출지속 등에 따라 EU의 투자 잔액은 685억 달러(비중 40.1%)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대일 투자 잔액은 2013년 524억 달러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 잔액 비중 측면에서 1998년 56.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아시아는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잔액(2013년 245억 달러)과 비중(14.4%)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⁰⁹⁾

108) 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자동차 무역수지: 2010년 +5,553억 엔, 2011년 +3,613억 엔, 2012년 -10억 엔, 2013년 -584억 엔). 이처럼 최대 수출품목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의 대EU 전체 무역수지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hinbun/happyou.htm> (검색일: 2014. 5. 15).

109) 한편, 일본정부는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未来への挑戦(2014년 6월)에서 현재 18조 엔(2013년 말 약 1,800억 달러)인 대내 직접투자 잔액을 2020년 35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본의 투자환경 개선에 요구되는 체제 구축을 포함한 정부의 추진체제 정비 차원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하고 2014년 4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内閣府 웹사이트, <http://www.invest-japan.go.jp/promotion/index.html>, 검색일: 2014. 8. 21).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대내 투자안건 발굴과 유치활동, 필요한 제도개혁의 실현에 대응할 방침이다. 首相官邸(2014), pp. 121~123.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honbun2JP.pdf> (검색일: 2014. 7. 3).

그림 5-3.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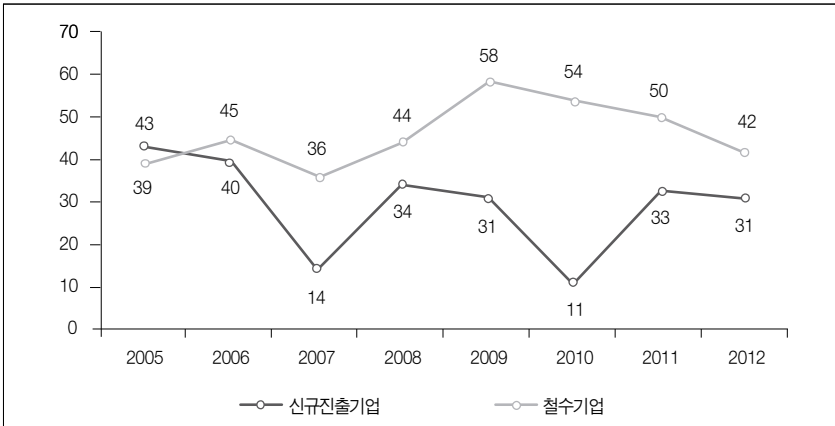
EU의 대일 투자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서비스업(비제조업)이 1,128억 유로이고 제조업이 253억 유로인바, 대부분 비제조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3 참고). 세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금융·보험(711억 유로), 도소매(298억 유로) 분야에, 제조업에서는 주로 금속제품(90억 유로), 화학·의약(70억 유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의약 분야가 EU의 대일 수출과 투자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일본에 진출한 외국기업(수) 지역별 비중은 유럽 44.1%, 북미 27.7%, 아시아 21.5%, 기타 6.7%로,¹¹⁰⁾ 직접투자 잔액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110) 経済産業省(2014c), pp. 2~3(1~3번).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1968년부터 ‘외자계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대상기업은 매년 3,300~3,500개 업체(회수기업

그림 5-4. 유럽기업의 일본 신규진출 및 철수 현황

(단위: 개사)



자료: 經濟産業省, 「外資系企業動向調査」(平成17年度実績~平成24年度実績),
<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1.html>(검색일: 2014. 11. 1).

기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진출보다는 철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진출은 2008년 이후 31~34개사 수준(2010년 제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철수기업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¹¹¹⁾

2. 일·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EU FTA의 경위

일본과 EU는 2009년 5월 정기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해 쌍방이

수 기준) 정도이다.

111)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7~14년에 발표한 「외자계 기업동향조사」를 참고. 經濟産業省, 「外資系企業動向調査」(平成17年度実績~平成24年度実績). <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1.html>(검색일: 2014. 11. 1).

협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2011년 5월에 개최된 정기정상회담에서 ‘관세 · 비관세 조치,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공공조달 등 모든 관심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FTA 협상 범위와 일정 등의 큰 틀을 확정하는 예비협상에 돌입했다. 2013년 3월의 일 · EU 정기 정상회담은 유럽에서 키프로스 은행위기가 불거지면서 연기되었는데, 그 대신 양 정상은 3월 25일 전 화회담을 통해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 과거 일본과의 FTA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던 EU가 일본과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성장하는 아시아와의 FTA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일본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경우 상당한 경제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112), 113)}

양자 간에는 2013년 4월 브뤼셀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래 2014년 7월 제6차 협상까지 개최되었다. 최근 개최된 제5차 및 제6차 협상내용을 통해 양자 간의 관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5차 협상(2014년 4월)에서는 양측이 각각의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고, 관세 양허 및 할당, 반덤핑조치, 상계관세규정,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무역기술장벽, 무역 관련 보건 · 위생 규정,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공공입찰에 대한 접근(정부조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전체 협상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서비스

112) 田中(2014a), <http://www.iti.or.jp/flash178.htm>(검색일: 2014. 5. 15).

113) EU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라 GDP +0.8%, 대일 수출 +32.7%, 고용 42만 명의 추가 증가가 있는 한편, 일본은 대EU 수출이 2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uropean Commission(2012a), *Commission proposes to open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deal with Japan*, Press Release IP/12/8/810, Brussels, 18 July 20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810_en.htm(검색일: 2014. 5. 9).

무역, 투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협의했다.¹¹⁴⁾

한편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5차 협상에서 일본은 88%, EU는 92%의 관세자유화를 정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일본의 철도조달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포괄방안’에 합의했다. 제5차 협상에서 일본은 EU 산 와인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당초의 10년에서 양보했으나, 농업의 중요 5개 항목(쌀, 보리,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분유·버터], 감미자원작물[설탕·전분])¹¹⁵⁾에 대해서는 철폐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EU의 제안에서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포함하지 않았다. EU 측은 자동차 관세는 향후 협상대상이며, 반면 와인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로는 협정에 서명할 수 없고 농업의 중요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이 있다고 표명했다.¹¹⁶⁾

제6차 협상(2014년 7월)은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이 과거 1년간 일·EU FTA 협상의 진척 및 일본의 약속이행 상황에 대해 2014년 5~6월경에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의 약속이행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양자간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최되었다.¹¹⁷⁾ 이 협상에서는

114) European Commission(2014a), *EU and Japan exchange offers to open markets*, 4 April 2014,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056&title=EU-and-Japan-exchange-offers-to-open-markets>(검색일: 2014. 5. 9).

115) 일본은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이 5개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서는 [표 4-6]을 참고.

116) 『自動車、ワインで攻防 関税協議、難航必至』. 2014. 『静岡新聞』. (5월 8일)

117)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6월 25일 일본과의 FTA 협상을 계속하기로 정식 결정했는데, 일본의 경자동차 세제 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철도분야의 정부조달에 대한 일본의 대응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対日EPA交渉、EUが継続了承』. 2014c. 『日本経済新聞』. 6월 26일).

관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정부조달, 서비스무역, 투자,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논의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협상이 지난 1년간의 진행과정을 검토한 이후 처음 개최됐기 때문에 일·EU FTA 협상에서 제2단계의 시작으로 규정했다.^{118), 119)} 또한 제6차 협상에서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의 양허안 교환이 이루어졌다.¹²⁰⁾

한편 2014년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2차 일·EU 정기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 양측은 일·EU FTA 조기 타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 간 협상의 착실한 진전에 환영을 표시했다. 일·EU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5년 내에 기본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언한 반면, 바로조 EU 집행위원장은 시장접근, 농산품, 비관세 장벽 등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쌍방이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여 양자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2015년 중 기본합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검토했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¹²¹⁾

118) European Commission(2014b), *EU-Japan talks on track after the one-year-on review*.

11 July 2014,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124>(검색일: 2014. 8. 5).

119) 外務省 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1059.html(검색일: 2014. 8. 5).

120)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항목을 제시한 것은 2012년 4월 사전협상 이후 처음이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과 통신업 등의 외국기업이 사업할 때의 규제를 없애는 것을 포함하고, 투자분야에서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재산의 보호, 진출국의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의 중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サービス・投資で進展:日欧交渉具体項目を提示』, 2014d. 『日本経済新聞』, 7월 12일).

121) 『「農業・自動車」で課題山積＝日欧EPA交渉開始1年』, 2014. 『時事通信』, (5월 7일)

표 5-1. 일·EU FTA 경과

시기	내용
2011년 5월	-제20차 일·EU 정기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의 기본 틀을 정하는 Scoping 작업 착수에 합의
2012년 7월	-이 작업의 종료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EU 외무이사회(회원국)에 협상권한(mandate)을 요구하기로 정식 결정
2012년 11월	-EU 외무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에 협상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
2013년 3월 25일	-일·EU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 일·EU FTA 협상 착수 결정
협상 시기 및 장소	1) 제1차 회의: 2013년 4월 15~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2) 제2차 회의: 2013년 6월 24일~7월 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3) 제3차 회의: 2013년 10월 21~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4) 제4차 회의: 2014년 1월 27~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5) 제5차 회의: 2014년 3월 31일~4월 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6) 제6차 회의: 2014년 7월 7일~7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자료: 外務省 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6_000042.html(검색일: 2014. 7. 20).

나. 일·EU FTA 협상의 특징

일·EU FTA에서 일본은 EU의 고관세 철폐에, EU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 주된 관심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저관세인 반면 EU는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는 일본과 EU에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EU에 수출하는 품목의 60~70%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제품인 자동차, TV의 경우 관세율이 각각 10%, 14%로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가전 분야에서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한국은 EU와의 FTA가 2011년에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가 진행되어 2016년에는 무관세로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인하를 통해 EU 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반면 EU는 대일 수출액의 약 70%가 비관세로,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일반기계 등에서 무관세이다. 즉 EU의 입장에서 양자간 FTA가 추

표 5-2. 일본과 EU의 주요 관심분야

	일본의 관심사항	EU의 관심사항
시장접근	-트럭(22%), 자동차(10%), 자동차부품(3~4.5%), 박형TV(14%)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 철폐 -IT 제품의 관세 분류 명확화	-치즈(22.4~29.8%), 햄(고급제품 8.5%, 저가제품 품 1kg당 최대 614엔), 와인(15% 또는 1 l 당 125엔 중 저렴한 쪽), 버터(360%) 등 농산가공품의 관세 철폐 · 인하
기준 · 인증	-유럽화학제품규제(REACH) 등 규제의 단일시장 실현	-자동차 ·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격 · 기준의 국제 · EU 기준에의 조화 · 상호 승인 -화장품 · 의약품 · 식품 등에 대한 규제의 국제 · EU 기준에의 조화 · 상호 승인
경쟁 · 공공조달	-공공사업의 입찰 참가제한 철폐	-철도 · 시내교통의 조달시장 진입
지식 재산권		-치즈, 햄 등의 유럽산 브랜드 보호
투자 · 서비스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 승인 도입 -GATS 협정을 상회하는 서비스무역 자유화 -유럽 주재 일본인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동 자유화	-가스 · 전기 · 우편사업 등에의 진입규제 철폐 -통신 · 금융 · 물류 · 운수 등 서비스분야의 공평한 경쟁환경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자료: 田中(2014a), <http://www.iti.or.jp/flash178.htm>(검색일: 2014. 5. 15).

진되더라도 일본의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다. 따라서 EU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 식품안전 · 의료기기 · 의약품 · 정부조달 · 지리적 표시 · 전자제품 · 가공식품 등의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주된 관심 사항이다.¹²²⁾

한편 일 · EU FTA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본이 추진하는 여타 FTA 협상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 6월에 내놓은 「‘日本再興戦略’ 改訂 2014- 未来への挑戦」에서 해외 각국과의 FTA 협상 시 국익의 최대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122) 田中(2014a), <http://www.iti.or.jp/flash178.htm>(검색일: 2014. 5. 15).

와 함께 일본은 세계 전체적인 무역·투자 규범 형성의 진전을 통한 대외 경제관계 발전 및 국내의 구조개혁 추진을 도모해야 하는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일·EU FTA 등 이른바 메가 FTA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여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³⁾ 따라서 일·EU FTA에 대한 파악은 협상 현안 및 타결 시기 등의 측면에서 특히 TPP와 같은 중요한 FTA의 협상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일·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은 관세를 제외한 일체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비관세조치(NTMs: Non Tariff Measures)는 특정 영역 및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과의 교역을 부당하게 또는 위장된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도입된 제반 입법, 행정, 사업상 조치 및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¹²⁴⁾ WTO 체제하에서 비관세장벽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아직 부재하며, 관세조치를 제외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총칭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양자관계에서 일국의 기업이 타국 현지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난관이 비관세 무

123) 首相官邸(2014), pp. 122~123.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honbun2JP.pdf>(검색일: 2014. 7. 3).

124) 이재민(2010), p. 29.

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¹²⁵⁾ 다음에서는 WTO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 조치 통보 및 발효 상황과 함께 한국 및 EU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일본 진출 외국기업의 애로요인 등을 통해 일본 비관세장벽의 윤곽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를 통해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통계 사이트는 각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일본이 WTO에 통보한 비관세조치는 129건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반덤핑(ADP: Anti dumping) 4건, 수량제한(QR: Quantitative Restrictions) 21건, 위생 및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27건,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s) 52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5건으로, 이 중에 SSG, SPS 및 TBT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⁶⁾

표 5-3. WTO I-TIP에서의 일본 비관세조치 현황

	반덤핑	상계 관세	수량 제한	위생 및 검역 조치	특별 긴급수입 제한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합계
일본	4	0	21	27	52	25	129

자료: WTO I-TIP 웹사이트, <http://i-tip.wto.org/goods/Forms/MemberView.aspx?data=default>(검색일: 2014. 8. 25).

125) 이재민(2010), p. 31.

126) WTO I-TIP 웹사이트, <http://i-tip.wto.org/goods/Forms/MemberView.aspx?data=default> (검색일: 2014. 8. 25). 같은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하여 설정된 비관세조치는 242건으로, 일본의 2배 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국기업이 부딪히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3, pp. 13~18)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 비관세장벽 12건은 ①수입규제(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2013년도 수입 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통관(운송업의 한·일 더블넘버제도, 출항전보고제도), ②정부조달(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제한), ③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약사법에 따른 오미자차, 인삼차 등의 수입규제, 공통분포병해충 검역문제, 수입가공식품의 원료 및 원산지 표시), ④기타(건설분야 규제,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 내 운행 규제,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 가격통제(돼지고기 등 차액관세제도)) 분야로 나눌 수 있다(표 5-4 참고).

표 5-4.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수입규제	통관	정부조달	SPS	기타	합계
일본	2	2	1	3	4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13), pp. 13~18을 저자가 표로 정리.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2011)가 있다. 여기에서 제기된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비관세장벽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제한규정을 둔 협회도 있다. 둘째, 남북으로 긴 지형구조인 일본은 지역별 소비성향이 다른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유통업자(도·소매상)가 지역별로 장악하고 있으며 배타적인 성격도 강하다. 또 다른 유통 관련 문제로 물류센터 사용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공개입찰 시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각각 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본회사

간 담합문제도 있다. 또한 입찰서류를 일본어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산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미국과 유럽이 인정하는 국제규격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에서 별도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통관 시 세관검사가 애매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¹²⁷⁾

같은 시기에 일본 내 대학의 한국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분석한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권오경 외 2011, pp. xii~xxvii)에 따르면,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느끼는 비관세장벽으로는 유통업자에 대해 철수 시를 대비한 담보와 보증 요구(업계 일반), 까다로운 안전기준 및 독자적인 기술규격(가전·IT 기기 부문), 엄격한 심사기준(화장품), 일본어로 한정된 방대한 입찰서류(전력), JIS 기준 이상의 높은 기준 요구, 검사기간의 장기화(철강), 이외에도 일본의 독특한 상관행에 따른 시장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

셋째, EU 집행위원회의 무역총국이 작성한 G20의 무역제한조치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13, p. 18)에 따르면, EU에 대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24건, G20 전체로는 688건에 이르고(표 5-5 참고), 일본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비관세장벽)는 2008년 10월~2013년 6월 기간 중에 ‘국내경제 부양조치 및 기타’를 중심으로 10건이 보고되었다. 2008년 10월 이후부터 파악한 이유는 같은 해 11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참여국

12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2011), pp. 3~7. 이 자료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일 협회 간 교류프로그램 개발, 정부 차원에서의 상호 인증·정보제공 등의 지원, 일본의 유통과 접점이 있는 전문상사 육성과 중소기업의 초기 진출 지원, 대일본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2~3년 주기의 정기조사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간 동결조치(standstill)가 합의되었기 때문이다.¹²⁸⁾ EU 집행위원회는 10건의 비관세장벽 중 7건(서비스 특별조치[금융], 표준·기타 기술요건[제약 관련 승인기간 및 시장접근 제한, 목재 검사절차, 의료기기 승인절차], 정부 조달, SPS[식품첨가물])을 주요 장벽(key barrier)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⁹⁾

또한 EU는 일본과의 FTA를 위해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기술 표준과 규제, 적합성 평가절차, 서비스 및 FDI 부문에서의 규제환경, 공공조달의 투명성 등과 같은 주로 EU와 일본 간 규제구조의 상이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EU는 대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대 분야- 화학·의약, 자동차, 의료기기, 가공식품, 수송장비, 통신, 금융서비스-에서 일본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⁰⁾

표 5-5. EU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인 무역제한조치 현황								
	국경 간 장벽	국내규제	정부조달	서비스 및 투자 장벽	수출제한	수출촉진 정책	국내경제 부양조치 및 기타	합계
일본	0	1	0	1	0	1	7	10
한국	0	0	0	1	0	7	15	24
G20 전체	304	69	70	69	46	39	91	688

주: 1. 대상 기간은 2008년 10월~2013년 6월이다.
 2. 국내규제(behind-the-border measures):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 규제 등을 의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p. 18.

128) 이 동결 조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재민(2010), p. 27.

129)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http://madb.europa.eu/madb/barriers_result.htm?sectors=none&countries=JP&measures=none(검색일: 2014. 8. 20). 2008년 12월 EU 이사회는 EU 교역파트너의 비관세장벽 중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항목에 대해 목록화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는데, 이렇게 특정화된 항목이 key barriers이다.

130) European Commission(2012b), pp. 19~20.

표 5-6. 일본 내 EU 기업에 의해 파악된 비관세장벽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 관련 환경	인적자원	• 출입국 • 직장의 다양성 • 연금
	지식재산권	• 인터넷상의 모방상품 •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 • 디자인
	도·소매	• 법률 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입인가·시험·인증 • 가정용품 표시 • 가족제품 관세할당 • 우월적 지위
	법률서비스	• 외국변호사의 인정과 승인 • 지점 • 유한책임
	지속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 • 유기농식품 •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대응 • 연구개발우대세제 • 설명책임과 비밀준수 • OECD 승인 어프로치 • 이전가격 • 기업재판성 • 조세조약
금융 서비스	자산운용	• 대량보유보고서 • 일본의 국제금융센터 구성 •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은행업무	• 예금보험제도 • 투명성과 규제의 효율 • 은행 대리점 제도 • 일본우정(간이 생명보험)의 개혁 • 공제
	보험	• 국제적인 지급능력(solvency) 등의 규제기준과의 정합화 • 상품인가 • 방카슈랑스와 은행 판매채널 • 계약자보호기구(PPC)
운수· 통신	항공회사	• 고비용 • 공항인프라 • 일본항공의 재편
	물류·화물 운송	• 통관절차 • 일본우정의 EMS와의 공평한 경쟁조건 • 인정통관업자(AEO) • 오픈 통합 철도시스템 도입 • 시험·인증의 상호 인정 및 규격의 정합화
	철도	• 정부조달협정(GPA)-업무안전조항에 대한 범위 정의 • 입찰
	전기통신서비스	• 기구개혁(독립규제기관) • 빅데이터의 데이터 보호 • 공정경쟁
	전기통신기기	• 통신의 기술 기준 및 인증절차 확립 • IMT(IMT-2000 및 IMT-Advanced) 주파수 할당의 정합 • 모바일 네트워크 관리
의료· 위생	동물용 의약품	• 제품의 승인 • 시드롯트 배양관리수법(Seed Lot System) 및 백신의 국가 검정 • 농림수산성·동물의약품 검사소(NVAL)가 제안한 액션과 아이템
	임상 검사 기기·시약 (체외진단)	• 신규 체외진단용 의약품(IVD)에 대한 접근 신속화 •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료보수제도
	의료기기	• 약사법 개정 • 임상평가방식 • QMS의 상호 인정 정합성 • 상환가격
	의약품	• 약가제도 • 신약에 대한 접근성 • 임상시험환경·상호 인정협정 • '생물학적 제제 기준'의 적시 검토 • 백신 수입 시 품질시험의 중복 해소
	백신	• 일·EU 상호 인정협정(MRA) 대상 국가와 품목 확대 • WHO 권장 백신에 대한 정기적인 접종 확대 • 개발 가이드라인의 개정 • 책정
	화장품· 의약품	• 의약품의 규제·제도 • 화장품 및 의약품의 효능범위 확대 • 화장품 및 의약품의 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 화장품 성분 규제의 투명성 향상 •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동일 법적 기준의 적용 • 동물실험대체법
소비재	주류	• 생산이력관리 • 와인 및 백색증류주의 관세 • 맥주의 주세 • 첨가물 • 와인의 정의 • 지리적 표시
	식품·농업	• 관세 및 수입 할당 • 식품첨가물 • 식품용 효소 • 쇠고기 및 그 부산품(케이싱, 젤라틴)을 포함한 가공식품 • 리스테리아균 • 세관의 연차분석 • 유기농식품- EU와 일본 간 완전한 동등성
산업	자동차	• 기술기준과 인증절차의 조화 • 세제개혁 • 경자동차 • 고압가스보안법
	자동차부품	•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 정보교환 촉진 • 상용차 타이어
	항공	• EU와의 협력 촉진 • 업계 간의 협력 촉진
	우주	• 일반항공 • 위성 • 발사체 • 지상설비
	방위·안전보장	• 조달 • 산업 협력 • 방위 관련 수출
	건설	• 건설재료 규격과 청부업자 자격의 정합화 •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건설의 추진 • 정보와 규제의 투명성과 접근 가능성 • 입국관리(입관법)
	산업용 재료	• 관세 • 화학물질 심사 규제법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와 관련된 법률
에너지	에너지	• 안정적인 공급과 비용의 균형 • 발전·송전·배전의 분리 •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 풍력에너지 • 태양에너지

자료: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p. 12~83을 저자가 표로 정리.

EU 기업이 일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은 欧州ビジネス協会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p. 12~83)¹³¹⁾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총 114개 항목에 이른다. 부문별로는 사업 관련 환경, 금융서비스, 운수·통신, 의료·위생, 소비재, 산업의 6대 분야(대분류)가 있으며, 분야별로 하위에 인적자원, 자산운용, 항공회사, 동물용 의약품, 주류, 자동차와 같은 30개 분야(중분류)가 있다. 114개의 비관세장벽 항목을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하면 사업 관련 환경 22개, 금융서비스 12개, 운수·통신 16개, 의료·위생 23개, 소비재 13개, 산업 28개이다. 따라서 EU 기업들은 특히 산업, 의료·위생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 경제산업성의 「외자계 기업동향조사」(2014)¹³²⁾에 따르면, 일본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사업환경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높은 사업비용’(응답기업의 78.5%), ‘일본시장의 폐쇄성·특수성’(44.3%),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요구수준’(41.7%), ‘인재확보 곤란’(36.6%), ‘과도한 규제·인허가제도(35.9%)’ 등을 들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애로요인은 「외자계 기업동향조사」에서 ‘외자기업의 사업 애로요인’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3년간 응답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시장의 폐쇄성·특수성, 과도한 규제·인허가제도 등의 애로요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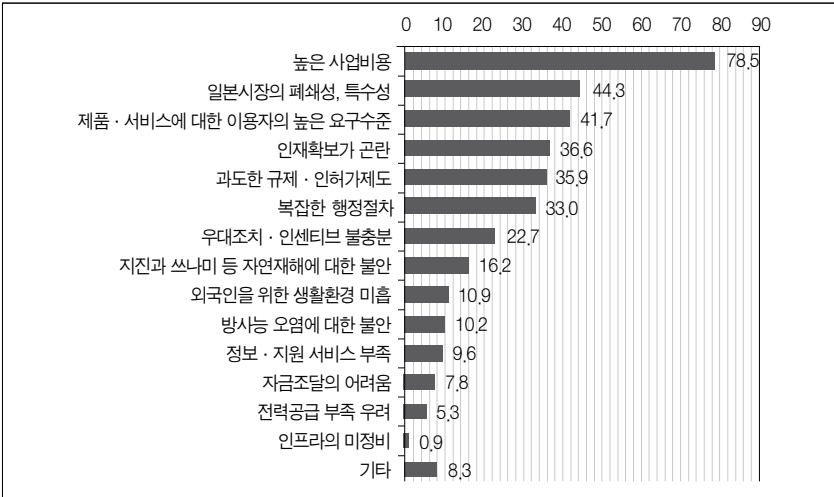
131) 2013년 보고서의 명칭(일본어판)은 「第四の矢 日本の商環境に関するEBC報告書2013年」이다. 이 보고서는 재일 EU 상공회의소에서 통상정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비즈니스협회(European Business Council in Japan)에서 작성한 것이다. 유럽비즈니스협회는 자신들의 보고서 내용이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의 추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에 네 번째 화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132) 経済産業省(2014c), p. 15(11-2번).

면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일본 사업활동 시 외국기업의 애로요인

(단위: %)



주: 일본 내 2,722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13년 8월 실시).

자료: 経済産業省(2014c), p. 15(11~2번).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EU는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의 완화·해소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¹³³⁾ 다음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가운데 특히 EU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 의료·위생, 자동차, 철도, 식품-

133) EU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30개 항목에 걸쳐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軽自動車税見直し評価：欧州委、対日EPA報告で』, 2014b, 『日本経済新聞』, 5월 27일).

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규제개혁을 함께 살펴본다.

첫째, 의료·위생 분야이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는 일본 의료·위생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동물용 의약품, 임상검사기기·시약, 의료기기, 의약품, 백신, 화장품·의약외품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5-7 참고). EU 기업들은 특히 승인절차, 분류방법, 시험요건 등의 측면에서 국제기준과의 부조화, 규제의 투명성 미흡, 승인신청기간의 장기화 등을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꼽고 있다.

표 5-7. 의료·위생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분야	일본정부에 대한 제안
동물용 의약품	• 제품 승인 - 제품 승인을 신속화하고, 제품승인신청제도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는 국내규제를 국제관행에 정합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VICH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 - 동물복지를 고려해 추가적인 동물실험요건은 동일한 실험의 결과가 타국에서 입수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시드로트 배양관리수법(SL: Seed Lot System) 및 백신의 국가검정 - SLS가 포함해야 하는 적용자격요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따르며, 일본 독자적인 새로운 조건 추가는 불필요 - 불활성화 백신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제품을 사용한 불활성화 시험요건 폐지 - 개와 고양이와 관련된 백신의 이상독성시험요건 폐지, 재조합(recombinant) 백신도 SLS에의 포함 필요 • 농림수산성의 동물약품검사소(NVAL)가 제안한 액션과 아이템 - 개선조치 리스트에 추가적인 개혁기회를 특정하도록 규제당국에 요구 - 주요 국가의 동일한 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농림수산성과 NVAL의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임상 검사 기기·시약 (체외 진단)	• 신규 체외진단용 의약품(IVD)에 대한 접근 신속화 - 체외진단용 의약품(IVD)에도 의료기기에 도입한 ‘심사신속화프로그램’ 도입 제안 - EU와 일본의 의약품 상호 인정과 일본의 승인과정 효율화 필요 •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료보수제도 - 현재의 보험 적용 희망과정 검토, 보험점수부여구조의 개선 필요 - 제3의 기관에서 시종의 검사약을 정기적으로(예: 5년마다) 성능을 평가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검사약은 시장에서 퇴출 - 임상검사의 상환가액(검체검사 실시요금)은 검사의 품질(정밀도, 정확성, 검사체제의 인증), 속도(긴급대응, 외래환자의 긴급 검사), 총괄적인 환자보호에 대한 공헌 등의 임상가치를 고려해 설정

표 5-7. 계속

분야	일본정부에 대한 제안
의료기기	• 임상평가방식 -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임상시험의 범위 축소 필요.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기존에 시판된 의료기기는 해당 지역에서의 사용실적 등을 인정하여 임상시험 생략 혹은 대폭 축소 및 필요 • QMS의 상호 인정 적합성 - EU의 제3자 승인기관(Notified Body)이 실시한 QMS 감사결과 인정 및 활용, EU의 ISO13485 검사방법 도입 필요, QMS 감사원의 자격요건은 ISO17021에 적합화 필요 • 상환가격 - 기능 구분의 추가적인 세분화와 '의료재료 기능 구분 복수가격제도'의 검토, 재산정제도 폐지, 의료기술 C2 신청의 예측성 확보 - 재택 의료기기와 관련해 혁신의 적절한 평가 및 외래가 아닐 경우 기기·재료의 적절한 가산 필요
의약품	• 약가제도 - 혁신 촉진을 저해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시장확대 재산정제도 폐지 필요 • 신약에 대한 접근성 - 신약 처방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일본의 독자적인 규제 개선 필요 • 상호인정협정 - 의약품의 제제 및 품질 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서 상호 인정 대상국가를 EU 28개국으로 적용, 비교형 제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필요
백신	• '생물학적 제제기준'의 적시 검토 - 백신의 품질기준을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개정, 현행 생물학적 제제기준의 폐지 검토 • 백신 수입 시 품질시험의 중복 해소 - 실험항목의 중복이 필수라는 점의 과학기술적 근거 제시, 근거가 없어 불필요한 것은 생략 • 일·EU 상호인정협정(MRA)의 대상 국가와 품목 확대 - MRA 또는 MOU(양해각서)를 확대하여 백신이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을 대상품목으로 함으로써 수입기간 단축 필요 • 개발 가이드라인의 개정·책정 - 감염예방 백신의 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면역감별(adjuvant) 가이드라인 책정
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의 규제·제도 - 의약외품 심사기간의 단축: 의약외품의 신제품 승인과 일부 변경 승인과정, 특히 기존에 승인받은 제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제품에 대한 승인의 합리화와 신속화 필요 - 의약외품과 관련된 규제의 투명성 향상: 기존에 승인된 유효성분 목록과 첨가물 목록의 정기적인 개선과 확대를 위해 명확한 검토과정을 확립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필요 •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효능범위 확대 - 외국의 효능범위와 조화를 도모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약용화장품) 효능범위의 적극적 확대 •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 수입품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작업과 시간절약 필요 - 일부 변경 승인 후에도 일부 변경 이전 제품의 출하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 설정 • 화장품 성분 규제의 투명성 향상 - EU와 일본은 성분 규제의 조화를 위해 노력 •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동일 법적 기준의 적용 - 소비자 및 수입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불법적인 상품 구매·판매에 대한 계몽활동 실시, 법령 준수가 미흡한 병행 수입업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지도 필요

자료: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會議所(2013), pp. 46~58에서 저자가 발췌·정리.

동물용 의약품에서는 제품승인, 시드로트 배양관리수법(SLS: Seed Lot System),¹³⁴⁾ 동물 의약품검사소(NVAL)의 시장승인절차 개선조치라는 세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다. 제품승인에서는 승인신청의 일부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고, 신청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SLS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조공정시험 등 일본의 독자적인 부가시험요건이 있는 점, 백신 세분제품에 대한 불활성화 시험을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NVAL이 일본 동물용의약품협회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시장승인절차 개선조치에 추가적인 개혁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¹³⁵⁾

임상검사기기·시약에서는 신규 체외진단용 의약품(IVD)에 대한 접근 신속화,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료보수제도라는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전자는 200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선이 이뤄졌으나, 관계 부처 장관 승인제도는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방법, 심사절차의 장기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잔존해 있다고 언급되었다. 후자는 유럽과 일본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임상검사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임상검사의 가치나 의료에 대한 공헌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진료보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³⁶⁾

의료기기에서는 임상평가방식,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QMS)의 상호 승인 적합성 조사, 상환가격 등의 이슈가 제

134) 시드로트 배양관리수법(Seed Lot System)이란 시험균의 조제와 관련하여 보존균주의 세대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2013), 「시드로트 배양관리수법의 의미와 유의점 문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E005&qid=5DDew&q(검색일: 2014. 9. 10).

135)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47.

136)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49.

기되었다. 임상평가기준은 국제표준 도입이 진전되고 있으나, 유럽·미국과 비교해 추가적인 요구가 많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도한 QMS 적합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어 승인비용 증가와 출시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현행 보험상환가격제도하에서는 의료기기의 시장성 및 상환가격의 예측성이 없어 기업의 R&D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재택의료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¹³⁷⁾

의약품에서는 약가(藥價)제도, 신약에 대한 접근성, 임상실험환경/상호인정협정(MRA)의 세 가지가 비관세장벽으로 제기되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확대 재산정제도에 따라 혁신 촉진에 역행하는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져, 적극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신약의 투약기간은 그 상한이 원칙적으로 14일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최신 약물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에 대한 양자간 상호인정협정의 적용이 EU 28개국 중 13개국에 그치고 있고, 검사·검정의 중복에 따라 제품출시의 지연 및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¹³⁸⁾

백신에서는 생물학적 제제(製劑)기준의 개선, 백신 수입 시 품질실험의 중복, 상호인정협정의 대상 국가와 품목 확대,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책정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생물학적 제제기준은 개정 시기·절차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시험을 거쳐 품질이 담보된 백신에 대해 일본에

137)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51.

138)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53.

서는 새로운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수입 후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제제기준에 따라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MRA의 대상 국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0년 발효된 감염예방 백신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은 일본인의 용량 반응성 시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¹³⁹⁾

화장품·의약품에서는 의약품의 규제·제도, 화장품·의약품의 효능범위 확대, 화장품·의약품의 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화장품 성분 규제의 투명성 향상,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동일 법적 기준 적용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일본의 의약품 규제는 투명성이 불충분하고 승인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화장품 효능에 대한 표현의 범위가 외국에 비해 좁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화장품·의약품의 수입 시 제조판매승인서, 수입신고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의약품에 대한 일부 변경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변경 전의 구(舊)제품은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U와 일본 간에 화장품 성분 규제와 관련한 목록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병행 수입업자에 의한 제품의 유통·광고가 만연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¹⁴⁰⁾

현재 일본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¹⁴¹⁾ 상기의 의료·위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호인정·

139)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55.

140)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p. 57~58.

141)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중점분야는 2014년 6월 마련된 「規制改革に関する第2次答申」을 바탕으로, 같은 시기에 각의결정된 「『日本再興戰略 改訂 2014- 未來への挑戦』의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건강·의료’, ‘고용’, ‘창업·IT 등’, ‘농업’, ‘무역·투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内閣府(2014), p. 2. <http://www8>.

국제조화 추진(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백신), 수출입 원활화 및 통관절차 합리화(화장품)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표 5-8 참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의 국제 정합화(심사기간의 단축화 등) 및 명확화, 수입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제도의 국제관행 조화, 승인심사 단축화 등을 추진하며, 백신에 대해서는 시드로트시스템(SLS)의 대상 확대, 사용제한기간의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제도정비방향은 이 분야의 개선을 중시하는 EU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일·EU FTA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 5-8.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번호	사항	규제개혁 내용	실시시기
1	의료기기 심사기준의 국제정합화(1) - QMS省令 개정 시 ISO13485에 정합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QMS)에 관한 성령 의 개정(신QMS성령) 시, ISO13485에 대응한 내용으로 하며,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구성함.	2014년도에 조치
2	의료기기 심사기준의 국제정합화(2) - QMS省令과 ISO13485 간 관련성 명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QMS)에 관한 성령 의 개정(신QMS성령) 시, 신QMS성령 제2장이 ISO13485에 상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문서를 일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지함.	2014년도에 조치
3	의료기기 심사기준의 국제정합화(3) - 국제적 조화 추진	의료기기의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협의의 장인 IMDRF(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 포럼)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더욱 노력함.	2014년도에 검토 착수, 결론을 얻은 후 조치
4	의료기기 심사기준의 국제정합화(4) - 수입사업자의 부담 경감	해외에서 ISO13485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ISO 취득 시 이용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에 대해 결론을 도출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조치
5	동물용 의약품의 제품승인신청제도의 합리화(1) - 국제관행과의 정합화	VICH(동물용 의약품 승인심사자료의 조화에 관한 국제협력 회의)의 회원국으로서 모든 VICH 가이드라인의 신규작성과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국내 관련 법령에 반영함.	2014년도 이후 지속 실시

cao.go.jp/kisei-kaikaku/kaigi/publication/140624/item1-1.pdf(검색일: 2014. 7. 5).

표 5-8. 계속

번호	사항	규제개혁 내용	실시시기
6	동물용 의약품의 제품승인신청제도의 합리화(2) - 관련 부처의 협력에 의한 국내 승인 심사 단축화	동물용 의약품의 승인심사에 대해 3개 부처(내각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가능한 한 각 부처에서 절차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함.	2014년도에 계속 검토, 결론을 얻은 후 조치
7	동물용 백신 제조 관련 시드롯 시스템(Seed Lot System)의 대상 확대	재조합(recombinant) 백신에 대한 시드롯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방법 등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반영함.	2014년도에 계속 검토, 2015년도를 목표로 결론을 얻은 후 조치
8	식용동물에 이용되는 백신의 사용제한기간 개선	식용동물에 이용되는 백신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사용제한기간 설정방법을 참고하여 사용제한기간 설정을 개선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조치
9	화장품 수입 시 절차 간소화(1) - 수입변경신고 의 첨부자료 폐지	의약품 등 수출입절차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에 맞춰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허가 를 5년마다 갱신할 때 필요한 수입 변경신고 의 제출 시, 신고가 완료된 수입신고 의 복사본 등의 첨부부는 폐지함.	2014년도에 조치
10	화장품 수입 시 절차 간소화(2) - 수입신고 의 제출절차와 관련된 첨부자료 간소화	화장품 수입에 관련된 제조판매용 화장품 수입신고서 제출 시 정부서류(제조판매업(제조업) 허가증, 화장품제조판매 신고서, 화장품의국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신고서) 중 그 복사본의 일부 첨부부를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조치
11	화장품 수입 시 절차 간소화(3) - 수입사업자의 사무처리 부담 경감	화장품 수입사업자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조치

자료: 内閣府(2014), 「規制改革実施計画」,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publication/140624/item1-1.pdf>(검색일: 2014. 7. 5). pp. 44~48.

둘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이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는 자동차분야에서 기술표준과 인증절차의 조화, 세제개혁, 경자동차, 고압가스보안법,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자동차산업 글로벌화, 타이어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표 5-9 참고). 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EU 기업들은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독특한 상관행을 매우 큰 비관세장벽으로 여기고 있다.¹⁴²⁾

142) 일본에서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9. 자동차 관련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분야	일본정부에 대한 제안
자동차	● 기술표준과 인증절차의 조화 - 일본이 독자적인 국내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항목에서 현행 UN 규제의 채택 가속화 - 국제적인 차량형식 상호 승인제도를 양자간에 실현하기 위해 EU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필요 ● 세제개혁 - 자동차 취득세 및 중량세 폐지 - 소비세율의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과세구조 간소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 -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연료에 대한 과세의 포괄적인 개선 - 환경친화적 차량을 평가하기 위한 연비와 배기가스 측정에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 채택, 되도록 신속하게 실시 ● 경자동차 - 경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규제·금전 면에서 대등한 조건하에 둘 필요 ● 고압가스보안법 -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술 사용이 최소한의 사무절차로 가능하도록 실현 및 관련된 조치 도입 필요
자동차 부품	●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 부품이나 시스템의 조달 시 자동차 생산기술, 거래 및 로지스틱 면을 중시할 것을 일본 자동차 업계에 요구. 글로벌화된 조달의 증대와 싱글 플랫폼 개발 중시는 일본업계의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 자유경쟁의 적용과 계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필요 - 일본은 재시험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외국의 시험결과 승인 필요 ● 상용차 타이어 - 기술기준과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 가속화 요구

자료: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7, p. 69를 기초로 저자가 정리.

자동차분야에서 기술표준과 인증절차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차량형식 상호 승인제도(IWVTA)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¹⁴³⁾ 세제 측면에서 일본은 외국과 비교해 여전히 자동차의 구입과 소유 시 과도하게

European Commission(2012b), p. 44.

143) 유럽산 승용차·상용차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기술기준과 인증절차의 조화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럽비즈니스협회(EBC)는 FTA 협상에서 이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6.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및 재정 측면에서의 혜택은 경쟁을 왜곡시키며,¹⁴⁴⁾ 현행 고압가스보안법은 EU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안전기술(연료전지차·LPG차, CNG차, 수소에어백 등)의 일본 도입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¹⁴⁵⁾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계열 기업과의 협력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행 때문에, EU의 자동차부품 및 시스템 제조업체가 유럽의 기술을 일본기업에 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용차 타이어는 UN/ECE와 일본의 규제 간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¹⁴⁶⁾

상기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상호 인정·국제조화 추진(자동차 연비 규제 및 배출가스 측정방법 개선), 수출입 원활화 및 통관절차의 합리화(도난자동차부품의 부정수출 방지)라는 두 가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표 5-10 참고). 승용 및 화물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는 이미 2012년 각의결정된 조치로, 2014년 3월 UN 자동차기준조화세계포럼에서 ‘국제통합소형차시험방법(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을 정식 승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2014년도 이내에 중앙환경심의회

144) 일본의 경자동차는 최대 전장 3.4m, 전폭 1.48m, 전고 2m로 제한되고, 엔진배기량은 660cc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경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세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고속도로통행료가 보통·소형차에 비해 저렴하며,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경자동차가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자동차는 일본의 경자동차 규격에 적합한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6.

145)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7.

146)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9.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2016년까지 UN/ECE 규칙(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국제규칙)의 12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대해 국내규칙을 조화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EU 간 자동차분야의 규제조화가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⁴⁷⁾ 또한 일본에서 경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2014년 세제 개정에서 경자동차세는 2015년 이후 신차를 사는 경우 현재 세액의 1.5배인 1만 800엔으로 31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 4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인하되면서 경자동차와 보통차(자가용 자동차)의 세율 격차가 2%에서 1%로 좁혀지게 되었다.¹⁴⁸⁾

셋째, 철도분야이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는 이 분야에서 오픈 통합 철도시스템 도입, 시험·인증의 상호 인정 및 규격의 정합화, 업무안전조항의 범위 정의, 입찰의 네 가지 이슈에 대한

표 5-10. 자동차 관련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번호	사항	규제개혁 내용	실시시기
1	자동차의 연비, 배출가스의 측정방법 개선	국제통합소형차시험방법 (MLTP)의 신속한 국내 도입에 대해 중앙환경심의회 등에서 검토·결론을 얻은 후 도입함.	2014년도에 계속 검토, 결론을 얻은 후 조치
2	도난자동차부품의 부정수출 방지	예컨대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의거한 전자메니페스트의 이용 가능성도 포함하여, 도난자동차부품의 부정수출 감시체제를 전국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조치

자료: 内閣府(2014), 「規制改革実施計画」,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publication/140624/item1-1.pdf>(검색일: 2014. 7. 5), p. 45, p. 48.

147) 日本貿易振興機構(2014b), <https://news.jetro.go.jp/aps/QJTR/main.jsp?uji.verb=GSHWD0320&serviceid=QJTR&rqid=1&kino=QJTR53c754aa96e10&PARASETID=jwb>(검색일: 2014. 9. 25).

148) 財務省(2013),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4/26taikou_06.html(검색일: 2014. 7. 5).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표 5-11 참고). 철도분야에서 EU는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특수조항(업무안전 조항)을 문제 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품개발이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자유를 기업에 주지 않고, 대신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업을 지정하는 철도사업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시험·인증의 상호 인정 및 규격의 조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유철도의 민영화 이후 철도사업자의 안전요구사항이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이지만 운수업무안전에 관련된 조달을 제외함으로써 GPA 절차의 이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이 부재한 실정

표 5-11. 철도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분야	일본정부에 대한 제안
철도	• 오픈 통합 철도시스템 도입 - 일본정부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함께 자국 기업의 수출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성능기준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유롭게 솔루션을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된 통합 철도시스템 촉진·장려 - 이와 관련하여 유럽비즈니스협회(EBU)와 일본정부 당국자, 연구기관, 철도사업자, 산업계 간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교환 필요 • 시험·인증의 상호 인정 및 규격의 국제조화 - 모든 철도사업자가 수용가능한 최저한의 공통 요구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JR 그룹 각사와 그 외의 일본 주요 철도사업자가 참여하는 작업반 설치 • 정부조달협정(GPA)- 업무안전조항에 대한 범위 정의 - 일본은 모든 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요구사항을 상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무안전조항 범위의 명확한 정의 발표 • 입찰 - 정부가 입찰 이용 추진. 다른 철도사업자도 JR 동일본이 보인 본보기 수용 필요

자료: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39를 기초로 저자가 정리.

이라고 강조했다.¹⁴⁹⁾

철도분야는 이미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분야와 관련해 일본은 EU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JR3사(東日本, 東海, 西日本)의 경쟁입찰 시 운행안전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달정보를 인터넷상에 상세히 공표할 것을 EU 측에 약속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철도분야에 대한 일본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4년 9월 1일 회원국에 대해 그동안 일본이 요청해온 ‘JR3사에 대한 WTO GPA에서의 제외’를 제안했다. 과거 EU는 JR이 안전에 관한 물품은 경쟁입찰의 예외로 한다는 운행안전조항을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유럽산 철도 차량과 부품의 일본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EU는 JR3사가 WTO GPA에서 제외되는 것에 계속 반대해왔다. JR 입장에서는 GPA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계약은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어 신속한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EU 회원국이 일본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장래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등 유럽기업의 일본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일·EU FTA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150),151)}

넷째, 식품분야이다. 歐洲ビジネス協会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는 이 분야에서 관세 및 수입할당, 식품첨가물, 식품용 효소, 쇠고기 및

149) 歐洲ビジネス協会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39.

150) EU의 회원국에 대한 ‘JR3사의 제외’ 제안과 관련해 유럽 최대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은 EU의 드뤼흐트(Karel De Gucht) 통상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외’는 유럽 기업이 일본시장에 실제로 참가하고 나서야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한 회원국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일본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역내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欧州委、JR3社除外提案』, 2014k. 『日本經濟新聞』, 9월 10일).

151) 『非關稅障壁、潛むワナ』, 2014f. 『日本經濟新聞』, 7월 13일; 『日欧、鉄道巡る対立解消』, 2014i. 『日本經濟新聞』, 8월 13일.

그 부산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리스테리아균, 세균 연차분석의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표 5-12 참고). 식품분야에서 일본의 규제환경은 자국 식품가공산업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바, EU는 특히 유럽산 식품에 대한 관세 폐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신속한 허가와 승인과정의 기한 도입, 국제조화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다수의 식품과 식재료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¹⁵²⁾ 식품첨가물은 승인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식품용 효소 전용 승인제도가 없고, 쇠고기 및 그 부산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은 승인절차가 매우 더디다고 언급했다. 또한 리스테리아균과 관련해 유럽과 달리 일본은 리스토리아균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구별 없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특정 식품 및 모든 음료에 대해 매년 분석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¹⁵³⁾

식품분야에서 일본은 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수입 식품 검역 시 자율검사의 빈도 완화라는 두 가지 규제개혁을 추진했다(표 5-13 참고). 전자는 2012년에 실시되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 중 미지정된 15개 품목에 대한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건강 영향평가가 완료된 3개 품목의 지정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12개 품목의 지정을 위한 로드맵이 2012년 9월에 책정·공표되었다. 2014년 3월 말 현재 12개 품목 중 6개는 식품안전위원회 첨가물전문조사회에서

152) 식품 및 식재료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버터 35%+1,159엔/kg, 치즈 26~40%, 업무용 초콜릿 29.8%, 과자류 25%, 시럽 24%+수입할당 설탕세, 과일주스 및 유아용 과일푸레 21.3%, 허브차 15% 등이다.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 63.

153)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p. 63~64.

심의를 마쳤으며, 기타 6개도 전문조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¹⁵⁴⁾ 후자는 양호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검역 시 자율검사의 빈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식품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자율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¹⁵⁵⁾ 일본정부는 2014년도에 이에 대한 검토 및 결론 도출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식품분야에서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표 5-12. 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제안	
분야	일본정부에 대한 제안
식품	• 관세 및 수입 할당 - EU·일본 FTA에서 식품에 대한 관세 폐지 - 수입할당제도, 특히 유제품 및 설탕과 그 파생제품에 관한 제도 폐지 • 식품첨가물 - 후생성은 식품안전위원회와 협력해 당초 45개 품목 중 남은 11개 품목 첨가물의 신속한 허가 필요 - 해바라기오일에 함유된 레시틴을 최대한 신속히 인가 - 후생성은 식품안전위원회와 함께 승인과정의 각 단계에 기반 도입, 중복적인 추가정보 요구 금지 - 이산화유황과 소르빈산(방부제의 일종) 등의 사용기준을 국제적인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조화 • 식품용 효소 -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회의(JECFA)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용 효소가 일본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보증 - 후생성은 식품용 효소 전용 승인제도 설계 • 쇠고기 및 그 부산품(케이싱, 젤라틴)을 포함한 가공식품 - 식품안전위원회는 농림수산성과 후생성에 이미 데이터를 제출한 EU 회원국에 대해 승인과정을 신속히 진행 - 쇠고기 및 그 부산품(케이싱, 젤라틴)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높은 안전기준을 이미 확립하고 있는 유럽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수입 인정 필요 • 리스테리아균 - 일본은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입장을 개선하고, 코덱스 규격의 원칙(EU 및 캐나다 등에서 채택)이나 '더블 어프로치' (미국 농무성 식품의약품국에서 지지)와 국내규제 간 정합화 검토 필요 • 세관의 연차분석 - 세관에서 EU산 식품의 연차분석(첨가물, 세균학적)을 필요 없는 것으로 조처할 필요 - 제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공식 분석을 재시험 사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상소제도 도입
자료: 歐洲ビジネス協會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2013), pp. 63~64를 기초로 저자가 정리.	

154) 規制改革会議(2014b), p. 11.

155) 規制改革会議(2014a), p. 70.

표 5-13. 식품 관련 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번호	사항	규제개혁 내용	실시시기
1	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간소화·신속화 ¹⁾	국제 범용 첨가물 중 미지정된 15개 품목은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방침' (2011년 4월 각의결정)의 실시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해 이미 심의가 시작되었으며, 이 중 식품건강 영향평가가 종료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2년 중에 지정하도록 함. 나머지 12개 품목에 대한 국제 범용 첨가물의 조기 지정을 위해 지정기간은 추가 자료수집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대략 1년 정도를 표준으로 삼아 향후의 로드맵을 책정·공표함.	2012년도 상반기 조치 (3개 품목 지정은 2012년도 조치)
2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시 자율검사 빈도의 완화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등에 대한 자율검사의 실시 빈도는 과거의 실적 등을 참고해 위반사례가 없고 제조시설의 위생관리상황이 유지되는 식품에 대해 완화하고 반면 위반사례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감시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자율검사의 빈도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함.	2014년도에 검토·결론, 2015년도에 조치

주: 1) 2014년 3월 현재 3개 품목의 지정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12개 품목의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2012년 9월에 책정·공표하였다. 그 중 6개 품목은 식품안전위원회 첨가물전문조사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기타 6개 품목도 이 조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다. 規制改革会議(2014b), p. 11.

자료: 規制改革会議(2014b), p. 11; 内閣府(2014), 「規制改革実施計画」,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publication/140624/item1-1.pdf>(검색일: 2014. 7. 5), p. 45.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일본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떠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간접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FTA 추진전략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한 대상국 혹은 지역의 선정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 TPP, 일·EU FTA와 같은 메가 FTA 협상에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특징이 협상 의제나 쟁점 분야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FTA 체결이 단순한 무역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고용과 생산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시 말해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였는데, 상기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정리·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에서 RCEP 지역의 비중이 TPP 지역보다 높아진 시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그만

کم 미국에 비해 중국의 중요도가 커진 것인데,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수입(value-added import) 측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RCEP 지역의 비중이 TPP 지역을 추월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적 분포를 FTA 체결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였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FTA 체결을 서두르지 못한 점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유리할 것이다. 단 실제 협상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양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그 실익이 좌우될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은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와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

트위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결국은 자국의 중간재 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일본정부가 제조업분야의 관세 인하·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이라는 협상의제에 초점을 맞춰 그간 FTA 협상을 추진해온 전략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를 통해 본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1995년 0.9에서 2000년 0.842, 그리고 2005년 0.745, 2011년 0.734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까지 0.76에서 0.77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0.78에서 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RCA 지표를 보더라도 1995년 1.257, 2000년 1.229, 2005년 1.186, 2011년 1.174로 2000년대 들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인데, 일본의 기존 무역통계상 수출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역수지를 보더라도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약 322억 달러의 적자를 계상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365억 달

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출에 내재한 국내부가가치 비율(Total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Gross Exports)이라는 글로벌 가치사슬 지표 역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일본의 이 지표값은 2000년대 중반부터 90% 아래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의 경우 82.1%로 한국의 53.7%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로 산출되는 국내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수출이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직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본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산업의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일본의 FTA 체결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수출이 국내 고용이나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지만, 부가가치 관점에서 수출의 ‘역할’을 평가해보면 국내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FTA 확대를 통한 수출확대라는 ‘수출지상주의’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1) 기발효 FTA 협정문 분석을 통한 TPP 쟁점 도출

일본 FTA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목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본정부는 2004년까지 FTA 협상목표 설정과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동아시아와의 연

계를 중시하면서도 자국의 선정기준과 협상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다고 평가된다. 가장 먼저 일본정부는 역내국을 우선시하는 FTA 정책방침하에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의 민감품목을 제외하면서도 일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FTA를 전개했다. 한편 NAFTA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정부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고 자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FTA 전략을 추진했다.

2006년 ‘글로벌 전략’을 기점으로 일본의 FTA 협상 대상국은 다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스위스 FTA는 미국, EU와 같은 주요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선진국 간 FTA의 시범 모델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최근 일본정부가 역점을 두는 TPP 협상의 정책목표로는 그동안 일본의 FTA 성과가 미진했던 국내개혁(농업, 자연인의 이동, 규제개혁 등) 추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효율화,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 등을 더욱 중요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PP를 통해 체결상대국을 확대하는 전략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체결 EPA 협정문 중 현재 TPP 협상에서 쟁점분야로 지목되는 상품관세,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FTA 체결성과를 분석하고, 일본 입장에서 TPP 쟁점을 도출했다. 첫째, 일본의 FTA는 포괄적 범위의 경제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수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기조를 견지한 결과 자유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는 농수산업분야에서 철저한 시장보호라는 정책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FTA 추진전략상 자국의 농수산업 시장보호가 가능했던 FTA 상대

국 위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업종별 양허수준을 분석한 결과, TPP 협상에서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 양허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양허율이 가장 낮은 육류·낙농업(37.1%)이 최대 민감품목임을 확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정부는 상품관세분야 TPP 협상에서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쇠고기에 대해 관세 철폐 대신 관세 인하(38.5%에서 10% 정도)로 유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의 복잡한 유형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일·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로 적용을 확대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FTA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최적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서비스분야에서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적지 않은 분야를 유보해왔는데, TPP 협상에서는 이를 견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투자분야의 경우 일본의 해외투자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의 설정 여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출원의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 FTA의 무역효과 및 이용률 분석을 통한 FTA 추진과제

FTA 발효 이후의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했다. 우선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2002년 2.6%에서 2013년 18.9%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한국(35.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FTA 발효 이후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발효연도 대비 2013년 기준으로)이 모두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정도이다. 일·멕시코 FTA를 대상으로 산업별 무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효과는 관세 인하 품목인 자동차와 일부 관세 철폐품목(합금강, 기타 열간압연합금강, 안전벨트용 부품 등)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증가효과는 쇠고기 및 즉시 철폐품목(호박, 냉동 정어리, 냉동 새우)으로 제한되어 농수산업 전체 수입 증가율이 2005년 7%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멕시코 FTA에서의 실제 농수산물 양허수준이 전체 품목의 절반 정도(49.8%)만을 양허한 소폭 개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입 비중이 증가한 일·멕시코 FTA의 경우에도 무역효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과 일본기업의 수출입에서의 FTA 활용률은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의 칠레와의 FTA 활용도는 23.7%로 한국의 9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미 앞서 FTA 협정 자체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FTA 활용동기를 감소시켜 FTA 체결에 의한 무역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일본기업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

도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FTA 발효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관세 인하 폭이 넓어지면서 일본기업의 특혜관세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2013년 7월부터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TPP 협상과정의 불투명성 논란¹⁵⁶⁾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상 쟁점들이 TPP 협상내용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은 TPP 협상의 타결 전망을 가늠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전략을 유추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타결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2014년 9월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4개 분야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¹⁵⁷⁾

156) TPP 협상은 비밀협상으로서 협정문(Text)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미국과 일본은 시장접근에 관한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2014년 10월에 다른 TPP 협상국에 공개하고, TPP 12개국 간에 심도 있는 관세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Inside U.S. Trade* 2014c).

표 6-1. TPP 주요 협상분야별 쟁점 (2014년 9월 현재)

분야	주요 쟁점 및 국가 간 대립구도	
시장 접근	농업	- 주요 쟁점은 관세율, 관세 할당, 국내보조 * (쌀) 미국 · 호주 · 베트남—일본 · 말레이시아 * (쇠고기) 미국이 일본에 한 · 미 FTA(40%)의 관세율을 5년 내 95% 삭감) 수준을 요구 * (유제품) 뉴질랜드—미국, 미국—캐나다 * (설탕) 호주—미국, 호주 · 뉴질랜드—베트남
	서비스무역	- (제1모드: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전문직 자격증 및 면허의 상호 인정문제 미논의, 특급우편서비스의 공정경쟁문제와 미래성장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문제가 쟁점 - (제3모드: 상업적 주재) 베트남의 외자 소매업체 진입규제와 말레이시아의 외자 소매 및 외식산업 진입규제가 쟁점 - (제4모드: 자연인의 이동) 상용관계자의 이동은 논의 중이고, 단순노동자의 이동은 논의에서 제외 * (전기통신서비스분야) 시장접근과 규범 설정에 대해 논의 중 * (금융서비스분야)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소유권 제한 요구가 쟁점 * (전자상거래) 미국의 실물거래와 동급의 자유화 요구—베트남 · 말레이시아가 국가 간 데이터 전송거래 자유화와 데이터의 로컬서버 저장해제요구에 반발
규범	SPS	-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처리가 주요 쟁점: 미국—호주
	원산지 규정 (RoO)	- 원산지 누적(cumulation) 원칙은 합의 - (섬유) 미국의 yarn forward rule vs. 베트남의 cut and sew rule—short supply list를 둘러싼 협상
	지식재산권 (IPR)	- 의약품의 특허권, 저작권, 이행 분야에서 이견 * 미국이 한 · 미 FTA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patent linkage) 등을 요구 - (저작권 보호)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70년)과 저작권의 비친고최화 요구가 쟁점
	외국인투자	- ISD 조항의 도입과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이 쟁점
	경쟁정책	- 미국이 제한한 국영기업 규율(discipline), 즉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이 쟁점: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미국 등이 비합치조치를 요구하는 국영기업 리스트를 제출
	기타	- (노동) 분쟁처리 메커니즘: 미국 · 호주의 노동과 무역의 연계 요구에 베트남 · 페루 · 칠레가 반발 - (환경)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쟁점

자료: 본문 제4장 요약.

- 157) 규제조화, 국영기업, 전자상거래, 경쟁력 및 서플라이 체인, 중소기업 등과 같은 TPP의 ‘New and Cross-cutting Issues’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국영기업은 경쟁정책분야, 전자상거래는 서비스무역분야에서 각각 논의하고, 규제조화와 경쟁력 및 서플라이 체인, 중소기업은 정보제약상 논의하지 못했다.

둘째, 물론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이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일 협상이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은 미·일 간 타협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이른바 미국과의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기체결 13개 FTA를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은 회피하였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일본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규관 2013, p. 6).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9월 현재 미·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요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 일·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일·EU FTA는 거대 선진국 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FTA 사례로 글

로별 통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FTA에서 일본은 EU의 관세 철폐에, 그리고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EU FTA는 양자간 관심분야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첫째, EU 집행위원회와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및 언론보도를 통해 판단해보면, 일·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것이 될 전망이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 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EU FTA 협상은 제5차 협상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이, 그리고 제6차 협상에서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양허안이 교환되었다. 또한 그동안 논의가 진행된 협상이슈는 관세(할당,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관세규정,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위생 규정(SPS),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 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협정문은 약 20개 분야, 30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EU FTA와 EU·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 될 것으로 보인다.¹⁵⁸⁾

둘째, 일본은 일·EU FTA의 ‘2015년 이내 기본합의 타결’을 희망하나, 과거 한·EU FTA 사례, 3대 메가 FTA의 ‘동시 병행’ 추진, 현재 진

158) 田中(2014b), <http://www.iti.or.jp/flash195.htm>(검색일: 2014. 8. 10). 한편 한·EU FTA의 협정문은 총 15개 장(chapter), 3개 의정서(원산지, 세관, 문화협력)로, 그리고 EU·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총 17개 장, 1개 의정서(원산지 규정), 4개 양해각서로 구성되었다. 강유덕(2013b), p. 9.

행 중인 협상의 쟁점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의 경우 2007년 5월 제1차 협상 개시 이후 2011년 7월 잠정발효까지 총 4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¹⁵⁹⁾ 설령 기본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일·EU FTA가 우리나라 경우와 같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2017년 초부터 실제로 FTA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4대 메가 FTA(TPP, 일·EU, RCEP, TTIP) 중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제외한 3개 FTA에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EU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EU는 미국과 TTIP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제4차 협상(2014년 3월)까지 진행했다.

셋째, 일·EU FTA 협상의 쟁점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 완화·철폐이다. EU는 일·EU FTA에서 자국의 관세를 완화·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다. EU는 한·EU FTA에서 비관세장벽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를 별도(한·EU 협정문 부속서 14-가)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 반면 일본은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the third arrow)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일·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분야는 주로 규제조화, 수출입 원활화/통관절차 합리화와

159) 한·EU FTA의 가서명은 2009년 10월, 정식서명은 2010년 10월에 이루어졌다.

관련된 것들이었다. 결국 일·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의 대상은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역내 중심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TPP, EU 등 역외국·지역과의 메가 FTA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국내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이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함에 따라 이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와 기대손실 증가를 우려한 측면도 있다. 대EU FTA와 관련해서는 EU의 비관세장벽 철폐 공세에 대응해 FTA 협상의 진전상황을 감안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¹⁶⁰⁾ 이는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일본의 규제개혁이 EU의 시장개방 및 비관세장벽 개선요구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FTA 협상목표 설정과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변화해왔다.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중시하면서도 자국의 선정기준과 협상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3건(15개국)의 FTA를 발효시켰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거대 선진경제권과 동

160) 日本經濟再生本部(2013), p. 88,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검색일: 2014. 10. 5).

시다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9건(47개국)의 FTA가 발효된 성과를 이루었다. 한·일 양국의 FTA 체결 결과를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으로 비교하면, 한국(35.4%)이 일본(18.9%)을 월등히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의 FTA 체결 성과가 일본에 비해 높은 자유화를 달성하여 무역효과 측면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최근에 체결한 호주와의 FTA를 예로 들어보면, 상품양허 측면에서 우리가 내실을 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대호주 상품양허에서 단기(5년 이내) 관세 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88.6%이며,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는 전체 품목의 94.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다. 반면 일본의 대호주 상품양허에서 단기(5년 이내) 관세 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81.4%이며, 협정 발효 후 10년까지 전체 품목의 88.4%, 15년까지는 8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FTA 전략을 비교해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일관되게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농수산업분야에서 시장보호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과정에서 일본형 FTA 모델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협상에서 상대국별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에 급급한 나머지 독자적인 한국형 FTA 전략을 구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김양희 외 2008, pp. 381~382).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동안 체결한 FTA의 분석을 토대로 메가 FTA 시대의 거대한 변화 흐름에서 FTA 추진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FTA 무역효과 및 이용률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첫째, 메가 FTA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우리 기업이 최적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RCEP, TPP 등의 메가 FTA 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국제분업화가 가속되면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기준 규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양자간에 체결된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해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메가 FTA를 활용하여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일본의 사례를 통해 FTA 체결단계에서는 상품양허가 주된 관심 사항이었으나, 발효 이후에는 FTA의 효율적인 운용이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3년 한·ASEAN FTA의 수출 활용률은 38.7%에 불과한 반면, 한·페루 FTA의 수출 활용률은 91.8%를 기록했다. 한·ASEAN FTA의 활용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FTA 관련 정보 부족, 낮은 양허개방수준 등이 지적되었다(제현정, 정혜선 2014, p. 185). 우리로서도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FTA 활용비용을 줄이고 FTA 활용동기를 부여하면서,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한국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계기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본문에서는 TPP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전망, 그리고 일본의 미국과의 TPP 협상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TPP 협상 참여는 상품무역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TPP 협상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실증연구는 일본이 TPP를 체결하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¹⁶¹⁾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실증연구에서의 가정과 실제적인 협상타결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TPP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여 일본과 어떠한 내용의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⁶²⁾ 그런데 한국이 TPP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든, TPP 협상을 거치든 농산물과 제조업의 관세협상은 피할 수 없는 분야이다. [표 6-2]에 제시한

161) Petri *et al.*(2013)는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은 TPP에 참여하여 12개국 간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25년 한국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GDP의 0.1%(28억 달러)라고 예측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p. 55) 역시 그 불이익을 GDP의 0.11~0.19%로 예측했다.

162) 한국의 TPP 참여에는 현재 협상 참여국인 12개국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단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 인증절차,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데이터 해외전송,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등 4개 분야에서 요구 내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Schott and Cimino 2014, p. 10).

것처럼 한국은 일본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3배 정도 높은데, 이를 완전자
유화한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것을 무엇과 ‘교환’할 수 있을지
협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환전략이 한국의 TPP 가입
에 따른 실익을 좌우할 것이다.

둘째,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
서는 한국이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구현하고 있고,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TBT,
노동 등 TPP 협상의 많은 분야가 한·미 FTA를 모델로 삼고 있다. 미국
이 TPP 협상에서 일본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분야의 세제문제
와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TPP 가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다른 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쟁정책분야에서의 TPP 협상은 국영기업 개혁문제를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노동과 환경 분야 역시 ‘노동과 무역의 연계’나
‘환경과 무역’의 연계 문제는 결코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감안하면,
한국이 한·미 FTA에서 협상하지 않았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플라이 체인이나 중소기업(SMEs)과 같이

표 6-2. 한·일 간 관세율 비교(2012년)					
(단위: %)					
	단순 평균세율		무관세 비율		양허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농산물	비농산물	
일본	5.2	4.6	47.0	83.0	99.7
한국	16.6	13.3	10.3	37.6	94.6

자료: WTO, ITC and UNCTAD(2013).

TPP에 새로 추가된 협상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을 서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투자분야의 ISD 조항 도입 및 간접수용 판단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저작권의 비친고죄화를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국내 법 질서에 맞게 이행하되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규제가 강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한·미 FTA와 TPP를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TPP 협상전략은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일본이 만일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98% 이상의 자유화율을 보장하는 상태로 TPP 협상을 타결할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행 세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4.6%, 한국은 13.3%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혹은 철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도국과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는 형태로 TPP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유화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라면 한국은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수세입장을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⁶³⁾

163)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의 미·일 간 TPP 협상결과는 민감사안일 수밖에 없으나, 현재로서는 한·미 FTA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Schott and Cimino 2014, p. 7).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은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5개 국가, 즉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과는 양자 협상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는 반면,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한 6개 국가, 즉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와는 이미 합의한 자유화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국내 설탕 제조업자들의 압력으로 2005년 1월 발효된 미·호주 FTA의 재협상 내지는 TPP를 통한 미국 설탕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Schott *et al.* 2013, p. 18).

넷째, 현재 TPP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TPP에 합류한다면 우리로서는 기존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때 문제는 기존 TPP 12개국이 어떠한 규범(rules)을 도입했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실익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경우 2014년 9월 현재 베트남과 미국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어떠한 규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한 섬유소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섬유업계로서는 TPP 협상 타결에 따른 베트남의 대미 섬유·의류 수출증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추후에 TPP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현재 미국과 베트남 간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yarn forward rule’이 채택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류·섬유 소재에 대해서는 역외국가에도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short supply list가 채택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에도 특혜관세가 부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실익은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TPP 참여는 현재 한국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고 일·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그간 일본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 보다는 한·중 FTA를 우선시하였으나, 일본과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 중 혹은 관심을 표명한 상태여서, RCEP을 무대로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 물론 RCEP은 ASEAN이 주도권(centrality)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은 하

미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개요는 USTR 웹사이트,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14. 8.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흐름은 중국을 중심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¹⁶⁴⁾ 그렇다면 한·중 FTA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 일·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1) 일·EU FTA의 체결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일·EU FTA는 거대 선진국 간 FTA로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투자 규범의 채택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EU FTA의 타결로 EU와 일본 모두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므로, 일·EU FTA의 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EU와 관련해서는 미래최혜국대우(MFN)와 선점효과 소진,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MFN과 관련한 혜택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한·EU FTA에서 인정한 MFN은 서비스·투자(설립) 분야의 전체 조항과 자동차분야의 내국세와 배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¹⁶⁵⁾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일·EU FTA의 타결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타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164) TPP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 것인가는 RCEP, 한·중·일 FTA뿐만 아니라, 일본이 2014년 7월 서명한 일·호주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호주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농업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등 다른 TPP 협상국들에 호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양허하는 경우, 그만큼을 호주도 사후적으로 부여받는 ‘검토 조항(review clause)’을 첨부했다(*Inside U.S. Trade*, 2014c).

165)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eu/doc/1/>(검색일: 2014. 8. 21).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EU FTA의 체결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FTA 선점을 통한 상대적 이익이 사라지는 이른바 특혜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EU FTA에 비추어보면 대략 2020년 전후부터 일본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의 선점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특히 EU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업종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EU FTA 체결 이후 2012~13년에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오히려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는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겠으나,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상품 다양성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EU의 경기회복세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회 개최와 함께 EU 진출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⁶⁶⁾

셋째,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¹⁶⁷⁾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이므로 FTA 등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현재 EU와의 FTA 협상에서 국익 최대화를 전제로 하면서

166) 관련 내용은 강유덕, 김준엽(2013)을 참고.

167) EU는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협정문 부속서(14-가)에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을 포함시켰다. 이 부속서의 제10조에서는 협정 발효 5년 후 수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eu/doc/1/>(검색일: 2014. 8. 21).

규제의 국제조화 및 수출입 원활화 · 통관절차 합리화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비관세장벽 철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제의 경우 선제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규제와 제도인 경우에는 강한 협상력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과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 철폐 결과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철폐는 협상대상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개선요구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EU는 일본에 대해 영향력이 큰 30개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일 · EU FTA로 인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 ·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및 기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

2)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둘 필요

일본의 비관세장벽 이슈는 과거 한 · 일 FTA 협상과정에서도 관세분야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비관세장벽에는 제도적인 것과 상관행 같은 문화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후자는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은 정부조치(민민 규제 제외)로 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의 문제점을 분석해나가되, 개별 조치의 정책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⁶⁸⁾ 향후 일본과 관련 분야 협의 시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결과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FTA 허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외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 6월에는 제3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는 이 기구를 통해 망라·체계·정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업종별 협회, KOTRA와 같은 전담기관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망라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중요도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조사는 1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례화된 사업으로 추진해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사대상업체에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조사결과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피로도가 쌓여 정기조사 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되고 축적된 비관세장벽 사례는 향후 일본과 관련 협의 시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표 6-3. 과거 한·일 FTA 협상에서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양측 입장

의제	한국 측 입장	일본 측 입장	논의결과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 일본의 NTMs 해결 긴요 · 정부조치(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조치) 및 민간 상관행도 검토 필요	- 문화적, 관행적 요소 등 비정 부조치는 논의에서 배제 필요	- 비관세조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

자료: 외교통상부(2003), p. 8.

168) 외교통상부(2003), pp. 4~8, pp. 15~32, pp. 115~140.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유덕. 2013a.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7, No.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3b. 「EU·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7, No.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유덕·김준엽. 2013.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투자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3, No.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순국. 2014. 「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과 활용과제」. 『關稅學會誌』,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 권오경·오재현·강영숙·이윤석. 2011.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진출 성공 및 실패요인 조사연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김규판. 2013. 「일본의 TPP 협상 참여선언: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정성춘·이형근·김은지. 2008.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 2009. 「일본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9,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3.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일본의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Vol. 25(3).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김용복. 2013. 「일본 TPP 참여의 정치경제-성장, 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연구』, 제21권 제1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

석』. 용역보고서.

명진호. 2013. 『FTA, 일본의 추적이 거세진다- TPP, 일·EU FTA 등 최근 일본의 FTA 추진 동향을 중심으로』. 『Trade Focus』, Vol. 12, No. 42. 한국무역협회.

사공목·신현수·이우광·박승록. 2013.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연구보고서 2013-663.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3.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1』. 외교통상부. 2003.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결과』.

윤선희. 2014. 『TPP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産業財産權』, 제4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우기·이인규·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Issue Paper Series』, 2013-4. 한국은행.

이재민. 2010.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第27輯 第4號.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철·박순찬·박인원·임경수. 2013.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3-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현정·정혜선. 2014. 『한·ASEAN FTA, 끝나지 않은 여정』.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 13, No. 23. 한국무역협회.

최낙균·김영귀. 2013.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민정. 2013. 『한국의 TPP 참여전략에 관한 연구-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Vol. 25(3). 한국통상정보학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1.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진출 애로사항과 대응과제’ 概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영문자료]

Ando, Mitsuyo, and Shujiro Urata. 2011. “Impacts of the Japan-Mexico FTA on Bilateral Trade.”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E-020. RIETI.

-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1e020.pdf>(검색일: 2014. 8. 6).
- Baldwin, R. 2006. *Globalisation; the great unbundling(s), Globalisation challenges for Europe*, Helsinki: Secretariat of the Economic Council. Finnish Prime Minister's Office. 재인용: WTO-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WTO.
- Baldwin, R., and A. Venables. 2010. "Spiders and Snakes: Offshoring and Agglomeration in the Global Economy." NBER Working Paper. No. 16611. NBER. 재인용: OECD.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OECD Publishing.
- Cheong, Inkyo, Hansung Kim, and Jungran Cho. 2010. "Business Use of FTAs in Korea."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0-E-038; Kohpaiboon, Archanun. 2010. "Exporters' Response to FTA Tariff Preferences: Evidence from Thailand."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0-E-039; Pomfret, Richard, Uwe Kaufmann and Christopher Findlay. 2010. "Use of FTAs in Australia."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0-E-042; Takahashi Katsuhide and Shujiro Urata. 2010.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Firms: Further Evidence." *Business and Politics*, Vol. 12, Issue. 1. 재인용: 浦田秀次郎・安藤光代. 2010. 「自由貿易協定(FTA)の経済効果に関する研究」.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P-022.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pdp/10p022.pdf>(검색일: 2014. 8. 6).
- Dedrick, J., K. L. Kraemer, and G. Linden. 2009. "Who Profits from Innov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 Study of the iPod and Notebook OC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19(1). 81-116.
- European Commission. 2012a. *Commission proposes to open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deal with Japan*. Press Release IP/12/8/810. Brussels. 18 July 20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810_en.htm(검색일: 2014. 5. 9).

- _____. 2012b.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Brussels. 18.07.2012.
- _____. 2013. *T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p. 18.
- Fergusson, Ian F., William H Cooper, Remy Jurenas, and Brock R. Williams. 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1 August 2013.
- Grossman, G. M., and E. Rossi-Hansberg. 2006. “The Rise of Offshoring: It’s Not Wine for Clothing Anymore.” *Proceedings*: 59-102. 재인용: WTO-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WTO.
- Johnson, R. C. and G.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In Press. 재인용: Stehrer, R.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IW Working Paper 81.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Koopman, R., W. Powers, Z. Wang, and S-J Wei. 2011.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orking Paper No.16426.
- Koopman R., Z. Waing, and S-J Wei. 2012.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NBER Working Paper No.18579.
- Linden, G., K. L. Kraemer, and J. Dedrick. 2009. “Who Captures Value in a Global Innovation Network? The Case of Apple’s iPod.”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2. No. 3.
- OECD. 2012. *Mapping Global Value Chains*. TAD/TC/WP(2012)6.
- _____.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OECD Publishing.
- Petri, A. P.,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2013. “Adding Japan and Korea to the TPP.” *Asia-Pacific Trade*(March 7). <http://asiapacifictrade>.

- org/wp-content/uploads/2013/05/Adding-Japan-and-Korea-to-TPP.pdf/(검색일: 2014. 8. 1).
- _____. 2014. “China in the TPP.” *Asia-Pacific Trade*(February 4). <http://asiapacifictrade.org/wp-content/uploads/2012/10/Adding-China-to-the-TPP-4feb14.pdf>/(검색일: 2014. 8. 21).
- Schott, Jeffrey J., Barbara Kotschwar, and Julia Muir. 2013. *Understan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chott, Jeffrey J., and Cathleen Cimino. 2014. “Should Korea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Policy Brief*, No. PB14-2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tehrer, R.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IW Working Paper 81.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Sturgeon, T. 2001. “How do we define value chains and production networks?” *IDS Bulletin* 32(3). 재인용: WTO-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WTO.
- Timmer, Marcel P.(ed). 2012.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Contents, Sources and Methods.” WIOD Working Paper 10. <http://www.wiod.org/publications/papers/wiod10.pdf>/(검색일: 2014. 4. 26).
- USTR. 2013. *Motor Vehicle Trade Terms of Reference*.
- WTO-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WTO.
- WTO, ITC and UNCTAD. 2013. *World Tariff Profile 2013*.
- Xing, Y., and Neal Detert. 2010. “How the iPhone Widens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I Working Paper 257.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일문자료]

- 安藤光代. 2007. 「日本のFTA/EPAの経済効果：現時点での事後評価」. 『三田商学研究』, 第50巻 第5号. 慶應義塾大學商學會.
- 石川幸一. 2012. 「企業のグローバル事業展開を支えるFTA」. 『国際問題』, No. 612.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_____. 2013. 「物品貿易の障壁の現状と問題点」. 『日本経済の成長に向けて: TPPへの参加と構造改革』. 21世紀政策研究所.
- 岩田伸人. 2014. 「TPPと環境規律」.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 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浦田秀次郎・安藤光代. 2010. 「自由貿易協定(FTA)の経済効果に関する研究」.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P-022. RIETI.
- 馬田啓一. 2005. 「重層的通商政策の意義と問題点」.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編著. 『日本の新通商戦略: WTOとFTAへの対応』. 文真堂.
-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編. 2012. 『日本のTPP戦略-課題と展望-』. 文真堂.
- 欧州ビジネス協会在日歐洲(連合)商工会議所. 2013. 「第四の矢 日本の商環境に関するEBC報告書2013年」. http://www.ebc-jp.com/ja/images/stories/2013_EBC_write_paper_Jap.pdf(검색일: 2014. 8. 25).
- 梶田朗・安田啓. 2014. 『FTAガイドブック2014』. JETRO.
- 外務省. 2007. 『解説 FTA・EPA交渉』. 日本経済評論社.
- _____. 2013. 「EPA/FTAの現況について」. <http://www.rieti.go.jp/jp/projects/ppiil-sub/pdf/9-2-1-1.pdf>(검색일: 2014. 5. 19).
- 規制改革会議. 2014a. 「規制改革に関する第2次答申-加速する規制改革」. 内閣府.
- _____. 2014b. 「フォローアップ調査について(平成 26年 3月31日)」. 内閣府.
- 久野新・木村福成. 2007. 「日本の経済連携協定(EPA)における貿易自由化水準の評価一方法論的課題と部門・産業別評価一」. KUMQRP Discussion Paper Series. DP 2007-002.
- 経済産業省. 2000. 『通商白書 2000』. 재인용: 馬田啓一. 2005. 「重層的通商政策の意義と問題点」.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編著. 『日本の新通商

戦略：WTOとFTAへの対応』。文真堂。

- _____. 2009. 「日本・スイス経済連携協定と原産地規則について」.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epa/file/JSWEPA200908.pdf(검색일: 2014. 5. 13).
- _____. 2010a. 『不公正貿易白書 2010年版』. 재인용: 石川幸一. 2013. 「物品貿易の障壁の現状と問題点」. 『日本経済の成長に向けて: TPPへの参加と構造改革』. 21世紀政策研究所.
- _____. 2010b. 「EPAの概要と原産地規則」. <http://www.jcci.or.jp/gensanchi/201005-1.pdf>(검색일: 2014. 6. 20).
- _____. 2012a. 「EPAの概要と原産地規則」.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epa/file/rule_of_origin_epa.pdf(검색일: 2014. 6. 20).
- _____. 2012b. 『通商白書2012』.
- _____. 2014a. 『2014年版不公正貿易報告書』.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32/2014_houkoku01.html(검색일: 2014. 7. 17).
- _____. 2014b. 「The Number of CO Issued in Japan」.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FTA/file/co_issuance.pdf(검색일: 2014. 9. 20).
- _____. 2014c. 「第47回 平成25年度外資系企業動向調査(平成24年度実績)」.
- 厚生労働省. 2014. 「経済連携協定(EPA)に基づく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の受入れ概要」(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50000-Shokugyouanteikyokuhakenyukiroudoutaisakubu/epa_gaiyou.pdf, 검색일: 2014. 9. 8).
- 国際貿易投資研究所. 2009. 『TRIPS研究会報告書(平成20年度)-各国の知的財産保護制度及び運用の問題点に関する調査分析』. 各国知的財産関連法令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 国際貿易投資研究所 公正貿易センター.
- 高橋俊樹. 2014. 「物品市場アクセスとセンシティブ品目」.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高安雄一. 2014. 「投資とISDS条項:米韓FTAから得られる知見」.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特許庁. 2013. 「模倣被害調査の概要」. 模倣被害調査報告書. https://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pdf/2013_houkoku/2013gaiyou.pdf(검색일: 2014. 5. 15).
- 内閣官房. 2012a. 「TPP協定交渉に関する資料」(2012년 3월 개정판). 재인용: 石戸光. 2014. 「TPPとサービス自由化: 越境サービス, 一時的入国、電気通信を巡る論点」.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 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_____. 2012b.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4年3月) http://www.cas.go.jp/jp/pp/pdf/2012/1/20120329_1.pdf(검색일: 2014. 8. 12).
- 西道彦. 2013. 「EPA原産地規則と日本企業の活用: 日・アセアン包括的経済連携協定とECFAを中心して」. 『福岡大学商学論叢』, 第57巻 第3/4号.
- 日本自動車輸入組合. 2012. 「日本の自動車市場2012」.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용역보고서.
- 日本貿易振興機構. 2013a.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
- _____. 2013b. 「2012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ージェトロ海外ビジネス調査ー」. 재인용: 日本貿易振興機構. 2013a.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
- _____. 2014a. 「2013年度 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622/07001622.pdf>(검색일: 2014. 6. 10).
- 農林水産省. 2005. 「豚肉の差額関税制度について」. 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食肉鶏卵課. http://www.maff.go.jp/j/study/yoton_yokei/yoton_h17_1/pdf/data9-1.pdf (검색일: 2014. 7. 25).
- _____. 2007. 「わが国の200%を越える高関税品目の例」. 재인용: 石川幸一. 2013. 「物品貿易の障壁の現状と問題点」. 『日本経済の成長に向けて: TPPへの参加と構造改革』. 21世紀政策研究所.
- _____. 2012. 「WTO農業交渉の現状」. http://www.maff.go.jp/j/kokusai/kousyo/wto/pdf/121201_wto1.pdf(검색일: 2014. 7. 10).
- 本間正義. 2005. 「WTO農業交渉と日本の対応」.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

- 成 編著. 『日本の新通商戦略: WTOとFTAへの対応』. 文真堂.
- _____. 2012. 「日本の対外農業政策と今後の展開」. 浦田秀次郎・21世紀政策研究所 編著. 『日本経済の復活と成長へのロードマップ』. 재인용: 石川幸一.
- _____. 2013. 「物品貿易の障壁の現状と問題点」. 『日本経済の成長に向けて: TPPへの参加と構造改革』. 21世紀政策研究所.
- 増田耕太郎. 2014. 「医薬品とTPP」.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 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山澤逸平・馬田啓一・国際貿易投資研究会. 2012. 『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勁草書房.
- 吉野文雄. 2014. 「知的財産権問題の争点: 著作権と商標権」.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 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LIBERTAS. 2013. 「経済連携協定(EPA)発効後の貿易の動向に関する調査」.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10107.pdf>(검색일: 2014. 5. 20).

[언론보도자료]

- 「새정권, 저작권법 ‘친고죄 전환’ 발의」. 2014. 『머니투데이』. (4월 1일)
- “Increase in Allowance for Simplified Entry of U.S. Cars into Japan at Issues in TPP Talks.” 2014. *International Trade Daily*. Bloomberg BNA. (August 13)
- “TPP Chief Negotiators Narrow Differences On Handling Of SPS Disputes.” 2014a. *Inside U.S. Trade*. (July 11)
- “TPP Countries Push Toward November Target, Mull New Meetings.” 2014b. *Inside U.S. Trade*. (July 11)
- “Australia-Japan Bilateral Contains Review Clause Relevant To TPP.” 2014c. *Inside U.S. Trade*. (July 18)
- “Under The Radar, TPP Parties Wrestle Over Carveouts On Services, SOEs.” 2014d. *Inside U.S. Trade*. (July 24)

“Rice tariff 778% with new WTO formula”, 2005. *The Japan Times*.(June 10)

「聖域なし崩れの恐れ：TPP重要品目も検証問題」. 2013. 『日本農業新聞』. (10월 8일)

「TPP日米協議で豚肉差額関税見直し検討：「従量税」一本化が浮上」. 2014. 『日本農業新聞』. (5월 13일)

「『農業・自動車』で課題山積＝日欧EPA交渉開始1年」. 2014. 『時事通信』. (5월 7일)

「自動車、ワインで攻防 関税協議、難航必至」. 2014. 『静岡新聞』. (5월 8일)

「日米、妥協の解探る」. 2014a. 『日本経済新聞』. (5월 3일)

「軽自動車税見直し評価：欧州委、対日EPA報告で」. 2014b. 『日本経済新聞』. (5월 27일)

「対日EPA交渉、EUが継続了承」. 2014c. 『日本経済新聞』. (6월 26일)

「サービス・投資で進展：日欧交渉具体項目を提示」. 2014d. 『日本経済新聞』. (7월 12일)

「TPP交渉、12分野決着」. 2014e. 『日本経済新聞』. (7월 13일)

「非関税障壁、潛むワナ」. 2014f. 『日本経済新聞』. (7월 13일)

「牛・豚肉の交渉再交渉」. 2014g. 『日本経済新聞』. (8월 5일)

「試練メカFTA(上)TPP停滞、世界に余波」. 2014h. 『日本経済新聞』. (8월 10일)

「日欧、鉄道巡る対立解消」. 2014i. 『日本経済新聞』. (8월 13일)

「車の安全基準溝残る」. 2014j. 『日本経済新聞』. (8월 15일)

「欧州委、JR3社除外提案」. 2014k. 『日本経済新聞』. (9월 10일)

「日米関税協議溝埋まらず」. 2014l. 『日本経済新聞』. (9월 11일)

[온라인 자료]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2013. 「시드로트 배양 관리수법의 의미와 유의점 문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E005&qid=5DDew&q\(검색일: 2014. 9. 10\).](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E005&qid=5DDew&q(검색일: 2014. 9. 10).)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us/>(검색일: 2014. 9. 5).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eu/doc/1/>(검색일: 2014. 8. 21).

- European Commission. 2014a. *EU and Japan exchange offers to open markets*.
4 April 2014.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056&title=EU-and-Japan-exchange-offers-to-open-markets>(검색일: 2014. 5. 9).
- _____. 2014b. *EU-Japan talks on track after the one-year-on review*. 11 July 2014.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124>(검색일: 2014. 8. 5).
-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http://madb.europa.eu/madb/barriers_result.htm?sectors=none&countries=JP&measures=none(검색일: 2014. 8. 20).
- European Commission WIOD 웹사이트. EU-WIOT 1995~2011. http://www.wiod.org/new_site/home.htm/(검색일: 2014. 3. 2).
- Eurostat 웹사이트.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4. 6. 5).
- ID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5-Technical Notes*,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Project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Organization. <http://www.ide.go.jp/Japanese/Publish/Books/Tokei/pdf/2005ASIA%20TechnicalNotes.pdf>(검색일: 2014. 5. 31).
- OECD. StatExtracts,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TiVA)- May 2013*.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7807>(검색일: 2014. 5. 29).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10&Lg=1&Co=11>(검색일: 2014. 5. 12).
-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6. 29 및 2014. 7. 3).
- UN Database. <http://www.un.org/en/databases/>(검색일: 2014. 5. 6).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검색일: 2014. 6. 30).
- UNCTAD. Bilateral FDI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Bilateral.aspx>(검색일: 2014. 6. 30)
- USTR 웹사이트.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14. 8. 21).

- WikiLeaks. 2013. *Secret TPP treaty: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for all 12 nations with negotiating positions*. WikiLeaks release: November 13. <http://wikileaks.org/tpp/static/pdf/Wikileaks-secret-TPP-treaty-IP-chapter.pdf>. 재인용: 吉野文雄. 2014. 「知的財産権問題の争点: 著作権と商標権」. 石川幸一・馬田啓一・渡邊頼純 編著. 『TPP交渉の論点と日本: 国益をめぐる攻防』. 文真堂.
- WikiLeaks 웹사이트. <http://wikileaks.org/IMG/pdf/tpp-salt-lake-positions.pdf>(검색일: 2014. 8. 15).
- WITS 웹사이트. <http://wits.worldbank.org/>(검색일: 2014. 5. 12).
-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cbt_course_e/c1s3p1_e.html(검색일: 2014. 7. 23).
- WTO I-TIP 웹사이트. <http://i-tip.wto.org/goods/Forms/MemberView.aspx?data=default>(검색일: 2014. 8. 25).
- 経済産業省. 「外資系企業動向調査」(平成17年度実績～平成24年度実績). <http://www.meti.go.jp/statistics/tyo/gaisikei/result-1.html>(검색일: 2014. 11. 1).
- 内閣官房. 2011. 「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平成23年10月) http://www.cas.go.jp/jp/tpp/pdf/2012/1/20111021_1.pdf(검색일: 2014. 7. 17).
- 内閣府 웹사이트. <http://www.invest-japan.go.jp/promotion/index.html>(검색일: 2014. 8. 21).
- 内閣府. 2014. 「規制改革実施計画」.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publication/140624/item1-1.pdf>(검색일: 2014. 7. 5).
- 農林水産省. 「国家貿易」. http://www.maff.go.jp/j/kokusai/kousyo/wto/w_16_iken/02_1/b02/kihon_06.html(검색일: 2014. 7. 25).
- _____. 「日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 (E P A) に基づく関税割当制度対象品目」
http://www.maff.go.jp/j/kokusai/boueki/triff/t_mex/01/pdf/25_besi.pdf(검색일: 2014. 9. 20).
- 東京税関. 2012. 「特惠税率一般特惠・EPA特惠を活用刷のための原産地基規則」.
http://www.customs.go.jp/tokyo/content/240927_gensanchi_1.pdf(검색일:

2014. 6. 15).

税関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htm#india>(검색일: 2014. 8. 3).

税関. 2014. 「輸入統計品目表 実行関税率表(2014年4月版)」.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0.htm/(검색일: 2014. 7. 12).

首相官邸. 2010. 「包括的經濟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平成22年11月9日閣議決定). <http://www.kantei.go.jp/kakugikettei/2010/1109kihonhousin.html>(검색일: 2014. 3. 3).

_____. 2013a. 「日本再興戰略」(平成25年6月14日).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ipn.pdf>(검색일: 2014. 8. 3).

_____. 2013b. 「関税撤廃した場合の經濟効果についての政府統一試算」.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dai5/index.html>(검색일: 2014. 6. 15).

_____. 2014. 「‘日本再興戰略’改訂2014-未来への挑戦」.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honbun2JP.pdf>(검색일: 2014. 7. 3).

外務省 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6_000042.html(검색일: 2014. 7. 20).

_____.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1059.html(검색일: 2014. 8. 5).

外務省. 2002. 「日本のFTA戰略」. <http://www.mofa.go.jp/mofaj/gaiko/fta/senryaku.html>(검색일: 2014. 7. 3).

_____. 2011. 「日米經濟調和對話」.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tpp04_04.pdf(검색일: 2014. 8. 20).

外務省・經濟産業省. 2012. 「国家と投資家の紛争解決手続の概要」.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tpp20120327_06.pdf(검색일: 2014. 7. 14).

日本經濟再生本部. 2013. 「日本再興戰略」.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검색일: 2014. 10. 5).

日本貿易振興機構 웹사이트 <http://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검색일: 2014. 6. 5).

- _____. <http://www.jetro.go.jp/world/japan/stats/trade/>(검색일: 2014. 5. 15).
- 日本貿易振興機構. 2006. 「日本メキシコ経済連携協定(日墨FTA)発効1年目の効果(リバイス版)」. http://www.jetro.go.jp/file/report/05001225/05001225_005_BUP_D.pdf(검색일: 2014. 8. 10).
- _____. 2014b. <https://news.jetro.go.jp/aps/QJTR/main.jsp?uji.verb=GSHWD0320&serviceid=QJTR&rqid=1&kino=QJTR53c754aa96e10&PARASETID=jwb>(검색일: 2014. 9. 25).
-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hinbun/happyou.htm>(검색일: 2014. 5. 15).
- _____.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time.htm>(검색일: 2014. 5. 15).
- _____. <http://www.customs.go.jp/toukei/info/>(검색일: 2014. 8. 8).
- 財務省. 2013. 「平成26年度税制改正の大綱(6/8)」.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4/26taikou_06.htm(검색일: 2014. 7. 5).
- 田中友義. 2014a. 「日EU経済連携協定(EPA/FTA)の合意に向けて(その2)-交渉レビューは4月末, TPP, TTIP交渉の進展とも絡む-」. 『フラッシュ178』. 国際貿易投資研究所. <http://www.iti.or.jp/flash178.htm>(검색일: 2014. 5. 15).
- _____. 2014b. 「日EU経済連携協定(EPA/FTA)の合意に向けて(その3)-EU交渉継続否かで近々に最終結論-」. 『フラッシュ195』. 国際貿易投資研究所. <http://www.iti.or.jp/flash195.htm>(검색일: 2014. 8. 10).
- 鷲尾紀吉. 2008. 「日本のEPA推進と原産地規則」. http://www.lib.cgu.ac.jp/cguwww/02/22_02/022-02-04.pdf(검색일: 2014. 6. 9).

[기타]

- 石川幸一와의 일본 출장 면담(2014. 7. 16).
- 김양희. 2012. 「일본의 기발호 FTA 양허안 데이터베이스」.
- 「저작권법」 제140조, 2011년 12월 개정.

■ Executive Summary ■

A Study on Japan's FTA Strate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Gyu Pan Kim, Hyong-Kun Lee, and Eun-Ji Kim

This research examines Japan's FTA strategies, focusing on Japan's 13 effective bilateral FTAs, and ongoing negotiations on the TPP and the EU-Japan FTA. Especially,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ngoing two FTA negotiations and Japan's 13 existing bilateral FTAs in terms of Japan's FTA strategy.

Chapter two analyzes the GVCs of Japanese companies from 1995 to 2011 based on EU World Input-output Tables (EU-WIO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CEP includ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for Japan, as it is for Korea. In 2011, out of Japan's total value-added export, the RCEP-5(South Korea, China, Australia, Indonesia and India) accounted for 27.7% which is larger than the 21.7% for TPP-4(the US, Australia, Mexico, and Canada). The result implies that in terms of GVCs, concluding a regional FTA in East Asia involving China is advantageous for both Japan and Korea.

Second, most of Japan's exports of final goods contribute to producing domestic intermediate goods. In 2011, 291.8 billion dollars of Japan's final goods exports led to 485.9 billion dollars of intermediate goods production at the global level. However, out of the total amount, production of foreign intermediate goods represented only 22.1% while the share of Japanese goods was 77.9%. In value added terms, out of the total amount, 297.6 billion dollars

or 85.7% are returned to Japan compared to 61.9% for Korea. This result shows that Japan's intermediate goods production network is better developed than that of Korea. Japan has highlighted tariff elimination and cumulative rules of origin to maximize export enlargement effects following the FTA expansions.

Third, Japanese manufacturers have maintained its competitiveness even in the late 2000s. Japanese RCA in value added had remained around 0.76 to 0.79. Also, even though Japan's total exports is only 1.48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Japan's value-added exports is 2.22 times larger than Korea's. It shows that Japanese exports has created a high rate of domestic value added, and implies the Japan's FTA could shortly bring more value-added into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effects.

Chapter three outlin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exploits FTAs in major negotiating chapters including tariff, rules of origin, service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so as to expand GVCs of domestic enterprises. Also, this chapter examines the utilization of signed FTA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irst,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s comprehensiveness and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in the 13 effective FTAs, their actual level of liberalization is low since they have chosen the FTA partners so as to protect their agriculture, fisheries and livestock markets.

Second, 72 types of complex rules of origin in FTAs by Japan lower the utilization of FTAs by increasing burdens on Japanese companies to achieve the certificate of origin. To lighten the burden, the government introduced 'autonomous certificate system for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to the Japan-Switzerland FTA and applied the system both to Japan-Peru and Japan-Mexico FTAs. However, challenges remain for the government to unify rules of origin and seek an effective way to utilize cumulative rules of origin.

Third, despite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by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growth of Japanese companies' FTA utilization rate from 36.2% in 2009 to 42.9% in 2013 according to the JETRO survey, the FTA utilization rate of Japanese companies is still low. It is mainly caused by low liberalization level of signed FTAs. In fact, even goods receiving preferential tariff often could not benefit due to the rules of origin, high cost and complex proces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and lack of information on the FTA procedure system.

Chapter four divides major issues of the TPP-12 negotiations into market access for goods and rules, then examines Japanese strategy in the TPP-12 negoti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hardly possible to sign the TPP by the targeted deadline at the end of 2014, but still the US-Japan negotiations are critical to concluding the agreement. The TPP, a multilateral FTA, could also be considered a bilateral FTA between the US and Japan. It is because with respect to negotiations on tariff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apan's acceptance of American demands would determine the results. Also, concluding the bilateral negotiation on market access on agriculture and livestock is a prerequisite, even though it is uncertain whether other participants would accept the settlement.

Second, Japan's TPP strategy can be summarized as mutual protection allowance for the US Automobile market and Japan's agricultural market. This Japanese exchange strategy had been effective until Japan's official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TPP, in February of 2013. However, at the moment, the end of 2014, the strategy seems to be losing strength. For instance, the TPP negotiations for tariffs and safeguards on pork, beef, and dairy products included in the main 5 items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re facing difficulties even at the working level consultation with the US.

Chapter five analyzes the main issues of the ongoing FTA negoti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 and countermeas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wo results are revealed as below:

Firstly, the EU-Japan FTA is expected to be more comprehensive than recently concluded FTAs such as the EU-Korea, and the EU-Singapore. Negotiations for the EU-Japan FTA handled various issues; overall commodity trade including tariff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service trade, e-commerce, 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flict resolution, non-tariff measures, rules of origin, customs clearance facilitation, geographical indications, animal welfare,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environment, and so on.

Second, the biggest issue in the EU-Japan FTA negotiation is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For the EU to balance benefits against Japan which has low tariffs, it would need an effective strategy in demanding that Japan remove its non-tariff barriers. However, regulatory reform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re limited to regulatory harmonization, trade facilitation and streamlining customs procedures. Ultimately, the pace of the FTA would be dependent on Japan's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the EU's acceptance of that level. Therefore, Japan should especially promote regulatory reforms among structural reforms known as the 'third arrow' of Abenomic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harsh demands from Mega FTAs regarding non-tariff barrier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호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대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환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대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광성일 · 박재은 ·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해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테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의회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균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중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교회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교회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김규판(金奎坂)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경제학연구과(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연구위원
(現, E-mail: kei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공저, 2012)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공저, 2013) 외

이형근(李炯根)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방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k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공저, 2012)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공저, 2013) 외

김은지(金恩志)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한양대학교 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eunji@kiep.go.kr)

저서 및 논문

『日中韓FTAの可能性と三カ国の対外通商政策』(공저, 200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공저, 2013) 외

연구보고서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이 일 형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42 FAX: 044-414-1144

인 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02-2273-701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16-7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 Study on Japan's FTA Strate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Gyu Pan Kim, Hyong Kun Lee, and Eun Ji Kim

일본은 2013년 들어서부터 TPP, 일·EU FTA,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이 이미 한·EU FTA와 한·미 FTA를 발효시킨 것에 비하면 일본의 미국, EU와의 FTA 체결은 늦는 대신 TPP 협상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TPP 및 EU와의 FTA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516-7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